

# 외국인직접투자 Q&A

2004. 7

Invest KOREA

# 차 례

1. 투자제도일반 .....	1
2. 투 자 신 고 .....	35
3. V I S A .....	45
4. 조        세 .....	67
5. 관        세 .....	95
6. 금        융 .....	117
7. 공 장 설 립 .....	133
8. 법 인 설 립 .....	149
9. 부 동 산 .....	165
10. 건        축 .....	181
11. 관        광 .....	197
12. M & A .....	207
13. 환        경 .....	223
14. 노        동 .....	279
15. 중소기업 지원 .....	307
16. 정 보 통 신 .....	331
17. 자유무역지역 일반 .....	343

# 1. 투자제도일반

## 차 례

1-1.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란? .....	5
1-2. 외국인직접투자에서의 외국투자자의 범위는? .....	5
1-3. 외국의 영주권을 획득한 해외교포의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투자자로서 인정이 되는가? .....	6
1-4.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혜택 및 지원사항은? .....	6
1-5. 투자금액 및 투자비율에 있어서 외국인투자의 기본요건은? .....	8
1-6. 외국인투자자 제한 및 제외되는 업종은? .....	8
1-7. 외국인투자자로 인정되는 출자목적물의 범위란? .....	9
1-8. 외국인투자금액이 조세회피 등을 목적으로 Tax-haven지역에 설립된 Paper Company를 통하여 국내에 투자될 경우 이를 제한하고 있는가? .....	10
1-9. 외국인투자의 유형은? .....	10
1-10. 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직접투자 절차는? .....	11
1-11. 기존주식 등의 취득(구주취득)에 의한 직접투자 절차는? .....	12
1-12. 장기차관방식의 투자절차는? .....	13
1-13. 투자신고 이후 변경신고의무가 있는 주요 항목의 내용은? .....	14
1-14. 투자신고 없이 기송금한 외화자금을 외국인투자기업 법인설립에 사용할 수 있는가? .....	15
1-15. 외국투자자가 직접 송금 또는 반입하지 아니하고, 제3자 명의로 송금 또는 반입한 경우 외국인투자자금으로 인정되는가? .....	16
1-16. IK에서 직접 처리해 주는 인·허가 사항은? .....	16
1-17. 자동승인제도란 무엇인가? .....	16
1-18. 일괄처리 민원사무는 무엇인가? .....	17
1-19. IK에서 제공하는 One-Stop 서비스란 무엇인가? .....	18
1-20. 외국인투자지분을 내국인 또는 외국인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 그 절차 및 제출할 서류는? .....	19
1-21.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며, 혜택은 무엇인가? .....	19

1-22. 고도기술수반사업이 아니더라도 국·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가? .....	21
1-23. 외국인이 현금이 아닌 중고기계를 외국에서 도입하여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기계도입절차 및 법인설립시 유의사항은? .....	21
1-24. 외국인직접투자의 기대효과는? .....	22
1-25. 외국인의 자본유입 등을 통한 외국투자기업 설립 이외에 기업 합병(M&A) 등을 통한 외국인투자 추진의 필요성은? .....	23
1-26. 컨설팅 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가능한가? .....	24
1-27. 해외 모기업의 국내지점 또는 사무소는 외측법상 외국인투자에 해당되는가? .....	25
1-28. 외국인투자의 조세감면대상사업 중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이란? ..	26
1-29. 외국인투자의 조세감면대상사업 중 자유무역지역 등에 입주하는 사업이란? .....	27
1-30. 외국인투자진흥관 및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의 설치와 역할은? .....	28
1-31. 자기회사 주식을 담보로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해 외화를 차입한 순수 내국기업이 채무 불이행으로 차관제공자가 담보물을 채권행사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에 해당되는지? .....	29
1-32. 외국인투자신고시 제출하는 첨부서류 중 외국인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	29
1-33.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이후 기존의 외국투자자가 주식의 추가 취득, 양도 등 경영활동 수행 등으로 인해 현행법령의 외국인투자요건(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2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외국인투자로 인정되는지? .....	30
1-34. PM제도란 무엇이며, PM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가? .....	30
1-35. Cash Grant제도란 무엇이며, Cash Grant를 향유하기 위한 요건은? .....	31
1-36. 외국인투자기업이 회사를 분할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상 행정절차는? .....	32
1-37.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를 분실한 경우 재발급이 가능한가? .....	32
1-38. 외국투자자가 기존주식취득신고 후 주식을 모두 양도받고 대금을 일부만 지급하고 부분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신청한 경우 동 등록증명서에 투자금액 및 비율을 어떻게 기재하여야 되는가? .....	33

### 1-1.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란?

- 외국인직접투자는 단기적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한 주식투자나, 경영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채권투자 등의 포트폴리오 투자와는 달리 기업경영에 참여하여 장기적인 영업 이익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 투자이며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적용을 받음
-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는 외국인직접투자만을 의미하며 동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 국내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에 의한 방법
    -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 또는 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당해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이나 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한 경우
    - 10% 미만의 주식이나 지분을 소유한 경우라도 i) 임원의 파견 또는 임원을 선임할 수 있는 계약, ii) 1년 이상의 기간동안 원자재 또는 제품을 납품하거나 구매하는 계약, iii) 기술의 제공·도입 또는 공동 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장기차관에 의한 방법
    -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 및 그 모기업과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도 외국인투자자로 인정

### 1-2. 외국인직접투자에서의 외국투자자의 범위는?

- 외국투자자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 주식 및 지분을 소유한 외국인을 의미
-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의 범위는

- 개인 :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대한민국의 국민 중 외국의 영주권과 이에 준하는 체류허가를 취득한 경우도 포함)

\* 국내에 준영구적으로 체류하는 화교(체류자격 거주(F2))는 제외

- 외국법인 :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국제경제협력기구 : 외국정부의 대외경제협력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IFC(국제금융공사), ADB(아시아개발은행) 등 대외투자업무를 취급하거나 대행하는 국제기구

### 1-3. 외국의 영주권을 획득한 해외교포의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 투자가로서 인정이 되는가?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2항은 외국인의 개념을 외국의 국적을 보유한 개인, 외국의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 기타 국제경제협력기구로 규정하고 있음
- 동법시행령 3조의 규정은 대한민국국민 중 외국의 영주권과 이에 준하는 체류허가를 취득한 경우도 동법상의 외국인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음
- 따라서 외국의 영주권을 획득한 해외교포의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 투자가로 인정됨

### 1-4.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혜택 및 지원사항은?

- 일반적인 혜택
- 대외송금의 보장

- 외국투자자가 소유한 주식·지분의 이익배당금 및 매각대금은 송금 당시의 허가내용 또는 신고내용에 따라 대외송금을 보장
- 내국민과 동등대우
  - 외국투자자와 투자기업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영업에 관하여 내국민과 동일한 대우를 받음
  - ※ 조세감면이나 입지선정 등에 있어서는 오히려 내국민보다 우대 받음
- 수입신고시 특례
  - 외국환은행 또는 KOTRA의 장에 의해 자본재도입물품명세 확인을 받은 자본재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입승인으로 간주하여 수입신고시 편의를 도모
- 현물출자에 관한 특례
  - 관세청장이 현물출자의 이행 등을 확인한 "현물출자 완료확인서"를 비송사건절차법 제20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 조사보고서"로 간주하여 상법상 절차 완화
- 조세감면 혜택
  - 외국투자자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에서 정한 조세감면대상사업 (고도기술수반사업 또는 산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될 경우 일정기간동안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
- 입지지원 혜택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 공장 기타 국·공유재산(이하 "토지 등")을 수의 계약에 의해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사용, 수익 또는 임대, 매각 가능 (조세감면대상 사업이 아닌 경우에도 가능)
  - 국가소유 토지 등을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임대하는 경우 토지 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음

○ 관세감면 혜택

- 조세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다음의 자본재로서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투자신고에 따라 도입되는 경우 관세 감면
-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
- 외국투자가가 출자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

**1-5. 투자금액 및 투자비율에 있어서 외국인투자의 기본요건은?**

- 외국인투자금액은 건당 5,000만원 이상
- 외국인이 2인 또는 그 이상인 경우에도 1인당 5,000만원 이상이어야 함
- 투자비율은 원칙적으로 10% 이상 이어야 하나, 10% 미만의 경우라도 i) 임원의 파견 또는 임원을 선임할 수 있는 계약, ii) 1년 이상의 기간동안 원자재 또는 제품을 납품 하거나 구매하는 계약, iii) 기술의 제공·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외국인직접투자자로 인정

**1-6. 외국인투자가 제한 및 제외되는 업종은?**

- 외국인 투자가 제외되는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총1,121개 업종중(한국 표준산업분류상의 세세분류 : 5단위) 공공행정, 외무·국방 등 63개 업종이며, 이를 제외한 1,058개 업종중 1,056개 업종을 개방하여 외국인투자 자유화율은 99.8%에 달하며, 이는 OECD 선진국의 투자개방 수준임
- 완전개방업종 : 1,030개 업종

- 부분개방업종 : 26개(\*허용기준 충족시 외국인투자가능)
- 미개방업종 : 2개 업종(2004년 6월 현재 : 라디오방송업, 텔레비전방송업)

### 1-7. 외국인투자로 인정되는 출자목적물의 범위란?

- 출자목적물
  - 현금(현금출자의 경우 당해 외자를 직접반입 또는 국내 외국환은행을 통해 송금하고 이를 원화로 인출)
  - 자본재(중고 자본재 포함) 또는 원자재 (원자재의 경우 최초 시운전에 필요한 것에 한함)
  - 외국인투자촉진법 의해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으로부터 생긴 과실(배당금)
  - 산업재산권, 지적재산권 기타 이에 준하는 기술과 사용에 관한 권리
  - 외국인의 국내지점 또는 사무소의 청산에 따르는 잔여재산
  - 해외 모기업 및 당해 모기업과 자본출자관계에 있는 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이상의 차관, 기타 해외로부터의 차입금의 상환액
  -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취득한 기업의 주식·지분 또는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
  - 외국의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국법인의 주식과 외국인투자촉진법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국내 부동산

**1-8. 외국인투자금액이 조세회피 등을 목적으로 Tax-haven지역에 설립된 Paper Company를 통하여 국내에 투자될 경우 이를 제한하고 있는가?**

- Paper Company도 외국의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므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제한하고 있지 않음

**1-9. 외국인투자의 유형은?**

- 외국인투자의 유형은 크게 4가지로 분류되는 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 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 신설법인의 설립(단독 혹은 합작) 또는 국내기업(외국인투자기업 포함)의 증자에 참여하는 것
  - 기존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 국내기업(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기존 내국인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외국인이 취득하는 것
  - 장기차관방식의 외국인투자
    - 해외 모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에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을 대여하는 것
  - 합병 등에 의한 주식 등의 취득
    - 외국투자자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준비금·재평가적립금 등이 자본으로 전입됨으로써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

- 외국투자자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기업과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및 회사분할을 하는 때에 소유하고 있던 주식 등에 의하여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및 회사분할 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
- 외국인이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 등을 외국투자자로부터 매입·상속·유증·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 외국투자자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등으로부터 생긴 과실의 출자로 인하여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
- 외국인이 전환사채·교환사채·주식예탁증서 등을 주식 등으로 전환·인수 또는 교환한 경우

#### 1-10. 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직접투자 절차는?

- 신주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라 함은 i) 단독 혹은 합작으로 신설법인을 설립 하거나 ii) 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한 국내기업의 증자에 참여하는 투자를 말함
- 투자절차는
  - 외국인이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국내은행 본·지점 또는 IK 및 KOTRA 국내·해외 투자거점무역관에 외국인투자신고서를 제출, 즉시 신고필증을 교부받고,
  - 외화자금의 도입후 외화매입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또는 자본채를 현물로 도입후 현물출자완료 확인을 받은 후,
  - 법무사사무소 또는 IK 종합행정지원실의 지원을 받아 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 법인설립등기
  - 출자목적물의 납입완료일부터 30일 이내 신고기관에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하면 됨
  -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하기 전 또는 기존주식 등의 취득대금을 정산하기 전이라도 5,000만원, 10% 이상 투자한 경우에는 투자기업의 등록을 할 수 있음

- ※ 단, 사업개시일 전에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인설립신고를 해야함(현물출자 혹은 부동산취득시에는 부가세환급을 위해 통관이나 계약 전에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
- ※ 또한, 현물출자 등 자본재를 도입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을 자본재도입 및 법인설립등기 보다 먼저하여야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증은 IK 종합행정지원실에서도 신청가능
- 공장설립이 필요할 경우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신고 및 등록을 하여야 되는데 IK 종합행정지원실에 대행을 의뢰할 수 있음

### 1-11. 기존주식 등의 취득(구주취득)에 의한 직접투자 절차는?

- 기존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직접투자는 신고와 허가대상으로 구분이 되어있음
- 방위산업체가 아닌 기업의 기존주식취득은 신고만으로 가능하며 주요 절차는 아래와 같음 (방위산업체인 경우 허가)
  - 외국인이 직접 신고하거나, 대리인(위임장 지참)이 국내은행 본·지점, 외국은행 국내지점, IK 및 KOTRA 국내·해외투자거점무역관에 신고
  - 제출서류
    - 기존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서, 양수인이 복수인 경우에는 양수인간의 특수관계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외국인의 국적증명서
  - 신고접수기관은 기재사항 누락여부, 영위업종의 제한업종 해당여부 등을 확인한 후 즉시 신고필증 교부

- 방위산업체의 기존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주요 절차는 아래와 같음
- 외국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대리인이 신청(위임장 첨부)할 수 있으며, 산업자원부 투자진흥과 (☎ 02-2110-5362)에 신청
- 제출서류
  - 기존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허가신청서
  - 양수인이 복수인 경우에는 양수인간의 특수관계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외국인의 국적증명서
- 처리기간은 15일(부득이한 경우 15일 연장 가능)이며, 산업자원부장관은 주무부장관과 협의 후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허가를 함에 있어 조건을 부가할 수 있음)

## 1-12. 장기차관방식의 투자절차는?

- 장기차관방식의 외국인투자란 해외 모기업 (외국투자가)또는 당해 모기업과 자본 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에 5년 이상의 차관을 대여하는 것을 말함
- 신고인 및 신고접수기관
  - 신고인 : 외국인이 직접 신고하거나 대리인이 신고
  - 신고접수기관 : 국내은행 본·지점, 외국은행 국내지점, IK 및 KOTRA 국내·해외 투자거점무역관
- 제출서류
  - 장기차관방식의 외국인 투자신고서

- 해외 모기업 또는 당해 모기업과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차관계약서 사본
- 외국인의 국적증명서

### 1-13. 투자신고 이후 변경신고의무가 있는 주요 항목의 내용은?

- 다음의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이전 변경사항)
  - 외국투자자의 상호 또는 명칭 및 국적
  - 외국인투자금액, 외국인투자비율 · 투자의 방법
  -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
  - 기타 신고 및 허가의 내용과 관련된 중요사항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 (투자형태, 투자목적,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소)
- 다음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
  - 외국인투자기업의 상호 등이 변경된 경우
  - 외국투자자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준비금 · 재평가적립금 등이 자본으로 전입됨으로써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
  - 외국인투자자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기업과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 이전 및 회사분할을 하는 때에 소유하고 있던 주식 등에 의하여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 이전 및 회사분할 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
  - 외국인이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 등을 외국투자자로부터 매입 · 상속 · 유증 ·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 외국투자자가 취득한 주식 등으로부터 생긴 과실의 출자로 인하여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주식배당 포함)
- 외국인이 전환사채·교환사채·주식예탁증서 등을 주식 등으로 전환·인수 또는 교환한 경우
- 외국투자자가 주식을 양도 또는 감소를 완료한 때
- 변경등록 신청방법
  -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후관리기관(외국인투자 신고접수기관 또는 허가 통지기관)에 제출
  - 제출서류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서(변경등록), 사유증명서류

#### 1-14. 투자신고 없이 기송금한 외화자금을 외국인투자기업 법인설립에 사용할 수 있는가?

- 국내에 입금된 외화를 투자신고 없이 원화로 전환하여 입출금할 경우, 동 자금은 투자목적이 아닌 기타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투자자금으로 인정되지 않음
- 외국기업의 국내 직접투자시에는 투자신고서 제출 후 외국환은행에 구좌를 개설, 동 구좌로 투자자금을 입금해야 하며 자금이 외화상태로 비거주자외화계정(대외계정)에 예치된 상황인 경우, 투자신고 전에 들어왔던 돈이라도 투자자금으로 간주될 수 있음
- 참고로, 자금이 비거주자외화계정에 예치된 경우, 출국시 환전증명서 등을 제시하면 매입한 원화를 모두 외화로 전환하여 해외로 반출이 가능하나, 원화자금 예치하에 출국후 재입국한 경우에는 출국시 동 자금의 매각을 통한 외국환 매입이 불가함

**1-15. 외국투자자가 직접 송금 또는 반입하지 아니하고, 제3자 명의로 송금 또는 반입한 경우 외국인투자자금으로 인정되는가?**

- 외국투자자가 아닌 대리인이나 제3자 명의로 송금 또는 반입한 경우에는 자금이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함

※ 송금시 투자가 ○○○의 투자목적물임을 명기

**1-16. IK에서 직접 처리해 주는 인·허가 사항은?**

- IK에서 직접 처리해 주는 인·허가 사항은 3개 법률 7개 민원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자본재 도입과 관련 관세청 파견관이 현물출자확인을 즉시 처리
  - 외국인체류자격, 외국인등록 등과 관련한 5개 민원을 법무부 파견관이 즉시 처리
  - 사업자등록과 관련 국세청 파견관이 7일 이내 등록증을 발급

**1-17. 자동승인제도란 무엇인가?**

- 외국인투자자와 관련된 인·허가 등 민원사무에 대해 민원사무의 성격에 따라 각각 7~90일 정도의 처리기간을 부여하고, 동 처리 기간 경과시 자동적으로 인·허가 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함
- 자동인·허가된 경우 외국투자자에게 인·허가 증명서를 교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인·허가를 거부하는 경우는 그 구체적 사유를 명시토록 하고 있음

## 1-18. 일괄처리 민원사무는 무엇인가?

- 일괄처리 민원사무란 외국인투자와 관련 인·허가 민원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인·허가 민원을 민원사무의 성격 및 처리기관 등을 고려하여 몇 개의 민원군으로 분류하고 그중 주요 민원사무가 처리되는 경우 나머지 민원도 함께 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임
- 일괄민원처리 되는 민원의 종류(10개)
  - 공장설립 승인 관련허가 등에서 공장설립 승인이 이루어지면 농지전용허가 등 19개 법률 20개 민원이 일괄처리됨
  -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 승인 관련허가 등에서는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이 승인되면 도로점용의 허가 등 14개 법률 21개 민원이 일괄처리됨
  - 건축허가관련허가 등에서는 건축허가가 이루어지면 토지형질변경허가 등 20개 법률 18개 민원이 일괄처리됨
  - 환경관련 허가 등에서는 폐수배출시설허가가 이루어지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 등 6개 법률 7개민원이 일괄처리됨
  - 건축물 사용승인 관련허가 등에서는 건축물 사용승인이 이루어지면 자가용전기시설의 사용전 검사 등 15개 법률 13개 민원이 일괄처리됨
  - 관광단지조성계획 승인이 이루어지면 관광단지조성계획의 승인 등 19개 법률 20개 민원이 일괄처리됨
  - 관광사업등록이 이루어지면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등 8개 법률 8개 민원이 일괄처리됨
  - 등록체육시설업사업계획 승인이 이루어지면 농지전용허가 등 9개 법률 9개 민원이 일괄처리됨

-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시행 승인이 이루어지면 초지조성 허가 등 27개 법률 27개 민원이 일괄처리됨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장등록이 이루어지면 출판사 또는 인쇄사의 신고 등 18개 법률 21개 민원이 일괄처리됨
- 일괄처리 민원은 IK에서 외국투자가를 대신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직접 대행 처리하고 있음

### 1-19. IK에서 제공하는 One-Stop 서비스란 무엇인가?

- IK는 외국인투자유치에 대한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종합창구로서 외국투자가에게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그 내용은 초기 투자상담부터 조세 및 관세 감면절차, 법인설립절차 등 분야별 전문상담, 공장부지 선정 및 매입을 위한 현장지원, 공장설립 인가 등 인·허가 절차의 직접 및 일괄대행처리, 투자자의 국내 정착을 위한 생활여건 상담 등 종합적인 밀착 서비스임
- IK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분야
  - 단독투자, 합작투자, M&A, 부동산투자 등 투자상담 및 제도 안내
  - 투자신고 처리, 합작파트너 물색 및 시장조사를 수행
  - 중앙정부 및 지자체 인·허가 취득 등 각종 행정절차 직접 처리 및 일괄대행 처리
  - 주택, 학교 및 의료보험 등 외국투자가의 국내정착 지원 및 고충처리
  - 신설법인 설립대행 처리

### 1-20. 외국인투자지분을 내국인 또는 외국인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 그 절차 및 제출할 서류는?

- 외국투자자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거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을 타인(내·외국인)에게 양도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감소시키는 때에는 양도체결일 또는 자본감소에 관한 주주총회, 사원총회 등의 결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기관에 신고하면 즉시처리 됨
-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음
  -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 또는 감소신고서 2부
  - 양도 또는 감소를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또는 자본감소에 관한 주총결의서)
  - 양수인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1-21.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며, 혜택은 무엇인가?

-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 일정규모 이상 투자하는 외국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에 대하여 유치를 원하는 특별, 광역시·도지사가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기준

투자규모	투자업종	투자행위
3천만불 이상	제조업,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	공장 신규설치
2천만불 이상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종합휴양업, 종합유원시설업, 국제회의시설	시설 신규설치
1천만불 이상	복합화물터미널사업, 공동집배송센터 조성운영, 항만시설 운영사업, 배후단지 내 물류산업, 공항시설운영사업, 공항구역 내 물류산업, 사회간접시설 조성사업	시설 신규설치
5백만불 이상	고도기술수반사업, 산업기술서비스업을 위한 연구개발활동 - 석사이상의 3년 이상 경력자 10인 이상 상시고용	시설 신규·증설설치

○ 외국인 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구 분	기산시점	감면기간 및 감면율
국세	최초 이익발생연도	7(5)년간 100% 감면, 이후 3(2)년간은 50% 감면
법인세, 소득세		
지방세	사업개시일	5년간 100% 감면, 이후 3(2)년간은 50% 감면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관세, 특소세, 부가가치세	투자신고일	3년이내 100% 감면

- ※ 1. 국세, 지방세 감면은 과세액중 외국인투자지분 상당액에 한함
- 2. ( )내는 2005년부터 적용

### 1-22. 고도기술수반사업이 아니더라도 국·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가?

- 고도기술수반사업이나 산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국·공유토지 등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받을 수는 있음
- 외국인투자지역, 외국인기업전용단지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아래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의 100% 또는 75%감면 가능
  - 외국인투자지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100%)
  - 외국인투자금액 1백만불 이상의 조세감면대상사업 (100%)
  - 외국인투자금액 5백만불 이상의 일반제조업 영위사업 (75%)
  - 산업자원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업 (75%)
- 국가산업단지·일반지방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농공단지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의 50% 감면 가능

### 1-23. 외국인이 현금이 아닌 중고기계를 외국에서 도입하여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기계도입절차 및 법인설립시 유의사항은?

- 자본제도 외국인투자기업설립의 출자목적물이 될 수 있는데 이때에는 도입물품의 선적 전에 투자신고를 한 은행 또는 KOTRA(IK 및 국내무역관) 도입물품명세를 검토·확인 받을 수 있으며,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입승인대상 물품에 대하여 검토·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승인을 받은 것으로 인정함
- 외국인투자자가 기계 등 자본재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필증(사본)을 첨부하여 “현물출자완료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때 상법 제29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IK 관세청 파견관이 현물출자의 이행과 그 목적물의 종류, 수량, 가격 등을 확인한 “현물출자완료확인서”를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검사인 보고서”로 인정하므로 법인설립시 제출서류로 첨부하면 가능

## 1-24. 외국인직접투자의 기대효과는?

- 안정적인 외화확보 수단
  - 외국인 투자를 통할 경우 추가적인 외채 부담 없이 국제자본의 안정적 도입 가능
  - 외국인직접투자는 경영권을 확보하여 장기적인 사업이익의 획득을 목표로 하므로 순수한 금융적 성격의 투자에 비해 안정적임
  - 국내자본의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외국인투자에 의한 인수합병은 국내기업의 구조 조정에 긍정적 역할을 함
- 외국인투자의 경제적 효과
  - 전반적으로 유입된 자본 자체가 산업의 생산증가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아울러 경제전반의 생산성 제고, 기술이전, 고용확대, 수출확대 등을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함
  - 경제통합 증대 효과
    - 규모의 경제를 촉진시키고, 생산제품을 다양화하며, 다국적기업 본사와 지사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효율향상 및 경영조직의 유연성 제고
  - 경쟁제고 효과
    - 시장내 경쟁을 증대시켜 국내경제구조의 효율성 제고, 가격하락에 의한 소비자 후생 증가
  - 기술이전 및 확산 효과
    - 외국의 모기업이 국내 설립 자회사에 직접적인 기업내부거래로 기술을 이전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외국인투자 자회사를 중심으로 현지 연구인력 고용 등 여러 경로를 통해 국내 다른 기업에 기술 확산

- 무역수지 효과 : 정(+)의 효과와 부(-)의 효과가 동시 발생
  - 직접투자에 의한 현지생산은 수입대체효과를 가져와 무역수지를 개선하나 한편, 본국 모기업으로부터의 원자재·부품 등 생산요소의 수입증가를 초래하여 무역수지 악화
  - 생산거점형 외국인투자는 무역수지를 개선하는 반면, 내수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시장접근형 외국인투자는 완제품에 대한 수입대체 정도와 중간재 해외조달상황에 따라 다름
  - 현지국으로부터의 자본유입은 자본수지를 개선하나 로열티 지급, 과실송금 등은 무역외 수지 악화
- 고용효과
  - 현지 인력채용에 따른 직접적인 고용창출효과와 외국인투자기업의 중간재, 원자재 공급을 위한 현지기업의 고용확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완제품의 유통, 분배를 위해 관련 현지 기업의 고용확대
  - 다만, 노동집약적 생산방식을 사용해온 현지기업이 자본집약적인 외국인투자기업과의 경쟁관계에 의해 대체될 경우 고용감소 가능성도 있음

### 1-25. 외국인의 자본유입 등을 통한 외국투자기업 설립 이외에 기업 합병(M&A) 등을 통한 외국인투자 추진의 필요성은?

- 사회·경제적 측면
  - 성장 유망한 기업 도산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사양기업(산업)의 철수 및 기업퇴출 원활화와 성장기업으로의 진출도모
  - 경영효율성 증대 및 산업구조 개편시 진입비용 경감

- 신기술과 노하우, 인재육성, 새로운 시장의 확보 등 경영기반 확립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
- 시장지배력 강화 및 규모의 경제 추구
  - M&A에 따른 기업자원 사용의 집중력 확대와 시장지배력 강화
  - M&A를 통한 생산규모 대형화로 원자재구입비, 재고관리비, 고정생산비 등 각종 비용감소 및 규모의 경제 달성 가능
- 영업적 측면
  - 기업의 가치사슬(value chain activity) 확장을 통해 부가가치 증대 및 영업시너지 효과 획득
  - R&D 비용 절감과 시장진입속도 향상을 통한 기술우위 확보
- 재무적 측면
  - 기업의 위험감소 또는 이윤증대를 통한 위험분산효과 기대
  - 부채부담능력 증대와 조세절감 혜택 기대

### 1-26. 컨설팅 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가능한가?

- 컨설팅 서비스 제공업은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이 아니며, 단독투자, 합작투자 등 투자형태에 대한 제한도 없음
- 컨설팅업은 자유업종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준거법이 없으며, 또한 인·허가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음. 세무서에 사업자등록후 바로 영업개시 가능. 다만, 주식회사인 경우 최소 자본금은 5,000천만원 이상이어야 함

### 1-27. 해외 모기업의 국내지점 또는 사무소는 외촉법상 외국인투자자에 해당되는가?

- 외국인의 국내사업진출 방법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될 수 있으며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현지 법인설립 또는 개인사업자를 통한 진출방법과 외국환거래법의 절차에 의한 지점 또는 사무소 설립을 통한 진출 등임
- 현지법인의 설립(5,000만원 이상 투자, 단 투자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개인당 5천만원 이상) 및 개인사업자가 5,000만원 이상의 투자를 할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 직접투자자로 인정됨
- 해외 모기업의 지점은 국내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법인들과 동일한 법인세율이 적용되고, 사무소는 단지 본사를 위한 비영업적활동만을 수행할 수 있으며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자에 해당되지 않음

####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지사와의 구분

구 분	외국인 직접투자기업	외국기업 국내지사
근 거 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환거래법
법인성격	내국법인	외국법인
동 일 체	외국인투자자와 투자기업이 별도의 인격체 (회계·결산이 독립)	본점과 지사가 동일인격체 (회계·결산이 동일체)
신고·허가기관	IK 및 (KOTRA 국내·해외투자거점무역관) 외국환은행본점 및 지점	외국환은행지점(신고) 금감원(금융업등의 허가)
투자금액	최소 : 건당 5,000만원 최대 : 한도 없음	금액제한 없음

1-28. 외국인투자의 조세감면대상사업 중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이란?

- 조세지원제도의 의의
  -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외국인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조세를 감면(법 제9조)
-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재정경제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함
  - 고도기술수반사업 : 국내에서의 개발수준이 낮거나 개발이 되지 아니한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컴퓨터(64Bit 이상) 제조 및 설계
    - 컴퓨터 기억장치, 입·출력장치, 기타 주변기기 및 그 부품 제조
    - 방송, 무선통신기기 및 그 핵심부품 제조
    - 반도체소자, 재료, 장비 및 그 부품 제조 등
  - 산업지원서비스업 : 부가가치가 높고 제조업지원 등 다른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효과가 큰 서비스업으로써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영 관련기술
    - 소프트웨어(S/W)의 개발 및 제작기술
    -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관리시스템 기술
    - 전자상거래 관련 기술 등

### 1-29. 외국인투자의 조세감면대상사업 중 자유무역지역 등에 입주하는 사업이란?

#### ○ 대상사업

-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지역 입주업체가 영위하는 제조업 및 물류업
- 「국제물류기지육성을위한관세자유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지역의 물류업

#### ○ 투자요건 및 규모

- 공장시설을 새로이 설치하여야 하며, 제조업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 물류업은 외국인투자금액이 5백만불 이상
- 법인(소득)세 감면내용 : 소득이 발생한 년도(5년 이내에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할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부터 3년간은 외국인투자 지분의 법인세 등 전액, 다음해 2년간은 50%를 감면

#### < 종전의 마산 및 익산 자유무역지역 입주사업 >

- 종전의 수출자유지역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며(자유무역지역설치법 부칙 제2조), 조세감면 및 임대료 적용에 있어서 외국인투자지역과 동일하게 적용(법 부칙 제6조)
- 따라서 수출자유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기업과 동일한 조세 감면혜택을 받음

### 1-30. 외국인투자진흥관 및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의 설치와 역할은?

○ 외국인투자진흥관의 설치 및 역할

-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허가·인가·면허·승인·지정·해제·신고·추천·협의를 등에 관한 민원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독려하고, 관계기관간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외국인투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특별시·광역시 및 시·군·구에 설치

- 업무

- 민원사무 처리의 독려 및 점검
- 외국인투자 관련 민원신청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 민원사무의 대행
- 외국인투자의 유치·홍보 및 지원
-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사항 또는 건의사항의 접수·조사 및 처리
- 외국인투자의 유치와 관련되는 기관과의 정보교환·업무연락 및 행정협조
- 기타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각종 행정지원

○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의 설치 및 역할

-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설치
- 외국인투자의 유치·홍보 및 지원계획
-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사항의 처리협의
- 민원사무처리의 협의에 관한 사항
- 기타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31. 자기회사 주식을 담보로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해 외화를 차입한 순수 내국기업이 채무불이행으로 차관제공자가 담보물을 채권행사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에 해당되는지?**

- 외국인직접투자에 해당됨
- 주식취득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고, 지분율이 10% 이상이면 외국인투자촉진법 대상이며, 이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외국인이 기존 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를 하여야 함

**1-32. 외국인투자신고시 제출하는 첨부 서류 중 외국인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 외국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 해당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등기부등본이나 당해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국가에 소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외국인이 개인인 경우
  - 해당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시민권 증서 등 국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체재하고 있는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영주권 증서 또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이 발행한 재외국민 등록 증명서

**1-33.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이후 기존의 외국투자가가 주식의 추가 취득, 양도 등 경영활동 수행 등으로 인해 현행법령의 외국인투자요건(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2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외국인투자자로 인정되는지?**

○ 외국인직접투자자로 인정됨

- 외국인투자기업에 기존의 외국투자가가 추가로 5,000만원 미만, 10% 미만을 투자할 경우에도 외국인투자자로 간주
- 외국투자가가 소유주식을 내·외국인에게 일부 양도 또는 감자로 인해 외국인투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외국인투자자로 간주

예) 10% 주식 등을 소유한 외국투자가가 3%의 주식 등을 내·외국인에게 일부 양도한 경우 기존의 7%와 외국인이 양수한 3%는 계속 외국인투자자로 간주

**1-34. PM제도란 무엇이며, PM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가?**

- PM(Project Manager)제도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별로 지정할 수 있음
- PM은 외국인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진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기관과 이해당사자간의 이견을 조율하며,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운영자이며, 외국인 잠재투자가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하고, 외국인의 신규 또는 증액 투자 활동을 돕는 외국인투자활동 지원자로서 다음의 업무를 수행
  -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요청에 의한 자료 또는 정보의 수집·제공 및 면담의 알선
  - 법 제9조·제13조·제14조 및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관련 지원에 관한 의견 제시
  - 법 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자와 관련한 업무지원과 민원의 대행

- 주택임차, 학교입학의 안내 등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임·직원과 그 가족의 생활정착 지원
- 그 밖에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업무

### 1-35. Cash Grant제도란 무엇이며, Cash Grant를 향유하기 위한 요건은?

- Cash Grant 제도란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할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외국인과의 협상을 통해 일정한 용도에 소요되는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 다음의 사업 및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 해당
  -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기술수반사업(미화 1천만달러 이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
  - 부품소재사업(미화 1천만달러 이상,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의 규정)
    - 부품·소재의 범위 :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부품·소재중 산업자원부장관이 별도로 규정
  - 다음의 요건을 갖춘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기술수반사업을 위한 R&D시설
    -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일 것
    - 사업과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고용규모가 20인 이상일 것

- 현금지원은 다음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음
  -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매입비 또는 임대료
  -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건축비
  -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에서 사업용 또는 연구용으로 사용할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의 구입비
  -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신축에 필요한 전기·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
  -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1-36. 외국인투자기업이 회사를 분할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상 행정절차는?**

- 외국인투자기업인 A사가 분할하여 B사를 신규로 설립하는 경우, A사의 외국투자가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감소신고를 하여야 하며,
- B사의 외국투자가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 등에 의한 주식 등의 취득신고를 하여야 함

**1-37.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를 분실한 경우 재발급이 가능한가?**

- 분실 등으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를 재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재발급사유서, 재발급신청서(법정서식 없음) 및 각서나 확인서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에 제출하면 재발급이 가능함. 단, 각서나 확인서내용에는 등록증분실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1-38. 외국투자자가 기존주식취득신고 후 주식을 모두 양도받고 대금을 일부만 지급하고 부분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신청한 경우 동 등록증명서에 투자금액 및 비율을 어떻게 기재하여야 되는가?

- 외국투자자가 주식취득대금으로 실제 지급한 금액과 동 금액에 해당하는 비율만 기재 하여야 함

## 2. 투자 신고

## 차 례

2-1. 외국인 3인이 공동 출자하여 자본금 5천만원인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가? .....	39
2-2. 최고 투자금액에 대한 제한이 있는가? .....	39
2-3. 경영에 참여할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주식매매를 통해 이익을 얻고자 할 경우 외국인 투자가 되는가? .....	39
2-4. 자본금이 20억원 (액면가 1주당 5,000원, 총 발행주식수 400,000주)인 회사의 주식을 1주당 50,000원에 4,000 주를 할증 취득할 경우 외촉법상 외국인투자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	40
2-5. 국내기업의 우선주를 10% 이상 취득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	40
2-6. 한국에 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신고를 하는가? .....	41
2-7. 투자자금을 휴대 반입할 수 있는가? .....	41
2-8. 설립하려는 회사명의로 계좌번호가 없는 경우 송금방법은? .....	41
2-9. 투자한 돈은 언제부터 사용 가능한가? .....	42
2-10. 투자가 완료되면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반드시 하여야 하는가? .....	42
2-11. 투자한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	42
2-12. 투자한 회사로부터 무상증자를 한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절차는? .....	43
2-13. 장기차관이 아닌 상환기간이 1년 이하인 단기 외화자금 차입이 가능한가? .....	43
2-14. 외국의 A사가 국내기업인 B사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A사와 B사 간에 주식양도 계약을 체결한 이후 보증금으로 5% 상당액을 도입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A사와 B사간에 다시 합의하여 A사와 계열관계에 있는 다른 외국회사인 C사에 주식취득 권리 및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기도입된 A사의 자금을 C사의 외국인투자자금으로 사용하여도 이를 외국인투자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	43
2-15. 한국에 회사를 설립하고 직접 운영코자 하는데,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는가? .....	44
2-16. 한국내에 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업을 영위코자 하는 경우 절차는? .....	44
2-17. 외국기업 국내지사와 외국인 투자기업의 차이점은? .....	44

### 2-1. 외국인 3인이 공동 출자하여 자본금 5천만원인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가?

- 설립할 수 없음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 외국인이 2인 이상 투자하는 경우에는 1인당 투자금액은 5천만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 자본금이 최소 1억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함

### 2-2. 최고 투자금액에 대한 제한이 있는가?

- 없음
-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 외국인투자금액은 5천만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을뿐 투자 제한 상한선은 없음

### 2-3. 경영에 참여할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주식매매를 통해 이익을 얻고자 할 경우 외국인투자가 되는가?

- 단순한 주식매매는 외국인직접투자가 아님
- 상장주식의 주식투자가 목적인 경우 증권투자전용 대외계좌를 개설하여 이 계좌를 통해서 증권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외국에서 송금받고 이 계좌를 이용하여 투자대금을 외국으로 송금할 수 있음. 단, 10% 이상이면 외국인직접투자로 외촉법상 기존주식취득신고를 하여야 함
- 상장되지 않은 주식을 취득하려 하나 외국인투자의 요건(금액 5천만원, 비율 10%)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7-32조제2항에 의하여 '비거주자의 증권취득' 신고를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한 후 취득하여야 함

**2-4. 자본금이 20억원 (액면가 1주당 5,000원, 총 발행주식수 400,000주)인 회사의 주식을 1주당 50,000원에 4,000 주를 할증 취득할 경우 외촉법상 외국인투자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 인정받을 수 없음
  - 투자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총 발행주식에 대한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을 취득해야 외국인투자자로 인정받을 수 있음. 이 경우는 400,000주 중 4,000주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비율이 1% 밖에 되지 않으므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자에 해당되지 않음
- 다만, 10% 미만의 지분취득이라도 5천만원 이상 투자하고 지분율과 관계 없이 외국인 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인정받을 수 있음
  - 임원(이사, 대표이사, 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 감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경영상 중요의사결정에 참여할수 있는 권한을 가진자를 말한다)의 파견 또는 임원을 선임할수 있는 계약
  - 1년 이상의 기간동안 원자재 또는 제품을 납품하거나 구매하는 계약
  - 기술의 제공·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 계약

**2-5. 국내기업의 우선주를 10% 이상 취득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자로 인정 받을 수 있는가?**

- 인정받을 수 없음.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 이상 취득해야 외국인투자자가 될 수 있음 그러나, 의결권 있는 우선주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자로 인정됨

### 2-6. 한국에 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신고를 하는가?

- 해외에 있는 KOTRA 36개 해외투자거점무역관에 본인이 직접 신고하거나,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자와 관련한 제반 신고 및 수행절차에 대하여 대리인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대리인이 위임장을 가지고 신고하고,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고시 필히 외국투자자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로는 외국인투자및기술도입에관한규정(산업자원부고시 제2004-51호('04.5.11))제7조제4항 및 제5항에서 정하고 있음

### 2-7. 투자자금을 휴대 반입할 수 있는가?

- 가능함
- 현금 등 지급수단을 휴대 반입할 경우에는 관할 세관에 신고하고 반드시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교부 받아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제4항)

### 2-8. 설립하려는 회사명의로 계좌번호가 없는 경우 송금방법은?

- 계좌번호가 없어도 외국환은행 영업점 이름과 수취인만 표시해도 국내에서 자금 수취가 가능함
-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임시 계좌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음

## 2-9. 투자한 돈은 언제부터 사용 가능한가?

- 송금한 돈은 회사설립등기 후에, 또는 증자등기 후에 사용 가능함. 자본금을 은행에 예치하고 주금납입증명서와 기타 회사설립 서류를 등기소에 제출하여 법인설립 등기를 마친후, 법인설립 등기부등본을 은행에 제출하면 은행은 회사명의로 계좌(법인계좌)를 개설하여 자본금을 이체함

## 2-10. 투자가 완료되면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반드시 하여야 하는가?

-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한 경우에는 반드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투자자가 등록을 해야 함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유발생(납입을 완료한 경우 등)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
  -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하기 전 또는 기존주식 등의 취득대금을 정산하기 전이라도 5천만원, 10% 이상 투자한 경우에는 투자기업의 등록을 할 수 있음
-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는 배당금의 대외 송금, 외국투자자의 국내 사업비자 신청 등에 필요한 서류임

## 2-11. 투자한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 최초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기관 (은행 또는 KOTRA)에 주식양도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구비서류로는 양도인과 양수인과의 주식매매계약서와, 양수인이 신규투자자인 경우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양도신고서가 있어야 매각대금을 대외 송금할 수 있음

### 2-12. 투자한 회사로부터 무상증자를 한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절차는?

- 외국투자자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무상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외촉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신고" 를 하여야 함
- 첨부서류는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무상증자를 결의한 주총 결의서 및 증자된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하여야 함

### 2-13. 장기차관이 아닌 상환기간이 1년 이하인 단기 외화자금 차입이 가능한가?

- 1년 이하의 외화자금 차입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인 아닌 외국환거래규정(제7-14조제3항)의 적용을 받게 되어 단순 외화 차입에 해당됨. 외국인투자기업은 상환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다음 조건이 충족되면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고 차입할 수 있음
- 외국인투자기업이 일반제조업체인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의 100분의 50 이내로 해외에서(해외 모기업 외 제 3자도 가능) 차입이 가능하고,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고도기술 업체는 외국인 투자금액 100% 범위내로 해외에서(해외 모기업 외 제3자도 가능) 차입이 가능함. 단, 이 경우에 외국인 투자비율이 1/3미만인 경우는 외국인 투자금액의 100분의 75이내로 한도가 제한됨

### 2-14. 외국의 A사가 국내기업인 B사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A사와 B사간에 주식 양도계약을 체결한 이후 보증금으로 5% 상당액을 도입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A사와 B사간에 다시 합의하여 A사와 계열관계에 있는 다른 외국회사인 C사에 주식취득권리 및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기도입된 A사의 자금을 C사의 외국인 투자자금으로 사용하여도 이를 외국인투자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 외화자금이 관련규정(외국환거래법 등)을 통해 도입되었고, 동 자금을 A사가 C사 계정으로 이체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C사의 외국인투자자금으로 인정이 가능함
- 즉, 외국인투자신고를 위해 동 자금이 해외로 송금하였다가 다시 C사 명의로 국내에 도입하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음

**2-15. 한국에 회사를 설립하고 직접 운영코자 하는데,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는가?**

- 외국인투자기업에 투자한 외국투자거나 투자 모기업으로부터 파견되어 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은 기업투자 사증을 받아 체류할 수 있음(종합행정지원실 법무부 파견관 ☎ 02-3460-7571)

**2-16. 한국내에 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업을 영위코자 하는 경우 절차는?**

- 임대업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여 회사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임대수입은 결산 완료 후 배당금 형태로 대외 송금할 수 있음
- 그러나, 단순히 소유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려 한다면 외국인(법인, 개인)은 당해 부동산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또는 담보취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2-17. 외국기업 국내지사과 외국인투자기업의 차이점은?**

- 외국인투자기업은 국내법인이며 회계, 결산이 외국 모기업과 독립적이며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적용하고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함
-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외촉법상 조세감면대상 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음
- 반면, 국내지사(사무소)는 외국법인으로 회계, 결산을 외국 본사와 같이 하며 적용 법률은 외국환거래법이고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며 최초 지사설립신고를 받은 외국환은행 본·지점(지정외국환거래은행)에서만 영업자금 도입 및 과실 송금이 가능함

## 3. V I S A

## 차 례

3-1. 사증이란 무엇이며 사증발급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가? .....	49
3-2. 체류자격제도는 무엇인가? .....	49
3-3. 사증의 종류 및 단수사증과 복수사증의 유효기간은? .....	50
3-4.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사증이 있어야 입국이 가능한가? .....	51
3-5. 기업투자(D-8)사증 발급 대상자의 범위는? .....	52
3-6. 기업투자(D-8)사증을 발급 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 .....	53
3-7. 외국인투자지원센터(IK)에서 취급하는 외국인 체류허가업무는 무엇인가? .....	53
3-8. 사증발급인정서 제도란? .....	54
3-9.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대상자의 범위는? .....	54
3-10. 기업투자(D-8)사증 관련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시 제출서류는? .....	55
3-11. 단기사증(체류기간 90일 이하) 또는 무사증으로 입국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한 경우 기업투자(D-8) 사증을 재외공관에서 발급받기 위해 출국해야 하나? .....	56
3-12. 기업투자(D-8)자격으로의 체류자격변경허가는 외국인(개인) 투자가는 물론 국내에 설립된 외국인 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으로부터 필수전문인력으로 파견되는 자도 해당되는가? .....	56
3-13. 기업투자(D-8)자격으로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및 체류기간 연장 허가 신청시 영문으로 된 제출서류는? .....	57
3-14. 투자기업(D-8)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 또는 단기사증이나 무사증으로 입국하여 국내에서 투자 기업(D-8)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국내체류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는? .....	58
3-15. 외국인등록 대상자 및 외국인등록시 제출서류는? .....	58
3-16. 투자기업(D-8)사증 소지자는 국내에서 얼마동안 체류할 수 있으며, 체류기간 연장시 구비서류는? .....	59
3-17.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국내체류중 일시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	60

3-18.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유효기간 1년의 단수사증을 소지한 재입국허가 면제국가인 프랑스 국민인 경우, 외국인등록을 하기 전에 출국을 하면 어떻게 되나? .....	61
3-19. 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의 동반가족의 체류자격은 무엇이며 사증발급 신청 및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시 구비서류는? .....	61
3-20. 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체류중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	61
3-21. 캐나다 시민권자로서 관광통과(체류자격 : B-2, 체류기간 : 6개월) 사증으로 2004.02.15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경우 체류기간 만료일은 언제인가? .....	62
3-22. 중국 길림성 출신으로 외국인투자법인인 (주)한중우호통상무역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자가 법인등기부상 이사(실제 투자자는 아님)로 등재된 중국인 2명에 대하여 기업투자비자(D-8비자)로 초청이 가능한가? .....	62
3-23. 태국인으로 대한민국에 5천만원 이상을 투자하면 태국전통 맛사지업을 차릴 수 있는가? 또한 외국인을 발맛사지사, 피부관리사, 스파(Spa) 등으로 고용할 수 있는가? .....	63
3-24. 친척방문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 불법체류중 정부의 불법체류자 합법화조치에 의하여 비전문취업(E-9)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은 후 체류중인 중국인이 로또복권 1등에 당첨되었는바, 만약 이를 국내에 투자하여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출국하지 아니하고 기업투자(D-8)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는가? .....	63
3-25. 컨테이너 운송용 트레일러 제조업체에 외국투자가가 10억원을 투자하면 국내에 계속 체류하면서 영주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가? .....	63
3-26. 단기상용(C-2) 비자의 발급대상자 및 제출서류는? .....	64
3-27. 허위의 신원보증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허위로 사증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가? .....	65
3-28. 업무상 자주 해외출장을 하는 기업투자(D-8)비자 소지자를 위해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 임직원들의 출입국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전용 출입국 심사대가 설치되어 있는가? .....	66

### 3-1. 사증이란 무엇이며 사증발급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가?

- 査證은 영어로 Visa라고 하는데 이 말은 배서 또는 확인을 의미하는 라틴어의 Visus에서 유래함
- 사증은 신청인의 여권이 외국정부기관에서 합법적으로 발급된 유효한 여권임을 확인하는 동시에 사증에 기록된 조건하에서 그 나라에의 입국 및 체류가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종의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속함
- 사증은 국가정책에 따라 외국인에 대하여 그 나라에 입국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입국 허가확인』으로 보는 국가와 외국인의 입국허가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추천행위』로 보는 국가로 대별되는데 미국·일본·우리나라는 사증발급을 영사의 입국추천행위로 보고 있음
- 따라서 외국인이 유효한 사증을 소지하고 우리나라에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결과 입국허가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예: 입국 금지자, 불법취업기도자, 입국목적불분명자 등)에는 입국이 거부될 수 있음
- 사증발급 권한은 법무부장관에게 있으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재외공관의 장』이란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공사·총영사·영사 또는 영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을 말함

### 3-2. 체류자격제도는 무엇인가?

- 우리나라는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관리에 관한 기본제도로서 체류자격제도를 두고 있는바, 체류자격이란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행할 수 있는 사회적인 활동이나 신분의 종류를 유형화한 것으로 외국인 체류관리의 기준이 됨
- 따라서 일정한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이나 신분상태를 유지하는 한 허가받은 기간동안은 국내체류를 보장받지만,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하거나 체류자격외 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법무부장관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함

- 일반적으로 세계 각국은 입국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 등 업무상의 편의를 위하여 일정한 체류자격을 규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체류자격부여에 있어서는 사증발급시에 체류자격도 동시에 부여하는 『단일심사제』와 사증은 단순한 입국심사에 그치고 입국시에 출입국심사관이 별도로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이중심사제』가 있는바, 우리나라는 전자를 택하고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 사증에는 체류자격·체류기간 등이 표시되어 있으며, 외국인은 합당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내에서 체류할 수 있으며,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C-4 및 E계열 사증)을 소지하고 지정된 근무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함
- 체류자격은 영어의 알파벳 대문자와 숫자의 조합(예: A-1)으로 표시하며 현행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 [별표1] 에 34개의 체류자격을 두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체류기간이 90일 이하인 경우를 단기체류, 91일 이상인 경우를 장기체류로 구분하고 있으며, 91일 이상 장기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함

### 3-3. 사증의 종류 및 단수사증과 복수사증의 유효기간은?

- 사증은 1회에 한하여 입국할 수 있는 단수사증(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개월)과 2회 이상 입국할 수 있는 복수사증(유효기간: 원칙적으로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 단,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는 3년간 유효한 복수사증 발급, 복수사증발급협정에 의해 발급된 사증은 협정상 기한)으로 구분됨
- 실무상의 사증유형을 살펴보면 크게 네 가지 경우로 구분됨
  - 외교·공무·협정수행자(SOFA해당자) 및 그 가족에게 발급되는 사증 : 외교(A-1)사증, 공무(A-2)사증, 협정(A-3)사증
  - 비영리목적으로 단기간 체류(90일내) 하고자 하는 자에게 발급되는 단기사증 : 일시취재(C-1)사증, 단기상용(C-2)사증, 단기종합(C-3)사증

-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에게 발급되는 취업사증 (체류자격 E계열 사증) : 단기취업(C-4)사증, 교수(E-1)사증, 회화지도(E-2)사증, 연구(E-3)사증, 기술지도(E-4)사증, 전문직업(E-5)사증, 예술홍행(E-6)사증, 특정활동(E-7)사증, 연수취업(E-8)사증, 비전문취업(E-9)사증, 관광취업(H-1)사증,
- 기타 실무상 일반사증 : 문화예술(D-1)사증, 유학(D-2)사증, 산업연수(D-3)사증, 일반연수(D-4)사증, 취재(D-5)사증, 종교(D-6)사증, 주재(D-7)사증, 기업투자(D-8)사증, 무역경영(D-9)사증, 방문동거(F-1)사증, 거주(F-2)사증, 동반(F-3)사증, 재외동포(F-4)사증, 영주(F-5)사증, 기타(G-1)사증
- \* 사증발급에 관한 안내는 출입관리국 홈페이지 [www.moj.go.kr/immi](http://www.moj.go.kr/immi)를 클릭하여 상단→출입국주요업무→사증발급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3-4.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사증이 있어야 입국이 가능한가?

-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유효한 여권 또는 선원수첩과 재외공관 (해외주재 대한민국 대사관 및 영사관을 말함)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입국할 수 있음.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사증 없이 입국 가능함
  -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하여 재입국허가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입국하는 자
  -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로서 그 협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이 되는 자
  -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사증을 가지지 아니하고 입국하고자 하는 자
  - 대한민국을 관광 또는 통과할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자
  - 기타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하여 그 입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사증면제협정 체결 내용은 협정 체결국가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수를 받거나 영리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관광·방문 등의 목적으로 단기간(3개월 이내) 체류하려는 자로 한정되어 있음

-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Visa Waiver Agreement)을 체결한 국가는 2004년 4월말 현재 영국, 프랑스, 독일, 싱가포르, 뉴질랜드 등 78개 국가로 동 국가 국민들은 대한민국에 입국할 때 사증면제(B-1) 체류자격과 협정상 체류기간(대부분 3개월)을 부여받음
- 무사증 입국허가 대상 국가는 2004년 4월말 현재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등 50개 국가로 동 국가 국민들이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관광·통과(B-2) 체류자격과 30일의 체류기간을 부여한 후 입국을 허가함. 단, 캐나다 국민은 6개월, 호주·홍콩·슬로베니아 국민은 90일의 체류기간 허용(상호주의 원칙에 의함)
- 쿠바, 마케도니아 등 미수교국가, 중국, 몽골, 필리핀, 파키스탄, 네팔, 나이지리아 등 국내 불법체류자 다수발생 국가 국민에 대해서는 무사증 입국을 불허함

### 3-5. 기업투자(D-8)사증 발급 대상자의 범위는?

- 투자금액 5천만원 이상을 투자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외국(개인)투자가, 국내에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으로부터 필수전문인력으로 파견되어 경영이나 관리 및 전문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자(개인투자가, 경영자 또는 전문기술자로 파견되는 자를 포함하되 국내에서 채용되는 자는 제외)
- 필수전문인력이란 외국인투자기업을 관리·운영하는 임원(Executive) 또는 상급관리자(Senior Manager)와 관련기술 지원을 위해 파견되는 고도의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가진 전문기술자를 말함
- 따라서 국내에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한 투자가측 대표 및 기술적 지원이 불가피하여 파견되는 기술자 이외에 일반적인 행정업무 또는 국내에서 대체가 가능한 기술자 및 직접적인 용역서비스 제공자는 필수전문인력이 아님

### 3-6. 기업투자(D-8)사증을 발급 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

- 외국인인 기업투자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세가지가 있음

첫째, 법무부장관은 재외공관장에게 체류기간 1년 이하의 기업투자(D-8) 사증발급권한을 위임하였으므로, 외국인이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재외공관에 직접 신청하여 기업투자(D-8)사증을 발급받는 경우가 있으며,

둘째, 국내에 있는 초청인이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아 이를 피초청인에게 전달하면 피초청인은 재외공관에 가서 동 사증발급인정서와 여권만 제출하면 즉시 기업투자(D-8)사증을 발급받는 경우가 있음

셋째, 부득이한 사유로 기업투자(D-8)사증을 발급받지 못하고 국내에 입국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한 외국인(개인)투자가, 국내에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으로부터 필수전문인력으로 파견된 자는 체류기간 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외국인투자지원센터(IK)에 체류자격변경허가를 신청하면 기업투자(D-8)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음

- \* 외국인투자기업의 설치 준비를 위하여 입국하고자 할 때에는 재외공관에서 단기상용(C-2)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절차를 마친 후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는 것이 원칙임

### 3-7. 외국인투자지원센터(IK)에서 취급하는 외국인 체류허가업무는 무엇인가?

- 우리나라의 외국인 체류허가업무에는 체류자격부여, 체류자격변경허가, 체류기간연장허가,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근무처 추가 및 변경허가, 재입국허가 업무 등이 있음
- 외국인투자지원센터(IK)에서는 기업투자(D-8)자격 해당자 및 그의 동반가족에 대한 체류자격변경허가, 체류기간연장허가, 재입국허가업무 등을 취급하고 있음

### 3-8. 사증발급인정서 제도란?

- 사증발급인정서 제도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발급권한이 위임되지 아니한 장기체류사증 등에 대하여 사증발급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증발급기간을 단축하여 국내에 있는 초청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외공관장의 사증발급에 앞서서 미리 국내 초청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심사한 후 사증발급을 인정하도록 한 제도이며, 피초청 외국인이 여권과 사증발급인정서를 재외공관에 제출하면 즉시 입국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음
  - 참고로 재외공관의 장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지 아니한 장기사증 등의 발급 신청에 대하여는 외교통상부장관을 경유, 법무부장관에게 상신하여 그 결정에 따라 사증을 발급하게 되므로 처리기간이 오래 소요됨
- ★ 사증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 3-9.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대상자의 범위는?

- 특정국가 국민인 쿠바인
- 중국인 (단, 중국인에 대한 사증발급권한 위임에 따라 재외공관장에게 위임된 사항은 제외)
- 재외공관장에게 사증발급권한이 위임되지 아니한 장기체류사증

### 3-10. 기업투자(D-8)사증 관련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시 제출서류는?

- 첫째, 투자금액 5천만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개인) 투자가인 경우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 여권 사본(인적사항란)
  -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증명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투자금액을 휴대반입한 경우 외국환신고필증(세관발행)
  - 투자금액을 송금한 경우 송금거래내역서
  - 외화매입증명서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 통장 사본
  
- 둘째, 국내에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으로부터 필수전문인력으로 파견되는 경우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 여권 사본(인적사항란)
  - 초청사유서
  -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 이력서
  - 필수전문인력 입증서류(학위증 사본,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납세사실증명원

**3-11. 단기사증(체류기간 90일 이하) 또는 무사증으로 입국하여 외국인투자 기업을 설립한 경우 기업투자(D-8) 사증을 재외공관에서 발급받기 위해 출국해야 하나?**

- 부득이한 사유로 기업투자(D-8)사증을 발급받지 못하고 국내에 입국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한 외국투자자는 체류기간 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외국인투자지원센터(Invest KOREA)에 체류자격변경허가를 신청하면 기업투자(D-8)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음
- 단, 단기종합(C-3)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한 중국인중 단체관광객의 일원 또는 순수한 관광목적으로 개별 입국한 자, 유학(D-2), 산업연수(D-3), 어학연수(D-4), 연수취업(E-8), 비전문취업(E-9), 기타(G-1), 관광취업(H-1) 자격 소지자는 기업투자(D-8)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음
- 외국인투자기업의 설치 준비를 위하여 입국하고자 할 때에는 재외공관에서 단기상용(C-2)사증을 발급받아 입국,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절차를 마친 후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는 것이 원칙임
-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시 제출서류는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 여권 사본(인적사항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외국환매입증명서, 투자금액을 휴대반입한 경우 외국환신고필증(세관발행), 투자금액을 송금한 경우 송금거래내역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수수료 5만원

**3-12. 기업투자(D-8)자격으로의 체류자격변경허가는 외국인(개인) 투자자는 물론 국내에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으로부터 필수전문인력으로 파견되는 자도 해당되는가?**

- 기업투자(D-8)자격으로의 체류자격변경허가는 5천만 이상을 투자한 개인투자자는 물론 국내에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으로부터 필수전문인력으로 파견된 자도 해당됨

- 국내에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으로부터 필수전문인력으로 파견되는 경우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시 제출서류는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 여권사본(인적사항란), 초청사유서, 이력서,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필수전문인력 입증서류(학위증 사본,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등),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납세사실증명원, 수수료 5만원

### 3-13. 기업투자(D-8)자격으로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및 체류기간 연장 허가 신청시 영문으로 된 제출서류는?

- 여권 사본 (Photocopy of Passport)
- 파견명령서 (Dispatch Order or Assignment Letter)
- 재직증명서 (Certificate of Employment)
- 사업자등록증 (Certificate of Business Registration)
- 법인등기부등본 (Incorporation Register Book)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Certificate of FDI Company Registration)
- 외국환 신고필증 (Certificate of Declaration of Foreign Exchange)
- 외화매입증명서 (Certificate of Purchase of Foreign Exchange)
- 송금거래 내역서 (Bank Transaction Statement)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Office Rental Contract or Lease Agreement)
- 납세사실증명서 (Certificate of Tax Payment)
- 수출신고필증 (Certificate of Export Report)
- 위임장 (Power of Attorney)

**3-14. 투자기업(D-8)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 또는 단기사증이나 무사증으로 입국하여 국내에서 투자기업(D-8)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국내체류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는?**

- 투자기업(D-8)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단기사증이나 무사증으로 입국하여 국내에서 투자기업(D-8)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즉시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한 후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함

**3-15. 외국인등록 대상자 및 외국인등록시 제출서류는?**

- 대한민국에 장기간(91일 이상)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함
- 우리나라 국민에게는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듯이 외국인에게는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고 있는데, 이는 외국인의 거주관계 및 신분관계를 명확히 하여 체류외국인의 공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임
- 외국인등록 대상자
  -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자
  - 대한민국국적을 상실하고 외국국적을 취득하였거나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 등이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그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자
  - 국내 체류외국인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자
- \* 체류자격 외교(A-1), 공무(A-2), 협정(A-3)해당자는 외국인등록이 면제됨

## ○ 외국인등록 시기

-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자는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 체류자격부여 또는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때 (즉시)

★ 위 기간내에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처벌대상이 됨

## ○ 구비서류

- 여권
- 외국인등록신청서
- 천연색 반명함판 사진 3매
- 수수료 1만원

★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함 (만 17세 미만자일 경우 대리 신청 가능)

<b>3-16. 투자기업(D-8)사증 소지자는 국내에서 얼마동안 체류할 수 있으며, 체류 기간연장시 구비서류는?</b>
--

-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은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부터 만료 당일까지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하여야 함. 다만, 해외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30일 이전에도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
- 체류기간연장 횟수는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며, 다만 투자기업(D-8)사증인 경우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선은 2년으로, 개인투자자로서 불법활동 사실이 없이 사업활동을 계속하거나 국내에 설립된 외투기업의 해외 모기업으로부터 필수 전문인력으로 파견된 자가 계속 근무하고자 하는 경우 횟수에 제한없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음

- 체류기간연장시 구비서류는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청서, 재직증명서,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원, 수출입신고필증, 수수료 3만원,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 체류기간연장허가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납세실적과 무역거래실적 등에 따라 결정됨

**3-17.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국내체류중 일시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 복수 장기사증소지자 : 복수 장기사증 유효기간과 외국인등록증상의 체류기간이 일치하는 기간까지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출입국 할 수 있음

★ 복수사증 유효기간과 외국인등록증상의 체류기간이 다를 경우 체류기간 만료일은 외국인등록증상의 체류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함

- 단수사증소지자 및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자 :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외국인투자지원센터에서 단수 또는 복수재입국허가를 받아야 동기간내에 출입국할 수 있음

★ 출국 당일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재입국허가를 받을 수 있음

- 재입국허가 면제국가 국민 : 프랑스, 독일,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스위스, 스웨덴,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수리남, 그라나다 등 12개 국가 국민은 체류허가기간내에 자유로이 출입국 할 수 있음

- 재입국허가대상자는 대한민국에 91일 이상 체류하게 되는 자로서 외국인등록을 한 자이므로 재입국허가면제국가 국민이라도 반드시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재입국이 면제됨

- 재입국허가를 하는 때에는 여권의 유효기간, 체류허가기간, 재입국허가기간의 범위(단수: 1년, 복수: 2년)내에서 허가기간을 정하여 허가함

★ 체류허가기간은 여권의 유효기간 범위내, 재입국허가기간은 체류허가기간 범위내에서만 가능함

**3-18.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유효기간 1년의 단수사증을 소지한 재입국 허가 면제국가인 프랑스 국민인 경우, 외국인등록을 하기 전에 출국을 하면 어떻게 되나?**

- 외국인이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비록 양국간 재입국허가면제협정이 체결되었다하더라도 일단 외국인등록을 해야 재입국이 면제되므로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출국하게 되면 사증자체가 단수이므로 무효가 됨

**3-19. 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의 동반가족의 체류자격은 무엇이며 사증발급신청 및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시 구비서류는?**

- 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의 동반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및 20세미만의 미혼 자녀이며, 사증발급신청 및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해당 외국인과 동시에 신청할 때는 여권, 신청서, 가족관계 입증서류(결혼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따로 신청할 때는 상기 서류이외에 해당 외국인의 재직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 체류자격은 동반(F-3)자격, 체류기간은 배우자 또는 부(모)의 체류기간과 동일함

**3-20. 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체류중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 먼저 국내에 있는 자국공관에 출생신고를 하고 여권을 발급받아 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외국인투자지원센터에 출생자녀에 대한 체류자격부여 신청을 하여야 함

- 체류자격부여 신청시 제출서류는 여권, 신청서, 출생증명서, 부 또는 모의 재직 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수수료 4만원이며 법정기간(30일) 내에 여권을 발급받기 어려우면 법정기간 내에 체류자격부여 신청을 한 후 추후 여권을 발급받아 보완·제출하면 체류자격을 부여(체류자격: F-3, 체류기간: 부모와 동일기간) 받을 수 있음
- 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출국할 때는 체류자격부여를 신청하지 않고 출국할 수 있으며, 다만 체류자격부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자는 체류자격부여를 받음과 동시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함

**3-21. 캐나다 시민권자로서 관광통과(체류자격 : B-2, 체류기간 : 6개월) 사증으로 2004.02.15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는데 체류기간 만료일은 언제인가?**

- 체류기간 계산시 입국일은 포함되지 아니하며 입국한 다음 날부터 체류기간이 산정되며, 체류기간 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만료일로 함
- 예를 들면, 관광통과(B-2, 6개월)사증으로 2004.02.15일 입국하였다면 체류기간 만료일은 2004.08.15일이나 이 날은 광복절로 공휴일이므로 그 다음날인 2004.08.16일이 체류기간 만료일이 됨

**3-22. 중국 길림성 출신으로 외국인투자법인인 (주)한중우호통상무역의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자가 법인등기부상 이사(실제 투자자는 아님)로 등재된 중국인 2명에 대하여 기업투자비자(D-8비자)로 초청이 가능한가?**

- 개인투자 외국인이 국내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투자자가 아닌 외국인을 법인등기부에 이사 등 임원으로 등재한 뒤, 동 외국인을 초청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기업에서 파견된 자 또는 개인투자자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에서 외국인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 해당됨으로 취업비자인 특정활동(E-7)비자를 발급받아야 함

**3-23. 태국인으로 대한민국에 5천만원 이상을 투자하면 태국전통 맛사지업을 차릴 수 있는가? 또한 외국인을 발맛사지사, 피부관리사, 스파(Spa) 등으로 고용할 수 있는가?**

- 사증발급인정서발급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피부, 발관리 및 스포츠 맛사지 업종에 종사하고자 하는 외국인 투자가인 경우 단독으로 맛사지 업체를 운영하거나 외국인 본인이 안마사로서 활동하고자 하는 경우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이 불허됨. 또한 외국인을 발맛사지사, 피부관리사, 스파(Spa) 등으로 고용할 수는 없음

**3-24. 친척방문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 불법체류중 정부의 불법체류자 합법화 조치에 의하여 비전문취업(E-9)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은 후 체류 중인 중국인이 로또복권 1등에 당첨되었는바, 만약 이를 국내에 투자하여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출국하지 아니하고 기업투자(D-8)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는가?**

- 비전문취업(E-9)자격 소지자는 기업투자(D-8)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음. 다만, 기업투자(D-8)사증을 발급받기 위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할 수 있으나, 과거 불법체류경력으로 인하여 엄격한 심사를 받게 됨
- 이 경우 로또복권 1등에 당첨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사업자등록 및 외국인투자 기업 설립, 국내 은행에 당첨금만 예금한 채 이자수익으로 생활하는 대신에 국내에 투자를 하여 적극적으로 기업활동에 참여하면서 우리나라 경제발전과 국민의 고용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음을 입증하여야 함

**3-25. 컨테이너 운송용 트레일러 제조업체에 외국투자가가 10억원을 투자하면 국내에 계속 체류하면서 영주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가?**

- 미화 50만불 이상을 투자한 외국투자가로서 기업투자(D-8)자격으로 3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하면서 국민의 고용창출에 기여한 자는 영주(F-5)자격을 신청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 만 30세 이상 경제활동 능력자
  - 사행행위 업종, 유흥주점,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업종을 영위하지 않아야 함
  - 상시 5인 이상의 한국인을 정규직으로 고용하여야 함
- 참고로 미국의 경우 투자이민제도가 있는데 동 제도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 외국투자가는 투자금액으로 최소한 100만불 이상을 투자하여야 함(단, 도시근교나 시골지역은 50만불만 투자하여도 가능)
  - 최소한 10명 이상의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파트타임(Part-time)이 아닌 풀타임(Full-time)으로 고용하여야 함
- 상기 두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위장투자 이민을 방지하기 위하여 2년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을 발급하게 되며, 2년후에는 2년동안 투자된 상태와 10명 이상의 고용사실을 증명하면 정식 영주권을 취득하게 됨

### 3-26. 단기상용(C-2) 비자의 발급대상자 및 제출서류는?

- 단기상용(C-2) 비자의 발급대상자
- 외국기업 국내지사, 외국인 투자기업 등의 설치 준비를 위하여 활동하거나 국내지사 등과의 업무연락을 하려는 자
  - 국내 공·사기관의 초청으로 입국하여 국내 업체와 구매계약, 시장조사, 상담 등의 활동을 하려는 자
  - 수출입기계 등의 설치, 보수, 검수, 운용요령 습득 등의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고자 하는 자

-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고자 하는 자
- 제출서류
  - 초청장 (법률사무소 공증) : 초청목적, 국내 초청회사와 피초청인 소속회사와의 무역거래관계, 피초청인의 국내체류일정 등 기재
  - 초청회사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원본, 납세사실증명원 원본
  - 상용목적 입증서류 : 물품구매계약서 및 사업추진 의향서(최초 거래일 경우), L/C 사본 및 수출입신고필증(기존 거래일 경우)
  - 피초청인의 재직증명서 또는 출장명령서, 이력서, 거민신분증(중국인인 경우)
  - \* 최근 2년 이내 단기상용(C-2)비자로 3번 이상 한국에 입국한 경우, 4번째부터는 초청장 없이 재직증명서와 신청서만으로 단기상용비자 신청이 가능함

**3-27. 허위의 신원보증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허위로 사증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가?**

- 출입국관리법 제7조2(허위초청 등의 금지)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 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 허위사실의 기재 또는 허위의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
  - 허위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
  - \* 상기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됨

**3-28. 업무상 자주 해외출장을 하는 기업투자(D-8)비자 소지자를 위해 외국 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 임직원들의 출입국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전용 출입국심사대가 설치되어 있는가?**

- 법무부는 외국인 투자자들과 APEC카드 소지 기업인들이 신속·편리하게 출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2004. 02. 01부터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전용심사대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 개인투자 외국인,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 임직원, 투자시찰단 기타 국내투자유치활동에 기여하고 있는 외국인과 그 가족, APEC카드 소지자 등은 주황색으로 표시된 “투자 외국인 및 APEC카드” 전용심사대를 이용하여 출입국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음
- 동 전용심사대 운영은 우리나라의 외자유치 및 외국인의 투자활동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인천공항 시범실시 후 전국 공항만으로 확대·시행할 예정임

## 4. 조 세

## 차 례

4-1. 조세감면신청서 접수처 및 결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	73
4-2. 사업연도가 1.1~12.31인 외국인투자기업이 12.31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조세감면 신청기한은? .....	73
4-3. 조세감면내용 변경시 변경내용을 언제까지 신청하여야 하는지? .....	73
4-4. 조세감면 신청기한이 경과한 후에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	73
4-5. 사업개시일이 2003.07.01.인 고도기술수반사업을 영위하는 순수내국법인이, 2004.10.01. 증자에 의한 신주취득방식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이 된 경우, 조세감면 신청기한은? ...	74
4-6.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시 조세감면 신청일은? .....	74
4-7.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를 할 경우 조세감면 기산일은 증자 신고일인가, 증자 등기일인가? .....	74
4-8. 타인에게 위탁하여 고도기술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감면여부는? .....	75
4-9. 외국인투자신고시에는 조세감면 대상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으나 추후에 감면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감면을 받을수 있는가? .....	75
4-10. 자동차부품(A) 제조사업에 대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바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액투자 없이 고도기술업종인 자동차부품(B) 제조사업을 추가로 영위하는 경우 조세감면 변경신청의 대상이 되는 지의 여부와 감면기간은? .....	75
4-11. 자동차 생산공정중 일부만 고도기술인 경우에 자동차 판매소득도 감면되는가? .....	75
4-1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이 극장을 취득할 경우, 지방세가 중과세 되는가? .....	76
4-1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부동산 취득 등의 경우에 등록세 3배 중과세가 배제되는 도시형 업종은? .....	77
4-14. 고도기술 및 외투지역의 법인세의 감면기간이 7년간 100%, 3년간 50%에서, 2005년 부터 5년간 100%, 2년간 50%로 축소되는데 그 기준일은? .....	77
4-15. 사업개시 1차 연도에는 예치한 출자금에서 이자만 발생하고, 2차 연도부터 감면대상사업 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 감면 기산일은? 이때 이자소득은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되는가? .....	77
4-16. 현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증자를 통해 고도기술수반사업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사업개시일은? .....	78

4-17. 고도기술수반사업을 영위하고자 공장을 취득한 이후에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경우, 기납부한 취득세·등록세를 환급받을수 있는가? .....	78
4-18. 외국인투자기업의 세목별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	78
4-19. 자본금이 10억원인 내국법인이 10억원을 증자하면서, 외국인투자자에 대하여 신주 10억원을 100% 할증 발행하여 외국인투자금액이 20억원이 된 경우 외국인투자비율은? .....	79
4-20.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의해 외국인투자자와 관련된 조세감면을 받으면서 또한 동법 제6조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도 받을 수 있는가? .....	79
4-21. 감면대상사업과 비감면대상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소득금액의 구분은? .....	79
4-22. 외국인투자자가 조세감면대상 투자기업으로부터 배당금을 받는 경우, 국내세법상 세율과 조세협약에 의한 제한세율 중 어느 것으로 원천징수하는가? .....	80
4-23. 감자에 의하여 지급 받는 의제배당소득은 감면대상인가? .....	80
4-24. 비거주자가 주식을 양도할 경우,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누가·언제·어디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가? .....	80
4-25. 조세감면기간 중 외국인투자자가 다른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감면된 세액의 추징 여부는? .....	81
4-26. 이전가격(Transfer Price) 과세제도란 무엇인가? .....	81
4-27. 이전가격 과세제도에서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및 그 순위는? .....	82
4-28. 외국인이 국내에서 합작투자를 위하여 내국인 소유의 구주를 취득하는 경우와 증자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의 조세문제는? .....	82
4-29. 과소자본과세제도란 무엇이며, 외국투자자가 10억원을 출자한 외국인투자기업에게 100억원의 차관을 제공한 경우 문제점은? .....	83
4-30.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 임직원 급여에 대하여, 한국에서 소득세(갑근세)를 납부하고 본국에서도 또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가? .....	83
4-31. 본사는 서울에, 공장 또는 영업장은 지방에 설치한 경우 사업자등록은 어느 곳에 하는가? ..	84
4-32. 내국인이 공단용지를 개인명의로 취득한 후 이를 현물 출자하여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가? .....	84
4-33. 조세감면세액 산정시 적용되는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 가목 규정의 5년 이상의 장기차관도 포함되는지 여부? .....	84

4-34. 조세감면 결정 후 외국인투자신고 변경을 한 경우에 조세감면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	85
4-35. 외국인이 조세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순수 내국법인의 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조세감면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	85
4-36. 조세감면 대상여부를 사전에 확인 받은 경우에는 다시 조세감면신청을 할 필요가 없는지? .....	86
4-37. 조세감면대상이 아닌 사업(무역업, 도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기존 외국인투자 기업이 고도기술수반사업(제조업) 영위를 위하여 증자를 하고 이에 대하여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경우 법인세 감면기산일은? .....	86
4-38. 우리나라 기업 甲의 미국 현지법인 A(甲의 지분율 10%이상)가 외국인투자자로서 우리나라에 외국인투자기업(합작기업 포함)을 설립할 경우,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	86
4-39. 기술혁신 등에 의해 정부가 고시한 업종 이외에도 새로운 고도기술이 출현될 수도 있는 바, 고시된 업종이 아니더라도 첨단 신기술 등에 해당될 경우에는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	87
4-40.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려는 사업이 조세감면대상 사업인지 사전에 확인하는 방법은 없는지? .....	87
4-41. 외국인이 연구개발활동을 위한 연구시설을 설립코자 할 경우 인센티브는? .....	87
4-42.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의 종류와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할 경우 어떠한 세제상 혜택이 있는지? .....	88
4-43. 우리나라와 세계 각국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이 기재된 곳은? .....	89
4-44. 현지법인과 지점법인이 부담하는 세금의 종류 및 세율은? .....	89
4-45. 외국인투자기업이 고도기술수반사업 등의 조세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10(7)년간 법인세를 감면받는 바, 이 경우 소득이란 무엇이며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소득발생 기산일은? .....	89
4-46. 고도기술사업으로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서 공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	90
4-47. 외국투자자가 미화 1억불 이상을 투자하여 새로이 공장을 설립하고 제조업을 하는 경우에는 고도기술수반사업이 아니라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 받으면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	90
4-48. 비상장주식을 비거주자간에 거래를 할 경우, 누가 어느 정도의 세금을 부담하여야 하는지? .....	90
4-49.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규정은 어느 법에 규정되어 있는가? .....	91

4-50. 거주자는 공단용지를 현물출자하고 외국인투자자는 현금출자하여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코자함. 이 경우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가? .....	91
4-51. 재경부장관에게 조세감면을 신청하여 조세감면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서류는? .....	92
4-52.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어도 별도의 조세감면신청절차가 필요한가? .....	92
4-53. 외국인투자기업이 한국인 직원을 채용할 경우, 동 직원이 부담 하여야 할 세금(소득세)의 산출방식은? .....	92
4-54.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감면 등 제도는? .....	93
4-55. 고정사업장(Permant Establishment)이란 무엇이며, 고정사업장이 되기 위한 요건은? ....	93

#### 4-1. 조세감면신청서 접수처 및 결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 조세감면신청서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며 (외국인투자신고와 조세감면신청을 동시에 할 경우는 수탁은행장 또는 KOTRA의 장(IK)에게 제출할 수 있음)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여부를 결정함

#### 4-2. 사업연도가 1.1~12.31인 외국인투자기업이 12.31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조세감면 신청기한은?

-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인 당해연도 12.31.까지 조세감면을 신청하여야 함

#### 4-3. 조세감면내용 변경시 변경내용을 언제까지 신청하여야 하는지?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변경신청을 하여야함

#### 4-4. 조세감면 신청기한이 경과한 후에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 감면신청기한 경과한 후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의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감면 받을 수 있으며, 동 감면결정을 받기 이전에 납부한 세액은 환급하지 않음

**4-5. 사업개시일이 2003.07.01.인 고도기술수반사업을 영위하는 순수내국 법인이, 2004.10.01.증자에 의한 신주취득방식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이 된 경우, 조세감면 신청기한은? (사업연도는 1.1-12.31임)**

- 순수 내국법인의 증자시 외국인이 투자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되는 경우에는 “증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신규”외국인투자에 해당됨
- 따라서, 위의 경우 2004.12.31까지 조세감면을 신청하여야 함

**4-6.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시 조세감면 신청일은?**

- 외국인투자의 신고가 있는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임

**4-7.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를 할 경우 조세감면 기산일은 증자 신고일인가, 증자 등기일인가?**

- 증자관련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중 빨리 도래하는 과세연도가 감면기산일임
- 이러한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 기산일은 증자 등기일임
- 준비금, 재평가적립금 기타 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무상증자를 하게 되어 외국 투자가가 취득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그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의 감면 예에 따라 잔여감면기간동안 그 감면율에 따름

#### 4-8. 타인에게 위탁하여 고도기술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감면여부는?

-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조세감면 대상이 됨

#### 4-9. 외국인투자신고시에는 조세감면 대상사업을 영위하지 아니 하였으나 추후에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감면을 받을수 있는가?

- 일반 제조업을 영위하던 외국인투자기업이 추가 또는 업종변경만을 하고선 조세 감면대상사업인 고도기술수반사업 등을 영위하게 된 경우에는 조세감면을 받을 수 없음

#### 4-10. 자동차부품(A) 제조사업에 대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바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증액투자 없이 고도기술업종인 자동차부품(B) 제조사업을 추가로 영위하는 경우 조세감면 변경신청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와 감면기간은?

-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 대상이며, 조세감면내용 변경결정이 있는 경우 그 변경결정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잔존 기간에 한하여 적용됨

#### 4-11. 자동차 생산공정중 일부만 고도기술인 경우에 자동차 판매소득도 감면 되는가?

- 재정경제부에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해당 공정에서 발생된 소득부분만 감면되며, 해당 공정의 소득계산은 구분기장원칙과 공통익금·손금의 안분계산 방법에 의하여 계산됨

4-1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이 극장을 취득할 경우, 지방세가 중과세 되는가?

- 일반적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의 본·지점 설립 및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시 다음과 같이 지방세가 중과되지만, 극장 등 지방세법에 규정된 특정 도시형 업종은 등록세 중과대상이 아님
  - 취득세 3배 중과 대상
    - 공장신·증설시(산업단지, 유치지역, 공업지역 제외)
    - 법인본사 사업용 또는 사무소용 부동산 취득시  
(신축 및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함)
  - 등록세 3배 중과 대상
    - 공장신·증설시(산업단지, 유치지역, 공업지역 제외)
    - 법인 및 지점 설립·설치, 전입에 따른 부동산 또는 법인 등기시  
(산업단지 제외)
- \*예외 : 수도권내에서 법인설립 또는 전입 이후 5년경과 후에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등록세 중과대상 아님
- 다만, 2003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이 된 때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3배 중과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특례기한 미연장)

**4-1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부동산 취득 등의 경우에 등록세 3배 중과세가 배제되는 도시형 업종은?**

- 등록세 중과가 배제되는 도시형업종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음
- 사회간접자본시설, 은행업, 주택건설사업, 전기통신업, 공업발전법상 첨단기술산업, 유통산업, 화물터미널, 창고업, 정부출자법인, 의료업, 법인전환제조업, 자원재활용업, 소프트웨어사업, 공연장(극장포함), 종합유선방송국, 도시형공장, 할부금융업, 구조조정전문회사 등

**4-14. 고도기술 및 외투지역의 법인세의 감면기간이 7년간 100%, 3년간 50%에서, 2005년부터 5년간 100%, 2년간 50%로 축소되는데 그 기준일은?**

- 감면기간의 축소는 2005년 이후 조세감면 또는 면제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함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 제27조)

**4-15. 사업개시 1차 연도에는 예치한 출자금에서 이자만 발생하고, 2차 연도부터 감면대상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 감면 기산일은? 이때 이자소득은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되는가?**

- 1차연도 이자소득은 감면대상소득이 아니고, 감면 기산일은 감면대상소득이 발생하는 2차 연도부터임

**4-16. 현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증자를 통해 고도기술수반사업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사업개시일은?**

- 증자 후 고도기술 제품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이 사업개시일임

**4-17. 고도기술수반사업을 영위하고자 공장을 취득한 이후에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경우, 기납부한 취득세·등록세를 환급받을수 있는가?**

- 조세감면결정 이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는 감면받을 수 없음

**4-18. 외국인투자기업의 세목별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 세목별 감면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함
  -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 $(\text{산출세액} \times \text{감면대상과세표준} / \text{총과세표준}) \times \text{외국인투자비율} \times (\text{감면율 } 100, 50\%)$
  - 지방세
    - $\text{산출세액} \times \text{외국인투자비율} \times (\text{감면율 } 100, 50\%)$
    - \* 종합토지세의 경우, 당해 재산의 과세표준에서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율에 따라 과세표준에서 공제
  - 자본재(조건 있음) 수입에 따른 관세·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
    - 고도기술 및 외투지역은 투자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 수입시는 100% 감면
    - 기타 외투기업은 관세만 감면됨

4-19. 자본금이 10억원인 내국법인이 10억원을 증자하면서, 외국인투자자에 대하여 신주 10억원을 100% 할증 발행하여 외국인투자금액이 20억원이 된 경우 외국인투자비율은?

- 신주 할증발행시, 외국인투자금액은 할증된 금액이지만, 외국인투자비율 계산시에는 자본금(주식발행초과금 제외)비율로 계산함

$$\text{외국인투자비율} = 10\text{억원} / (10\text{억원} + 10\text{억원}) = 50\%$$

$$\text{<증자자본금>} / \text{<당초자본금>} = \text{<증자자본금>}$$

4-20.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의해 외국인투자자와 관련된 조세감면을 받으면서 또한 동법 제6조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도 받을 수 있는가?

- 둘 중 하나만 선택하여 감면 받을 수 있음

4-21. 감면대상사업과 비감면대상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소득금액의 구분은?

- 법인세법 제113조 및 동법 영 제156조와 조특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사업과 비감면사업은 구분경리하여야 함
- 이때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은 동법 시행규칙 제7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안분계산함
  - 공통익금은 감면사업과 비감면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함
  - 공통손금은 감면사업과 비감면사업이 동일업종인 경우에는 각각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고, 동일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각각의 개별손금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함

**4-22. 외국인투자자가 조세감면대상 투자기업으로부터 배당금을 받는 경우, 국내 세법상 세율과 조세협약에 의한 제한세율 중 어느 것으로 원천징수하는가?**

- 국내세법상 세율과 조세협약에 의한 제한세율 중 낮은 세율을 선택하여 원천징수함
- 제한세율이란?
  - 외국인투자유치와 적정조세수입확보라는 상반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자·배당·사용료 등 투자소득에 대하여 그 원천지국에서 일정한도의 세율을 초과하여 과세할 수 없도록 규정된 조세조약상의 약정세율

**4-23. 감자에 의하여 지급 받는 의제배당소득은 감면대상인가?**

-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감면대상이지만, 감자의 경우에는 외자도입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감면대상이 아님
- 참고로, 감자에 의한 의제배당이란 주주의 주식을 소각 등의 방법으로 감소시키는 경우 그 주식의 감소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그 대가가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말함

**4-24. 비거주자가 주식을 양도할 경우,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누가·언제·어디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가?**

- 증권회사를 통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증권회사가 원천징수하지만,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에는 주식양도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 즉, 양수자(양수자가 비거주자, 외국인인 경우포함)가 원천징수함

- 거래일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양수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당해 주식 발행법인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함
-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해당 여부는 개별 조세조약을 확인하여야 함

#### 4-25. 조세감면기간 중 외국인투자자가 다른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감면된 세액의 추징 여부는?

- 기존의 외국인투자자가 투자지분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비율에 따라 추징
- 다른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금액 총액이 변동 없으므로 감면세액 추징대상이 아님

※ 국내 소재하는 다른 외국인투자법인(현지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외국인투자 법인은 대한민국법인이므로 추징대상에 해당됨

#### 4-26. 이전가격(Transfer Price) 과세제도란 무엇인가?

- 자국의 과세권을 보호하고 다국적기업 등의 국제적인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이 국외 특수관계자와 거래하면서 국외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가격(정상 가격)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낮은 대가를 받음으로써 과세소득을 국외에 이전시키는 경우, 당사자간의 조세회피 의도 여부를 불문하고 그 거래된 가격(이전가격)을 부인하고 정상가격으로 과세하는 것을 말함

**4-27. 이전가격과세제도에서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및 그 순위는?**

- 정상가격이란, 특수관계 없는 자(독립기업)간의 거래에서 적용되는 가격으로 그 산출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는 바, 이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출하는 것임
  - 비교가능제3자가격법
  - 재판매가격법
  - 원가가산법
  - 기타 합리적인방법
- 합리적인 방법이란, 비교가능성, 비교가능자료의 확보 및 이용가능성, 경제여건 등이 현실에 부합하는 정도가 가장 높은 방법을 말함

**4-28. 외국인이 국내에서 합작투자를 위하여 내국인 소유의 구주를 취득하는 경우와 증자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의 조세문제는?**

- 구주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조세감면 혜택이 없으며 증자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조세감면혜택이 주어짐
- 구주매각의 경우, 주식 매도자는 주식양도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및 증권거래세를 부담하고 취득자는 특별한 세금부담은 없음
- 다만, 비상장법인의 경우 과점주주에 해당시(51%이상)에는 취득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음

**4-29. 과소자본과세제도란 무엇이며 외국인투자자가 10억원을 출자한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100억원의 차관을 제공한 경우 문제점은?**

- 통상 각국의 세법에서는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하는데 반해, 배당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따라서 다국적기업이 외국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진출할 때 자본금을 적게 하고 차입금을 많이 하여 진출국에서의 과세소득을 최소화하는 경향이 있음
-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그 출자한 지분의 3배(금융기관의 경우 6배)를 초과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그 초과분에 대한 이자 및 할인료는 이자로 보지 않고 배당으로 보아 손금(즉, 비용) 부인하여 결국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게 됨(과소자본과세제도)
- 본 건의 경우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이자비용을 배당으로 간주함

**4-30.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 임직원인 경우 급여에 대하여, 한국에서 소득세(갑근세)를 납부하고 본국에서도 또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가?**

- 외국인이 본국에서 비거주자가 되고 한국에서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한국에서만 세금을 납부하면 되나, 한국에서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본국에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함 단, 대다수 국가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택하고 있으므로 한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 소득세법상 우리나라의 거주자·비거주자의 개념은 내국인·외국인 여부와 관계없으며,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되는 것임
- 거주자의 판정은 주민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의함

**4-31. 본사는 서울에, 공장 또는 영업장은 지방에 설치한 경우 사업자등록은 어느 곳에 하는가?**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사, 공장, 영업장 등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4-32. 내국인이 공단용지를 개인명의로 취득한 후 이를 현물 출자하여 외국인 투자법인을 설립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가?**

- 1년 이상 제조업 등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인 경우, 양도소득세는 이월과세하며, 현물출자받는 법인의 취득세·등록세는 면제함
- 이월과세란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유보하고, 현물출자 받은 법인이 차후에 양도할 때 개인사업자의 양도소득분까지 합산하여 법인에게 과세하는 것임
- 개인이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없으며, 현물출자 받은 법인의 취득세·등록세 면제 혜택도 없음

**4-33. 조세감면세액 산정시 적용되는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 가목 규정의 5년 이상의 장기차관도 포함 되는지 여부?**

-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은 외국인투자비율 계산시 포함되지 아니함

#### 4-34. 조세감면 결정후 외국인투자신고 변경을 한 경우에 조세감면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 외국인투자가 甲은 다음과 같이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후 조세감면결정을 받고 당해 외국인투자신고내용에 따른 실제투자가 이루어지기 전에 외국인투자내용 변경신고를 함

당초신고내용		⇒	변경신고내용
· 투자금액:	100억	⇒	150억
· 외투비율:	50%	⇒	75%

##### ○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이 당초 외국인투자신고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후 외국인투자 내용변경신고를 한 경우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을 별도로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후 당해 외국인투자신고분에 대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다음, 동 외국인투자신고내용에 따른 실제투자가 이루어지기 전에 외국인투자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조세감면변경결정 필요 없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내용변경신고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의 효력이 발생하게 됨. 단, 사업개시 후 증자하는 경우는 증자시기마다 감면신청을 하여야 함

#### 4-35. 외국인이 조세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순수 내국법인의 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조세감면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 신규 외국인 투자에 해당되므로, 조세감면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음
- 참고로, 외국인이 조세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 소유 구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잔여감면기간까지 조세감면 가능함

**4-36. 조세감면 대상여부를 사전에 확인 받은 경우에는 다시 조세감면신청을 할 필요가 없는지 ?**

- 사전확인 받은 조세감면 결정은 법률적 효력이 없으므로, 다시 신청하여 감면결정을 받아야 됨

**4-37. 조세감면대상이 아닌 사업(무역업, 도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기존 외국인투자기업이 고도기술수반사업(제조업) 영위를 위하여 증자를 하고 이에 대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경우 법인세 감면기산일은?**

-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 함(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4-38. 우리나라 기업 甲의 미국 현지법인 A(甲의 지분율 10%이상)가 외국인투자가로서 우리 나라에 외국인투자기업(합작기업 포함)을 설립할 경우, 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 대한민국국민(해외 영주권자 또는 이에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 또는 대한민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이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동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의 직·간접 출자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내지 제121조의7의 조세 감면 관련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다만, 출자비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위 배제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즉, A가 투자한 외국인투자지분중 甲의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4-39. 기술혁신 등에 의해 정부가 고시한 업종 이외에도 새로운 고도기술이 출현될 수도 있는 바, 고시된 업종이 아니더라도 첨단 신기술 등에 해당될 경우에는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

- 재정경제부에서 고시한 업종에 해당되어야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4-40.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려는 사업이 조세감면대상 사업인지 사전에 확인하는 방법은 없는지?**

-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조세감면대상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줄 것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7항)
- 사전확인신청의 효과는 고도기술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조세감면결정으로 인정될 수는 없으므로, 외국인투자신고 후 별도의 조세감면신청을 다시 하여야 함

**4-41. 외국인이 연구개발활동을 위한 연구시설을 설립코자 할 경우 인센티브는?**

- 산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되거나, 고도기술 등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시설을 새로이 설치·증설하는 경우로서, 5백만불이상 투자하고, 석사학위 이상 3년 이상 경력자 10인 이상으로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을 받으면, 외국인투자지분에 대하여 7(5)년 100% 감면, 3(2)년 50%의 법인세 등 감면 혜택이 있음  
※ ( )은 2005년부터 적용
- 참고로, 외국인투자지분이 아닌 내국인 투자지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11조에 의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금액의 7%를 법인세 등에서 공제가능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의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지분에 상관없이 일정액의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가 있음

**4-42.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의 종류와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할 경우 어떠한 세제상 혜택이 있는지?**

- 일반적으로 토지·건물 등 부동산과 관련한 단계별 관련 세금은 다음과 같음
  - 취득단계
    - 취득세(2%), 농어촌특별세(취득세의 10%)
    - 등록세(3%), 교육세(등록세의 20%)
    -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10%)
    - \* 토지는 VAT대상이 아님
  - 보유단계
    - 토지: 종합토지세(0.3-5%),  
농특세(종토세의 10-15%), 교육세(종토세의 20%)  
도시계획세(0.2%)
    - 건물: 재산세(0.3-7%, ※일반건축물 : 0.3%), 교육세(재산세의 20%)  
공동시설세(0.06-0.16%), 도시계획세(0.2%),  
사업소세(250원/1m<sup>3</sup>, 330m<sup>3</sup>이하는 제외)
  - 임대 및 매각단계
    - 개인사업자 : 소득세(9-36%), 주민세(소득세의 10%), VAT(10%)
    - 법인사업자 : 법인세(15-27%), 주민세(법인세의 10%), VAT(10%)
- 외국인의 토지 취득과 관련한 조세감면 혜택은 없음. 다만,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조세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지방세가 일부 감면됨

#### 4-43. 우리나라와 세계 각국간의 체결한 조세조약이 게재된 곳은?

- 조세조약은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http://www.nts.go.kr) - 세무정보 - 국제조세정보)에 게재되어 있음

#### 4-44. 현지법인과 지점법인이 부담하는 세금의 종류 및 세율은?

- 일반적으로 현지법인과 지점법인 모두 법인세(15,27%), 주민세(법인세의 10%), VAT(10%)를 부담하게 됨
  - ※ 2005년부터 법인세율이 각 2% 인하됨
- 다만, 프랑스·캐나다·호주 등 일부국가의 지점법인에 대해서는 과세요건이 충족될 경우 지점세(5-15%)가 부과됨

#### 4-45. 외국인투자기업이 고도기술수반사업 등의 조세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10(7)년간 100%, 3(2)년간 50%의 법인세를 감면받는바, 이 경우 소득이란 무엇이며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소득발생 기산일은? ※ ( )의 기간은 2005년 감면신청분부터 적용됨

- 세법상 소득이란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차감한 금액임
  - 이러한 소득은 회계학상의 수익(매출액 등)에서 비용(매출원가, 인건비 등의 판매관리비, 기타 각종 경비)을 차감한 순이익과 유사함
- 수년간 결손이 발생되어 이월결손금이 누적된 경우에는 당해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5년이 될 때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이 개시되는 것이며, 누적된 이월결손금을 모두 보전한 후 소득이 발생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이 개시되는 것은 아님

**4-46. 고도기술사업으로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서 공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 지역 제한없으며 고도기술감면결정을 받을 경우 가능함

**4-47. 외국투자자가 미화 1억불 이상을 투자하여 새로이 공장을 설립하고 제조업을 하는 경우에는 고도기술수반사업이 아니라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 받으면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 고도기술수반사업이 아니라도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지역 조건인 투자금액을 상회하고 새로이 공장(사업장)을 설립하려는 경우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고시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참고로, 투자금액 기준으로 제조업은 3천만불, 관광호텔업은 2천만불, 물류산업은 1천만불, 고도기술 R&D시설은 5백만불 이상임

**4-48. 비상장주식을 비거주자간에 거래를 할 경우, 누가 어느 정도의 세금을 부담하여야 하는지?**

- 양도자가 양도소득세(양도금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5%중 적은 금액), 주민세(양도소득세의 10%), 증권거래세(0.5%) 등을 부담함
  - 주식 발행 법인이 취득세 과세대상 재산을 보유하고, 양수자가 지분을 51% 이상 취득하는 경우, 간주취득에 따른 취득세(2%)를 부담함
- 취득세 = 부동산 등의 가액 × 지분율 × 세율(2%)  
※ 농어촌특별세 0.2% 별도

-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조세협약상 외국인투자가의 거주지국에서 과세되는 경우에는 한국에서는 동 세금이 부담되지 아니함

#### 4-49.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규정은 어느 법에 규정되어 있는가?

- 종전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규정되었으나, 99.5.24.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동법 9조에 감면원칙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감면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내지 7에 규정하고 있음

#### 4-50. 거주자는 공단용지를 현물출자하고 외국인투자는 현금출자하여 외국인 투자법인을 설립코자함. 이 경우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가?

- 거주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현물출자 받은 법인의 취득세, 등록세 면제 혜택이 없음
- 제조업·광업·건설업 등 특정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 양도소득세는 이월 과세되며(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 법인의 취득세, 등록세는 면제됨

**4-51. 재경부장관에게 조세감면을 신청하여 조세감면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서류는?**

- 법인세 신고시 부속서류로 조세감면결정통보서 사본과 함께 <공제감면세액및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별지제8호서식(갑)>, <공제감면세액 계산서(4), 별지 제8호서식 부표4> 를 제출함

**4-52.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어도면 별도의 조세감면신청절차가 필요한가?**

- 반드시 재경부장관에게 별도의 조세감면신청을 해야 함

**4-53. 외국인투자기업이 한국인 직원을 채용할 경우, 동 직원이 부담 하여야 할 세금(소득세)의 산출방식은?**

- 일반적으로 근로소득 총수입금액에서, 근로소득공제(소득금액에 따라 5% - 50%)와 종합소득공제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보험료공제, 의료비 공제 등)를 하면 소득세 과세표준이 산출됨
- 위 과세표준에 9% - 36%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하면 부담할 세금이 계산됨
  - 근로소득세액공제(50만원 한도)
    - 산출세액이 50만원 이하 : 산출세액의 55%,
    - 산출세액이 50만원 초과 : 275천원 + 50만원 초과금액의 30%

#### 4-54.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감면 등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5년간 근로소득세를 면제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요건을 갖춘 기술자의 근로 제공 대가와,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제공하는 외국인 기술자로서 도입된 기술이 법인세 등이 감면되는 기술이어야 함

#### 4-55. 고정사업장(Permant Establishment)이란 무엇이며, 고정사업장이 되기 위한 요건은?

- 고정사업장이란 외국기업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국내의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하는 것으로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이행방식을 결정짓는 요소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의 과세 또는 비과세를 결정하는 요건임
- 고정사업장은 ① 사업장이 존재할 것 (장소적 개념), ② 그 사업장소가 고정되어 있을 것 (기간적 개념), ③ 그 고정된 사업장소를 통해 사업이 수행(기능적 개념) 되어야 함
- 하지만, 상기 요건을 미충족할지라도, ①종속대리인을 두고 반복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는 자를 두고 있는 경우, ② 국내 연락사무소가 실질적으로 당해 외국 법인의 영업을 수행하는 경우, ③ 국내 연락사무소가 본사가 아닌 관계회사 등 타 회사를 위한 활동을 하는 경우는 고정사업장으로 봄

※ 고정사업장 예시 : 지점, 공장, 6월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설공사 등

## 5. 관 세

## 차 례

5-1. 조세감면대상업종에 해당하고, 외국인투자자가 투자한 현금으로 자본재를 도입할 경우 관세 등의 감면을 받기 위한 구비서류는? .....	101
5-2.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은 외국인투자비율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관세의 경우에도 투자비율에 따라 관세감면이 이루어지는가? .....	101
5-3. 반도체측정장비를 제조하기 위한 기계를 본사로부터 수입하고자 하는 바, 이 경우 관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	102
5-4. 모(母)회사로부터 물자를 무상으로 공급받아 한국에서 가공·수출할 경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납부가 면제되는가? .....	102
5-5. 외국인투자법인이 관세면제 받은 자본재를 다시 외국인투자자에게 판매하고 이를 임차하여 계속 조세감면대상업종에 사용하는 경우 관세면제는 계속 유효한가? .....	103
5-6. 외국투자자가 자동차를 외국인투자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 관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	103
5-7. 출자의 목적물로 수입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수입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는가? .....	104
5-8. 외국인투자자가 외국인투자법인의 조세감면대상사업에 사용하도록 자본재를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동 자본재에 대한 관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가? .....	104
5-9. 외국인투자기업이 수입하는 자본재는 모두 관세가 면제되는 것인가? .....	104
5-10. 조세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건설공사를 Turn Key 방식으로 일괄 수주한 국내기업이 동 조세감면 대상사업에 사용할 자본재를 수입하는 경우관세 감면이 가능한가? .....	105
5-11. 장기차관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의 경우에 있어, 투자된 자금으로 조세감면대상사업에 사용할 자본재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면제가 가능한가? .....	105
5-12. 조세감면대상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목적으로 자본재를 수입하는 경우관세면제 신청은 언제까지 하여야 하는가? 또한, 관세면제신청은 소급적용이 가능한가? .....	105

5-13. 재정경제부로부터 조세감면대상사업으로 인정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수입하는 자본재가 수입후 조세감면대상사업과 조세감면비대상사업에 겸용되는 경우에도 관세면제가 가능한가? 또는 그 사용비율에 따라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	106
5-14. 일본으로부터 수면(수중)오염물질제거선박을 현물투자 방식으로 도입하는 바, 관세 면제를 받기 위한 요건은? .....	106
5-15. 현물출자되는 자본재의 도입시 동 자본재에 대한 가격산정 및 현물출자절차는? .....	106
5-16.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를 통하여 자본재설비를 추가로 도입하려 하는데, 자본재 도입물품명세확인 절차는? .....	107
5-17. 현물출자의 목적물로 납입되는 자본재가 여러 차례에 걸쳐 수입통관되는 경우 현물 출자완료확인방법은? .....	108
5-18. 법인명의로 중고자동차를 현물출자 하고자 하는 바, 동 자동차는 자본재의 범위에 해당되는가? .....	108
5-19. 외국인투자기업이 수입한 원재료가 출자의 목적물로 되지 않는 경우 관세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	108
5-20.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의 방식으로 기계 현물을 수입하려 하는데, 기계를 자본으로 등기함에 있어 별도의 감정절차가 있는가? .....	109
5-21. 외국인투자가가 투자자금을 직접 휴대하여 입국한 후, 국내은행에 예치하여 투자 신고 하는 경우 투자자금으로 인정되는가? .....	109
5-22. 자본재가 출자의 목적물로 도입된 후 사업이 잘 되지 않아 동 자본재를 처분할 경우 어떤 제한이 있는가? .....	110
5-23. 현물출자를 양 당사자가 각각 50만불로 하였으나 현물이 60만불로 들어 올 경우 현물출자로 신고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임대차방식으로 수입할 수 있는지? 임대후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	110
5-24. 관세면제를 받아 수입한 자본재를 사정에 의해 해외로 반출하는 경우에 면제받은 관세는 어떻게 되는가? .....	110
5-25. 수입자본재에 대하여 관세면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관세 산정방법은? .....	111
5-26. 컴퓨터부품을 조립하여 국내 또는 해외에 납품할 경우 관세지원정책은? .....	111

5-27. 외국인투자자금으로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하여 관세면제 신청을 하거나,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물로 수입되는 자본재의 경우 수입통관시 납세의무자를 누구의 명의로 하여야 하는가? ……	112
5-28. 외자 도입시 현금도입은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자본재 도입시에는 관세가 부과되는 사유는? ……	112
5-29. 일본의 원자재공급자가 독일로부터 원자재를 구입하여 한국에 있는 무역업자에게 무상으로 수출하고, 국내제조자는 동 무역업자가 수입한 물품으로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일본의 원자재 공급업자에게 유상으로 수출하는 경우, 환급대상여부 및 구비서류는? ……	113
5-30. 기계가 수입된 후 국내 설치시 발생한 supervision fee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하는가? ……	113
5-31. ATA까르네물품의 수입 가능여부 및 통관절차는? ……	114
5-32. 외국인투자가가 사업차 수시로 한국을 방문할 때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중고 일본산승용차의 통관요건은? ……	114
5-33. 이사화물로 반입하는 중고 외제 자동차의 수입요건 및 통관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	114
5-34. 외국인으로서 가족을 동반하여 한국에 3년간 거주할 경우 이사짐에 대한 통관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115

### 5-1. 조세감면대상업종에 해당하고, 외국인투자자가 투자한 현금으로 자본재를 도입할 경우 관세 등의 감면을 받기 위한 구비서류는?

-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자가 투자된 자금으로 자본재를 수입하는 경우에 있어 관세 등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를 구비해야 함
  - 관세 · 특별소비세 · 부가가치세면제신청서
  - 당해 사업이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조세감면결정서 사본 : 재경부)
  - 당해 자본재가 외국인투자자가 투자하는 현금에 의해 도입됨을 증명하는 서류 (투자신고필증사본: 수탁기관, 외화매입증명서사본 등)
  - 자본재등도입물품명세검토확인서(수탁기관)
- 상기 구비서류는 반드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여러 차례에 나누어 수입하는 경우에는 매 수입신고시 마다 면세 신청을 해야 함

### 5-2.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은 외국인투자비율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관세의 경우에도 투자비율에 따라 관세감면이 이루어지는가?

-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업에 사용되는 자본재로서, 현물출자 되는 경우이거나 또는 투자금액의 범위 내에서 투자된 현금 등으로 수입하는 자본재의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비율에 상관없이 관세가 전액(100%) 면제됨

**5-3. 반도체측정장비를 제조하기 위한 기계를 본사로부터 수입하고자 하는 바, 이 경우 관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관세면제와 관세법에 의한 관세감면으로 나누어 검토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관세면제(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업종에 직접 사용되는 자본재이어야 함
    - 외국인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현금 등으로 도입하거나, 출자의 방식으로 도입하는 현물자본재이어야 함
  - 관세법에 의한 관세감면
    - 관세법에 의한 공장자동화기기 관세감면조항 등에서 규정한 대상업종 및 물품에 해당되는 경우 40%~50%의 관세감면 가능
    -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조세감면결정과 관계없이 적용 가능

**5-4. 모(母)회사로부터 물자를 무상으로 공급받아 한국에서 가공·수출할 경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납부가 면제되는가?**

- 수출용원재료가 무상으로 수입되는 경우에도 관세율이 무세(0%)가 아닌한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열사간의 수출입인 경우도 동일함
- 수입시 관세의 부담을 줄이려면 일정기간 단위로 납부할 세액과 환급받을 세액을 정산하는 일괄납부 및 사후정산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일단 수입시 관세를 납부하였다가 수출이 완료된 후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도 있음

**5-5. 외국인투자법인이 관세면제 받은 자본재를 다시 외국인투자자에게 판매하고 이를 임차하여 계속 조세감면대상업종에 사용하는 경우 관세면제는 계속 유효한지?**

- 조세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법인이 조세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할 자본재를 수입하면서 관세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수입되는 자본재가 외국인투자자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되거나 외국인투자자가 주식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출자목적물로 도입되는 것이어야 함
- 또한,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 관세를 면제받고 수입된 자본재일지라도 관세면제에 대한 사후관리기간(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3년) 이내에 투자신고시의 사업목적 외로 사용,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관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음
- 관세면제를 받고 수입한 자본재를 다시 외국인투자자에게 판매한다는 것은,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이나 내국지급수단을 지급하고 도입해야 한다는 요건이나 주식등을 소유하기 위해 출자목적물로 도입해야 한다는 요건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투자신고시의 사업목적과 다르게 처분하는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관세면제의 효력이 계속 유지될 수 없음

**5-6. 외국투자자가 자동차를 외국인투자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 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 외국인투자법인이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동 조세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외국투자자로부터 자동차를 현물출자 받거나 또는 투자된 자금으로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면제가 가능함

**5-7. 출자의 목적물로 수입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언제 까지 수입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는가?**

- 원칙적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거 투자신고를 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관세법에 의한 수입신고가 완료되어야 함. 다만, 공장설립승인의 지연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 기간 이내에 수입신고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로서 3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기간까지로 함

**5-8. 외국인투자자가 외국인투자법인의 조세감면대상사업에 사용하도록 자본재를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동 자본재에 대한 관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가?**

- 조세감면대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자본재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출자의 목적물 또는 투자자금으로 도입되는 자본재가 아닌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관세면제를 받을 수 없음

**5-9. 외국인투자기업이 수입하는 자본재는 모두 관세가 면제되는 것인가?**

- 외국인투자기업이 수입하는 자본재라하여 모두 관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
- 외국인투자기업이 수입하는 자본재가 관세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조세감면대상사업 등으로 인정되어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감면결정을 받아야 하며, 출자된 자금으로 수입하거나 출자의 목적물로서 현물출자되는 경우에 한하고, 동 자본재가 조세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되어야 하는 것임

**5-10. 조세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건설공사를 Turn Key 방식으로 일괄 수주한 국내기업이 동 조세감면 대상사업에 사용할 자본재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감면이 가능한가?**

- 자본재 수입자가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니고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turn key 방식으로 일괄 수주한 국내기업인 경우에는, 조세감면의 요건을 갖춘자와 수입자본재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일치하지 않아 관세면제가 불가능함

**5-11. 장기차관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의 경우에 있어, 투자된 자금으로 조세 감면대상사업에 사용할 자본재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면제가 가능한가?**

-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면, 신주취득방식에 의한 외국인 투자와 관련하여 수입되는 자본재 중 관세면제의 요건을 갖춘 것만이 관세면제가 가능함. 그러나 장기차관방식에 의한 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외국인직접 투자로는 인정되나 관세면제의 혜택은 받을 수 없음

**5-12. 조세감면대상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목적으로 자본재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면제신청은 언제까지 하여야 하는지? 또한, 관세면제신청은 소급적용이 가능한가?**

- 조세감면대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자금으로 자본재를 수입하거나 또는 투자의 목적물로서 현물자본재를 직접 출자하는 경우 에 있어서, 수입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수입신고가 완료되어야 함
- 이 경우, 반드시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관세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며, 수입 신고가 수리된 이후에는 소급하여 관세면제신청을 할 수 없음

**5-13. 재정경제부로부터 조세감면대상사업으로 인정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수입하는 자본재가 수입후 조세감면대상사업과 조세감면비대상사업에 겸용되는 경우에도 관세면제가 가능한가?  
또는 그 사용비율에 따라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 외국인투자의 목적물로 수입하는 자본재는 당해 자본재가 조세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이 가능한 것이며, 투자목적물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면제받았던 관세 등을 추징하게 됨
- 또한, 수입통관 단계에서는 용도에 따른 사용비율을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사용비율에 따른 구분 감면도 불가능함

**5-14. 일본으로부터 수면(수증)오염물질제거선박을 현물투자 방식으로 도입하는 바, 관세면제를 받기 위한 요건은?**

- 우선, 당해 사업이 조세감면 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확인받아야 하며, 조세감면대상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동 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현물투자되는 자본재는 관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가 면제됨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조세감면대상사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관세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물품 감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함

**5-15. 현물출자되는 자본재의 도입시 동 자본재에 대한 가격산정 및 현물출자 절차는?**

- 가격산정방법
- 현물출자되는 자본재에 대한 가격은 투자가가 동 자본재를 구입하여 출자하는 경우, 동 구입가격에 물품의 인도장소 및 부보 여부에 따라 가격이 결정됨. 예를 들면

투자자가 부산항 도착시까지 운송비용 및 보험료 등을 부담할 경우 동 비용을 포함한 가격이 자본재가격이 될 것이며, 동 금액이 외국인투자금액으로 인정될 수 있음

- 자본재가 중고물품인 경우의 가격은 중고물품에 대한 오판가격,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 또는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가격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을 것임
- 현물출자절차
  - 현물출자절차는 수탁기관에 외국인투자신고시 자본재란에 금액을 기재하여야 하며, 동 금액은 당해물품의 정확한 가치를 반영하여야 함
  - 수입통관을 완료한 후, IK에 파견된 관세청직원에게 현물출자완료확인신청서(2부)와 수입신고필증사본을 제출하여 현물출자완료확인서를 교부받음
  - 발급받은 현물출자완료확인서는 공인감정기관의 감정을 별도로 받을 필요 없이 등기소 및 수탁기관에 자본재등기 및 외국인투자기업등록(또는 변경)을 위한 서류로 제출할 수 있음

#### 5-16.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를 통하여 자본재설비를 추가로 도입하려 하는데, 자본재도입물품명세확인 절차는?

- 도입 예정인 자본재의 수량·규격·가격 및 제작자 등을 기재한 자본재도입등물품명세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물품의 선적전에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기관에 신청하면 되며, 이때 offer sheet 등 당해 자본재의 가격 등을 알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5-17. 현물출자의 목적물로 납입되는 자본재가 여러 차례에 걸쳐 수입통관되는 경우 현물출자완료확인방법은?**

- 현물출자완료확인서는 외국인투자신고서상에 현물로 투자하겠다고 신고하였던 자본재의 수입이 완료된 시점에서 발급하는 것임. 따라서, 투자신고하였던 현물자본재가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하여 수입통관되는 경우는 최종적으로 통관이 종료된 시점에서 일괄하여 확인받아야 하는 것임

**5-18. 법인명의를 중고자동차를 현물출자 하고자 하는 바, 동 자동차는 자본재의 범위에 해당되는가?**

- ‘자본재’라 함은 산업시설(선박, 차량, 항공기 등 포함)로서의 기계, 기자재, 시설품, 기구, 부분품, 가축, 종자, 수목, 어패류, 기타 주무부장관이 당해 시설의 최초시운전(시험사업 포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원료, 예비품 및 이의 도입에 따르는 운임, 보험료와 시설을 하거나 조언을 하는 기술 또는 용역을 말함
- 따라서, 법인명의를 업무용 중고자동차도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본재의 범위에 포함됨

**5-19. 외국인투자기업이 수입한 원재료가 출자의 목적물로 되지 않는 경우 관세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 현물을 직접 외국인투자의 목적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자본재의 개념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임. 그러나, 상품 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원재료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자본재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외국인직접투자의 목적물이 될 수 없음

- 다만, 관세 등을 납부한 수입원재료가 수출물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수출이 이루어진 이후에 수입시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음

**5-20.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의 방식으로 기계 현물을 수입하려 하는데, 기계를 자본으로 등기함에 있어 별도의 감정절차가 있는가?**

-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의 방식으로 자본재인 기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통관 후 현물출자완료확인신청서에 수입신고필증사본을 첨부하여 관세청장(IK의 관세청 파견관)에게 현물출자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법인등기를 할때 사용하게 됨
- 상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면 국내기업이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선임한 조사인의 검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법인등기시 사용하도록 되어있으나,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측면에서 관세청장이 확인한 '현물출자완료확인서'를 검사보고서에 갈음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출자되는 기계에 대한 별도의 감정절차는 필요 없음

**5-21. 외국인투자자가 투자자금을 직접 휴대하여 입국한 후, 국내은행에 예치하여 투자신고 하는 경우 투자자금으로 인정되는가?**

- 외국인투자자가 직접 외화를 휴대하여 입국한 후 이를 외국인투자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입국시 세관공무원이 확인하여 교부한 외국환등록증이 있어야 함
- 이 경우 반드시 최초 출국전까지 은행에 외화로 예치하여야 함(외국환등록증의 유효기간은 입국후 최초 출국시까지임)

**5-22. 자본재가 출자의 목적물로 도입된 후 사업이 잘 되지 않아 동 자본재를 처분할 경우 어떤 제한이 있는가?**

- 수입통관시 관세 등의 면제를 받은 자본재로서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본재를 처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투자신고기관에 자본재처분신고를 하여야 함
- 이러한 경우 출자목적물이 신고된 목적외의 목적에 사용되거나 처분된 경우로 보아 면제되었던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를 추징함(관세의 경우는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3년임)

**5-23. 현물출자를 양 당사자가 각각 50만불로 하였으나 현물이 60만불로 들어 올 경우 현물출자로 신고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임대차방식으로 수입할 수 있는가? 임대후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 외국인투자신고시의 금액인 현물출자금액 50만불을 초과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의 계약 등에 의거 임대차방식으로 수입할 수 있음. 이 경우 임대차대상물품은 현물출자와는 무관한 거래에 해당되며, 임대후 소유권 이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얻어야 함
- 또한, 현물출자를 당초 신고된 금액이 아닌 60만불 상당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나 KOTRA 외국인투자지원센터(IK) 등 외국인투자신고기관에 외국인투자내용 변경신고를 하면 됨

**5-24. 관세면제를 받아 수입한 자본재를 사정에 의해 해외로 반출하는 경우에 면제받은 관세는 어떻게 되는가?**

- 조세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도입한 자본재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하는 이유는 조세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임

- 따라서, 면제된 관세에 대한 사후관리기간(3년) 이내에 동 자본재가 본래의 목적에 사용되지 않고 다른 용도에 사용되는 경우는 이전에 면제 받았던 관세를 추징함. 이 경우 그 동안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 감소분에 대한 감면은 인정 받을 수 있음

#### 5-25. 수입자본재에 대하여 관세면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관세 산정방법은?

-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액은 수입항에 도착하기 까지의 가격(CIF기준가격)을 원화로 환산한 후, 환산된 금액에 수입물품의 관세율을 곱하여 산출됨
- 원화 환산시의 과세환율은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에 주요 외국환은행이 매일(월~토) 고시하는 전신환 대고객 매도율을 평균하여 산정되며 일주일간 적용됨

#### 5-26. 컴퓨터부품을 조립하여 국내 또는 해외에 납품할 경우 관세지원정책은?

- 컴퓨터 부품이 수입되어 동 부품이 수출물품의 제조에 사용되고 수출이 이행된 것이 확인되면, 환급신청에 의하여 수입시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음
- 또한, 관세일괄납부 및 사후정산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 이는 일정기간(통상적으로 3개월)동안 납부하여야 할 세금에 상당하는 담보물을 제공한 후(신용담보업체의 경우에는 무담보) 일정기간이 종료한 후에 납부해야할 세액과 환급받을 세액을 정산하여 처리하는 것임
- 국내 납품용으로만 사용될 경우에도 일정금액의 담보물을 설정하면, 우선 물품을 반출하여 사용하고 반출후 15일 내에 관세 등을 납부할 수 있음

**5-27. 외국인투자자금으로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하여 관세면제 신청을 하거나,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물로 수입되는 자본재의 경우 수입통관시 납세의무자를 누구의 명의로 하여야 하는가?**

- 외국인투자자금으로 수입하는 자본재 대한 관세면제를 받거나 또는 현물자본재에 대하여 현물출자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부상에 자본으로 등재하기 위하여는 수입통관 전에 외국인투자기업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외국인투자기업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수입신고 하여야 함
- 사업자등록 발급은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 이후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외국인투자기업이 현물만을 출자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인설립전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수입통관시 사용할 수 있음(이와 같이 수입통관 전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수입신고 하여야 나중에 수입통관시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

**5-28. 외자 도입시 현금도입은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자본재 도입시에는 관세가 부과되는 사유는?**

- 관세는 국가와 국가간의 무역거래의 결과로서 구체적인 형상을 갖는 거래물품이 수입국의 관세선을 통과하는 시점에 과세되는 대물세의 일종임. 그러나, 외국인투자자금을 도입하는 것은 구체적인 물품이 오가는 무역거래가 아니고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관세를 부과할 대상물품이 없으므로 관세가 부과될 수 없는 것임

**5-29. 일본의 원자재공급자가 독일로부터 원자재를 구입하여 한국에 있는 무역업자에게 무상으로 수출하고, 국내제조자는 동 무역업자가 수입한 물품으로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일본의 원자재 공급업자에게 유상으로 수출하는 경우, 환급대상여부 및 구비서류는?**

- 수입할 때에 관세 등을 납부한 수입원자재를 사용하여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여 수출한 경우,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자는 관세 등에 대한 환급신청을 하여 수입시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음
- 관세 등(부가세 제외)의 환급신청은 세관장에게 하여야 하며, 구비서류는 간이정액 환급의 경우 환급신청서와 수출신고필증이 필요하고, 개별환급의 경우에는 1)환급신청서, 2)수출신고필증, 3)소요량계산서류, 4)소요원재료의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입신고필증,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등)가 필요함
- 현재 환급신청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구비서류의 제출없이(Paperless) 전산으로 신청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환급신청인은 일정기간 동안 구비서류를 보관할 의무가 있음

**5-30. 기계가 수입된 후 국내 설치시 발생한 supervision fee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하는가?**

-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은 수출입당사자 간의 실제 거래가격에 운임, 보험료 등 수입항 도착까지의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것이고, 수입항 도착 이후에 발생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과세가격에서 제외됨. 따라서, supervision fee등 수입항 도착이후의 비용이 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고 그 비용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하여 과세가격신고를 하여야 함

**5-31. ATA까르네물품의 수입 가능여부 및 통관절차는?**

- ATA까르네(일시 수출입 통관증서)물품은 전시 등의 목적으로 들어와 일정기간 이후 재반출되는 조건으로 수입되는 것임. 따라서, 이를 재반출 하지 않고 완전히 수입(용도의 사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통관지세관장에게 신고하여 용도의 사용승인을 받고, 해당물품의 수입에 조건이 있는 경우 해당서류를 구비하면 수입 할 수 있음

**5-32. 외국인투자자가 사업차 수시로 한국을 방문할 때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중고 일본산승용차의 통관요건은?**

- 외국인투자기업의 업무용으로 사용할 것이라면 승용자동차를 출자목적물로 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현물출자하는 방식으로 수입할 수 있음. 이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환경연구원의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을 받아야 하고,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자기인증을 받아야 함
- 배출가스·소음인증과 자기인증을 받지 않고 수입하고자 한다면 개인소유의 이사화물로 수입통관 하는 방법이 있음. 이 경우의 통관요건은 이사화물(1년 이상 거주 예정) 또는 준이사물품(가족 동반하는 경우 6월 이상 거주 예정)에 해당되어야 함

**5-33. 이사화물로 반입하는 중고 외제 자동차의 수입요건 및 통관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 수입요건
  - 개인 소유로 출국전(3개월 이전)에 등록되어 있고 적어도 1년 이상 국내 체류할 경우 자동차 수입요건(자기인증,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이 면제되며,

- 가족을 동반하여 6월 이상 국내 체류할 경우 자기인증이 면제되나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을 받아야 함
  - 세단형의 것, 쉐형의 것 또는 스테이션웨건으로서 운전자를 포함하며 최대 9인까지 탑승할 수 있는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붕고, 홈카 및 트럭 등 다른 차량은 이사물품으로 통관할 수 없음
  - 상기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1대를 초과할 경우 또는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자동차 수입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납부세액
- 자동차 통관시 납부하여야 할 세금은 과세가격에 관세 8%, 자동차의 배기용량에 따른 특별소비세 5~10%(2004.12.31까지 4~8% 적용), 특별소비세교육세 30%, 부가가치세 10%를 적용하여 계산함
  - 중고자동차의 관세목적상 과세가격은 실제지급가격이 없을 때에는 자동차가격에 관한 책자(BLUE BOOK)에 기재된 신품자동차 거래가격(LIST PRICE)에서 사용기간에 따른 가치감소분을 감가상각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가산하여 계산함

### 5-34. 외국인으로서 가족을 동반하여 한국에 3년간 거주할 경우 이사짐에 대한 통관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1년 이상 체류할 경우에는 이사물품으로 인정되어 사용하던 물품은 면세통관됨
- 선박, 항공기, 자동차(6월 이상 사용한 한국산 차는 제외), 개당 과세가격이 백만원 이상의 보석, 진주, 상아 등과 중고물품이 아닌 신품은 필수과세대상품목임
- 1개(조)를 초과하여 반입되는 품목중 일부는 과세되며, 다음과 같은 품목이 해당됨 (국내 도매가격 기준)

- 피아노, 전자오르간 등 악기로서 개(조)당 200만원을 초과하는 것
- 전기음향기기로서 개(조)당 200만원을 초과하는 것
- 고급가구와 조명기구로서 개(조)당 200만원을 초과하는 것
- 실크수직양탄자로서 5m<sup>2</sup>를 초과하는 것
- 엽총, 팩캐지형 공기조절기, 세탁기와 건조기
- 냉장고와 냉동고로서 각각 600ℓ를 초과하는 것
- 29인치를 초과하는 칼라 텔레비전, 식기세척기와 가스 오븐렌지
- 촬영기(일반카메라는 제외)와 영사기 등

## 6. 금 용

## 차 례

6-1. 외국인투자자가 신용카드업을 하고자 할 때 그 절차는? .....	121
6-2.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범위는? .....	122
6-3. 외국인투자자가 국내에서 Mutual Fund 설립이 가능한가? .....	123
6-4. 일반개인도 해외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가? .....	123
6-5. 장기차관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절차에 의거, 외국인투자기업은 해외모기업 등으로부터 5년 이상의 차관을 도입할 수 있는데 여기서 5년 이상의 의미는 무엇인가? .....	124
6-6. 5년 이상의 장기차관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의 경우 용도 및 금액상의 제한이 있는가? 또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	124
6-7. 외국인투자기업이 해외로부터 1년 이하의 단기 외화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가? .....	124
6-8.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자금조달 절차 및 관련 신고 내용은? .....	125
6-9. 외국인투자자가 경매나 공매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가? .....	125
6-10. 해외의 금융기관이 국내 시중은행의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하고, 신탁을 받은 국내은행이 이에 대한 운용을 특정회사의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 외국투자자로 인정되는가? .....	126
6-11. 외국인투자자가 국내기업에 3자배정 유상증자 형식으로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세부절차는? .....	126
6-12.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제도는 어떤 것이 있는가? .....	127
6-13. 한국은 어느 기관에서 믿을만한 지방(도)에 관한 신용 위험보고서를 공표하는가? .....	127
6-14. 도와 중앙정부 사이의 계약관계는 어떻게 맺어지며 어떻게 관리 및 운영되고 있는가? .....	128
6-15. 한국의 중앙정부는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는가? .....	128
6-16. 현지법인의 경우에도 초기 정착과정에서는 수시로 외국에 있는 모기업으로부터 운전 자본의 수수 또는 필요경비의 보조를 받아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자금수수의 절차 및 회계처리 과정이 지점의 경우에 비해 복잡하고 번거로운가? .....	129
6-17. 외국인이 한국 증권시장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절차(담당기관 및 자금송금방법 등)는? .....	129

- 6-18. 대규모 외국자본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종종 외국금융기관에서 국내 지방자치단체나  
유관기관의 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외국자본의 국내도입을 위한 국내 보증  
가능 기관은 무엇이며, 어떤 조건과 절차 등이 필요한가? ..... 130
- 6-19. 외국인 투자자가 금융서비스업을 하고자할 때, 관련 정부기관의 인·허가 절차는? ..... 130

### 6-1. 외국인투자자가 신용카드업을 하고자 할 때 그 절차는?

- '신용카드업'이란 아래 중에서 '나'항의 업무를 포함한 2개 이상의 업무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함

가.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나. 신용카드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

다. 신용카드 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

- 신용카드업에 관한 사항은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지급결제 기능 등 카드업 고유의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설립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음
- 여신전문금융법 제3조에 따르면 신용카드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여신전문금융 회사이거나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한하되 아래의 자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음
  -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재경부장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금융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성격상 신용카드업을 겸영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외국인투자자의 경우 신용카드업 진출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으며 내국인과 동일하게 아래의 기준에 맞추어 금융감독위원회의 설립허가를 득해야 함
  - 재무건전성 기준: 조정자기자본비율 9%이상
  - 인력 및 물적시설 기준: 임직원 300명, 점포30개, 필요 전산기기(back up포함), 관련 Software 등
  - 자본금 기준

- 여신전문금융업종 2개 이하 영위시: 200억원
- 여신전문금융업종 3개 이상 영위시: 400억원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여신전문금융업종은 신용카드업 · 시설대여업 · 할부금융업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함

## 6-2.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범위는?

- 파생금융상품(derivatives)은 채권, 금리, 외환, 주식 등 금융자산을 기초로 하여 파생된 상품으로, 금융자산 가격의 미래 움직임을 상품화한 것임
- 파생금융상품의 종류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 및 동 시행령 8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요약하면 아래와 같음
  - 상품 등의 미래가격을 약정하고 전매 또는 환매 시 차액결제
  - 지수 등의 미래수치를 정하고 일정한 시기에 그 차이를 수수
  - 장래의 일정기간동안 상품이나 지수 등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미리 정한 가격으로 교환
  -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위의 거래 등을 성립시킬 수 있게 하고 그 대가를 지급
- 파생금융상품은 기본적으로 미래의 금융상품의 가격변동에서 올수 있는 위험에 대처코자 발달된 것으로 투자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거래의 대상으로 보아야 함
- 외국인(비거주자 포함)은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과 인정된 파생금융상품거래를 할 수 있음. 단 기타의 거래(회사의 신용위험과 연계된 거래 등)를 하고자 할 때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 하여야함

### 6-3. 외국인투자가가 국내에서 Mutual Fund 설립이 가능한가?

- 회사형투자신탁제도 도입을 위한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해 국내에서도 증권투자회사 (Mutual Fund) 설립에 의한 투자가 가능함
- Mutual Fund는 회사형 투자신탁이라는 점에서 기존 투신에서 판매하는 계약형 수익증권과는 차별성을 가지게 되는 바, 회사형 투자신탁은 회사법에 의해 주식회사로 조직된 투자신탁으로써 투자신탁 그 자체가 회사이며 투자가는 그 주주가 되는 형태를 취하게 됨
- 증권투자회사(Mutual Fund)의 설립자본금은 4억원이며 최저순자산액은 2억원이고, 이와 별도로 자금운용을 담당할 자산운용회사의 등록요건은 최저자본금이 70억원임. 외국인투자가의 경우 증권투자회사 및 자산운용회사의 설립 및 운용에 제한이 없으며, 관련법에 의거 해당요건을 갖춰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절차를 거치면 됨

### 6-4. 일반개인도 해외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가?

- 일반개인도 해외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할 수 있음
- 개인이나 비영리법인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 외국환 은행을 통하여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다만, 다른 거주자가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외화를 차입한 자는 조달한 외화자금을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 개설된 거주자계정에 예치한 후 허가·신고 시 명기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

**6-5. 장기차관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절차에 의거, 외국인투자기업은 해외 모기업 등으로부터 5년 이상의 차관을 도입할 수 있는데 여기서 5년 이상의 의미는 무엇인가?**

- 5년 이상이라는 것은 가중평균 상환기간이 5년 이상이라는 의미이지, 도입 후 5년 후부터 상환하라는 의미는 아님
- 따라서 차관을 도입하고 만 5년이 되는 시점이전부터 차관액을 분할 상환하는 경우도 가중평균기간이 5년 이상이면 장기차관에 해당됨

**6-6. 5년 이상의 장기차관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의 경우 용도 및 금액상의 제한이 있는가? 또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 용도 및 금액상에 제한이 없음
- 동 차관의 대주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장기차관방식의 외국인 투자신고를 하여야함  
신고는 기 지정되어 있는 수탁기관에 함
- 제출서류는 장기차관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서, 차관계약서 사본, 해외 모기업과 출자관계에 있는 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임

**6-7. 외국인투자기업이 해외로부터 1년 이하의 단기 외화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가?**

- 일반 제조업을 영위하거나 고도기술수반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일정금액 범위 내에서 상환기간 1년 이하의 단기 외화자금차입이 가능함

- 외국인투자기업이 일반제조업체인 경우 외국인 투자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단기차입 가능
- 외국인투자기업이 고도기술수반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금액의 100% 범위 내에서 단기차입 가능, 단 이 경우에 외국인투자비율이 3분의 1미만인 기업은 외국인 투자금액의 75% 범위 내로 한도가 제한됨

#### 6-8.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자금조달 절차 및 관련 신고 내용은?

- 외국인투자기업은 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므로 국내 법인과 마찬가지로 해외에서의 자금조달이 가능함
- 일반적인 국내기업이 1년 이하의 단기 외화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외국환거래규정 제7-14조제2항),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지정 외국환은행에게 신고함으로써 가능함. 상환기간 1년 초과인 경우에는 외국환 은행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단 금액이 건당 3천만 불 초과 시는 재정경제부장관 신고사항 임(외국환거래규정 제7-14조2제1항)
- 외국인투자기업이 가중평균 상환기간 5년 이상의 외화자금을 해외 모기업 또는 그 모기업과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으로부터 차입할 경우에는 이를 '외국인투자'로 분류하여 관리함

#### 6-9. 외국인투자가가 경매나 공매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가?

- '경매'란 매도인이 다수를 집합시켜 구술로 매수신청을 최고하고, 매수신청인 가운데 최고가 신청인에게 승낙을 하여 매매하는 제도인 바 협의로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함

- 국가기관이 행하는 경매를 공매라고 말하는 바 이는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한 압류재산을 처분하는 것 등으로 국가를 대행하여 성업공사가 이를 시행하고 있음
- 이상과 같이 경매나 공매의 집행 전담기관은 법원 및 국가기관으로, 외국인 투자대상이 아님. 단 외국인도 경매나 공매에 참여하여 목적물을 매입할 수 있음
- 또한 외국인투자자의 부동산등의 중개행위가 가능하며, 이를 위해 부동산 중개업법등에 따른 허가를 취득하여 중개행위를 수행하거나 관련 허가를 득한 중개업자와 공동으로 부동산 등의 매물알선 등의 업무취급이 가능함

**6-10. 해외의 금융기관이 국내 시중은행의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하고, 신탁을 받은 국내은행이 이에 대한 운용을 특정회사의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 외국투자자로 인정되는가?**

-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자금을 국내은행의 특정금전 신탁에 예치하고 동 특정금전신탁 계약에 따라 특정 회사에 투자하는 경우(주식 및 채권 포함)에 해당 특정기업의 주주 또는 채권자는 외국인 투자자가 아닌 국내 은행이 됨
- 따라서 이러한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자로 인정될 수 없음
- 참고로 외국인 투자자는 외국환거래법 제7-6 및 7-7조에 의거 외국환은행 등과 한국 은행총재가 정한 각종 예금 및 신탁거래를 신고 없이 할 수 있음

**6-11. 외국인투자자가 국내기업에 3자 배정 유상증자 형식으로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세부절차는?**

- 우선 해당기업이 3자 배정 유상증자에 필요한 내부절차(정관 등에 따라 필요시 주주 총회 및 이사회 결의)를 마치는 것이 선결과제임
- 내부절차가 이루어지면, 외국인 투자는 '기존회사의 신주인수 방식'에 따라 진행하게 됨

-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투자신고→ 외국으로부터 투자자금 입금→ 자금 인출후 증자에 관계된 절차완료(등기 포함)→ (필요시 영위 업무에 따른 관할세무서 사업자등록)→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 참고로 외국인 투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각각의 외국인투자자의 투자금액이 5천만 원 이상 상당의 외화이어야 하고 투자대상기업의 의결권 있는 총지분의 10% 이상이 되어야 함

### 6-12.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제도는 어떤 것이 있는가?

-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제도는 별도로 마련된 것은 없음
- 다만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외국환 거래규정 제7-15조에 의거 외국인 투자지분 및 영위하는 업무 등에 따라 비거주자(외국 모기업 등)로부터 만기 1년 이하의 단기자금을 차입시 외국환 은행장에 신고함으로써 가능함
- 참고로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닌 경우 1년 이하의 단기자금 도입은 재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 한편 각급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나름대로의 금융지원을 하고 있음 따라서 외국투자자는 투자대상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하여 금융지원을 도출 할 수 있음

### 6-13. 한국은 어느 기관에서 믿을만한 지방(도)에 관한 신용 위험보고서를 공표 하는가?

- 한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가 직접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었음
- 따라서 국가에 대한 신용위험을 평가하는 국내기관이 없음

- 국외에서는 한국에 대해 신용위험을 평가하여 등급을 발표하는 기관이 있음(S&P, Moodys, Fitch 등)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용위험도는 필요시 이러한 국제평가기관들의 한국에 대한 신용등급을 준용할 수도 있음

**6-14. 도와 중앙정부 사이의 계약관계는 어떻게 맺어지며 어떻게 관리 및 운영되고 있는가?**

-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는 필요에 따라 각종 계약을 맺을 수 있음. 중앙정부는 사안에 따라 해당 각 부처가 계약의 주체가 됨
- 맺어진 계약은 계약내용에 따라 쌍방간에 동등한 효력을 가짐

**6-15. 한국의 중앙정부는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는가?**

- 지방자치단체는 매 회기마다 재정의 수입 및 지출에 대한 모든 계획을 수립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게 됨
-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사업에도 똑같이 적용됨. 각종 사업의 경우 그 사안에 따라 관계되는 중앙정부 및 산하기관과 협의함으로써 사전에 조율을 하게 됨
- 중앙정부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각종사업에 대하여 심의·협의하여 각종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지휘·감독·보조하나 연대 보증을 하지는 않음

**6-16. 현지법인의 경우에도 초기 정착과정에서는 수시로 외국에 있는 모기업으로부터 운전자본의 수수 또는 필요경비의 보조를 받아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자금수수의 절차 및 회계처리 과정이 지점의 경우에 비해 복잡하고 번거로운가?**

- 회계처리는 현지법인이나 지점이나 차이가 없음.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 및 준칙에 따라 처리하게 되어 있음
- 모기업으로부터의 자금지원(운전자금, 필요경비 기타)의 경우 그 자금의 성격을 해당사가 우선 규명해야 함
- 자본금의 증액으로 처리코자 하는 경우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기존법인의 신규주식 취득에 준해 처리하면 됨
- 차입금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는 대여금의 조건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 서명 후 외국환 거래법에 따라 필요 자금을 도입 하게 됨

**6-17. 외국인이 한국 증권시장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절차(담당기관 및 자금송금방법 등)는?**

- 외국인이 한국 증권시장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여야 하고 수탁은행(custodian bank)을 지정하여야 함
- 투자를 위한 필요 자금은 수탁은행 앞으로 송금하여야 함
- 이상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상임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음
- 위 절차를 마친 후 거래증권회사를 통해 투자할 수 있음
- 실제에 있어서는, 거래증권회사를 지정하면 거래증권회사가 상기 모든 절차를 대행해줄 수도 있음

**6-18. 대규모 외국자본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종종 외국금융기관에서 국내 지방 자치단체나 유관기관의 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외국자본의 국내도입을 위한 국내 보증가능 기관은 무엇이며, 어떤 조건과 절차 등이 필요한지?**

- 외국자본 도입만을 위한 국내 전문 보증기관은 따로 없음
- 다만 국내에서 보증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으로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있음
- 외국에서의 외자도입을 위한 보증은 건당 1백억 원을 한도로 하고 있음 자세한 조건 및 절차는 상기기관에 직접 문의 또는 홈페이지를 참조할 수 있음
- 신용보증기금 : [www.shinbo.co.kr](http://www.shinbo.co.kr)
- 기술신용보증기금 : [www.kibo.co.kr](http://www.kibo.co.kr)

**6-19. 외국인 투자자가 금융서비스업을 하고자할 때, 관련 정부기관의 인·허가 절차는?**

- 은행업
- 인허가 담당기관 및 종류: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
- 자본금요건
  - 시중은행 : 1,000억원
  - 지방은행 : 250억원
- 인가심사기준
  - 사업계획의 타당성
  - 자본금 및 주주 구성의 적정성 · 자본조달가능성

- 발기인 또는 경영진의 경영능력과 성실성 및 공익성
- 외국인이 은행 신규설립에 참여할 경우에도 위와 동일함
- 외국은행이 국내에 지점을 설치 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함이 경우 자본금기준은 동 은행 국내지점의 영업기금으로 봄

#### ○ 증권업

- 인허가 담당기관 및 종류: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
- 자본금요건
  - 종합증권업 : 500억원
  - 자기매매업, 위탁매매업 : 200억원
  - 위탁매매업 : 30억원
- 주요 출자자가 외국기업인 경우의 자격요건
  - 허가신청일 현재 외국에서 증권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
  - 최근 사업년도 말을 기준으로 한 수정재무제표상의 자기자본 규모가 출자금액의 4배 이상일 것
  -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이상이거나 본국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의 확인이 있을 것
  - 최근 3년간 본국 감독당국으로부터 법인경고 이상의 행정상처벌 또는 벌금이상의 형사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 외국증권사의 국내지점 설치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함

#### ○ 보험업

- 인허가 담당기관 및 종류: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
- 자본금요건 : 300억원(일부 사업만 영위 시는 100억원)
- 외국인 보험사업자의 자격요건

- 국내에서 영위하고자하는 보험사업과 동일한 보험사업을 외국법령에 의하여 영위하고 있을 것
- 재산상황· 재무건전성 및 영업건전성이 국내에서 보험사업을 영위하기에 충분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을 것
- 보험계약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그 영위하고자 하는 보험사업을 수행함에 충분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 여신전문금융업

- 인허가 담당기관 및 종류
  - 시설대여(리스)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 :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
  - 신용카드업 :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
- 자본금요건
  - 여신전문금융업중 2개 이하 영위 : 200억원
  - 여신전문금융업중 3개 이상 영위 : 400억원

○ 증권투자신탁업

- 인허가 담당기관 및 종류 :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
- 자본금요건 : 100억원
- 외국인 출자자의 자격요건
  - 허가신청일 현재 외국에서 동종의 업무를 영위하고 있을 것
  -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기자본이 출자하고자 하는 금액의 3배 이상일 것
  -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이상이거나 본국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 최근 3년간 금융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본국의 감독기관으로부터 법인경고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7. 공장 설립

## 차 례

7-1. 공장설립을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	137
7-2. 모든 공장이 공장설립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	137
7-3. 공장설립승인에 소요되는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	138
7-4. 개별입지와 계획입지는 어떻게 구분되는가? .....	138
7-5. 계획입지와 개별입지의 장. 단점은 무엇인가? .....	139
7-6. 계획입지의 종류는? .....	140
7-7. 외국인기업전용단지는 어디에 있으며, 입주자격 및 입주혜택은? .....	140
7-8.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어디이며, 입주자격 및 입주혜택은? .....	141
7-9. 제조업관련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요건 및 혜택은? .....	141
7-10. 기타 계획입지에 입주하는 경우 어떠한 혜택이 있는가? .....	142
7-11. 개별입지 공장설립가능여부의 사전확인 방법은? .....	142
7-12. 공장설립승인신청시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 있어야 하는가? .....	144
7-13. 공장설립이 가능한 지역에서는 공장건축허가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가? .....	144
7-14. 수도권내에서의 공장설립은? .....	144
7-15. 외국인투자기업이 수도권 성장관리지역내에서의 공장신설 방법은? .....	145
7-16.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설립시 IK에서 지원가능한 분야는? .....	145
7-17. 외국인기업전용단지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지분 철수 등으로 입주기동후 입주요건을 상실했을 경우는? .....	145
7-18. 개별입지의 공장설립시 환경규제는 어떠한가? .....	146
7-19. 공장설립업무를 대행해 주는 전문기관이 있는지? .....	146
7-20. 산업단지 내 입주업체 등이 공장 등의 설립을 완료한 후에 공장을 처분하고자 할 때의 절차는? .....	147
7-21. 산업단지 내 공장 등을 경매 등에 의해 취득한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	147
7-22. 공업지역내에 외국인투자자가 대형활인매장건설 및 영업이 가능한가? .....	147

- 7-23. 외국인전용공단에 입주하고 있는 투자업체(고도기술산업업체)의 임대기간 및 임대  
 만료후의 처리방식은? ..... 148
- 7-24. 주요 공단별 입주정보(공단여건, 인센티브, 주요진출업체)는 어디서 제공되나? ..... 148
- 7-25. 지진에 민감한 품목을 생산 시, 주요 공단입지별 지진관련 데이터를 입수할 수 있는가? .... 148

### 7-1. 공장설립을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 계획입지(산업단지)에서의 공장설립절차는 입주 가능한 산업단지를 선물색 후 산업단지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공장설립승인으로 간주되며 이후 공장건축, 공장가동 등의 절차를 거치면 됨
- 개별입지(산업단지외의 입지)는 계획입지를 제외한 모든 부지로 투자자가 직접 공장부지를 조성하여 공장을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투자자가 원하는 지역이 공장설립이 가능한지를 사전에 확인한 후 지방자치단체(시·군·구)로부터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후 공장건축, 공장가동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됨. 특히 공장건축면적이 500㎡이상의 경우에만 시·군·구의 공장설립승인이 필요하며, 500㎡미만의 경우에도 공장설립승인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는 공장설립승인을 얻을 수 있음

### 7-2. 모든 공장이 공장설립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500㎡미만의 경우는 공장설립승인을 요하지 않음. 그러나 500㎡미만의 경우에도 공장설립승인과 동시에 처리되는 의제처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공장설립승인을 얻을 수 있음
- 500㎡미만의 공장으로 등록되어있는 공장이 증설로 인하여 공장건축면적이 500㎡이상인 되는 경우에는 공장증설승인이 아니라 신설승인 대상임
- 다음의 경우는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공장설립승인이 필요치 않음
  - 산업단지내에서 제조업의 영위자가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
  - 자유무역지역 입주, 창업사업계획승인, 산업단지에 입주할 자가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어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는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것으로 간주

### 7-3. 공장설립승인에 소요되는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설립승인신청서의 처리기한은 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7일, 승인신청내용의 전부가 시·군·구에 속하는 경우는 14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용도지역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는 30일임
- 다만 민원처리기관의 장이 합리적인 사유로 기간내 처리가 불가할 경우는 1회에 한해 처리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신청내용의 보완, 보정이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 7-4. 개별입지와 계획입지는 어떻게 구분되는가?

- 개별입지와 계획입지는 그 해당토지의 개발주체와 개발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구분됨. 일반적으로 개별입지는 그 토지를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자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이 아닌 개별법에 의해 개발하여야 하며
  - 공장설립을 위한 개별입지지정은 산업단지외의지역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의 용도지역변경을 수반하고 용도지역의 적정여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된 후에 그 승인여부가 결정되며, 각종 인프라시설구축 등을 개별업체가 직접 시행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음
- 계획입지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해 공장, 지식산업시설, 자원비축시설, 유통시설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해 포괄적 계획에 따라 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여기에는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가 있음
  - 이들 단지는 대부분 입주, 공장 신·증설 등에 관한 각종 인·허가에 규제가 없는 상태임

## 7-5. 계획입지와 개별입지의 장. 단점은 무엇인가?

- 개별입지와 계획입지의 장단점은 해당 기업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으나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비교해 볼 수 있음

구분	개 별 입 지(미조성지)	계 획 입 지(산업단지)
장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규모로 공장을 건축할 수 있음</li> <li>○ 저렴한 가격으로 개별용지(농지·임야)를 매입할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에서 계획적으로 조성, 유도하는 입지 이므로 금융, 세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금, 자금융자</li> <li>- 취득세, 등록세 전액면제</li> <li>- 재산세, 종합토지세 50% 감면(최초 취득시 5년 이내)</li> </ul> </li> <li>○ 대규모 단지조성에 따른 산업기반시설, 생활편의 시설 등의 지원시설이 양호함</li> <li>○ 공장의 집단화에 따른 상호정보교환, 기술 교류, 업종교류, 협업화가 용이함</li> <li>○ 공동 공해방지시설의 설치, 운영으로 공해업종의 입주가 용이함</li> <li>○ 공장설립승인절차가 용이함</li> </ul>
단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지매입 및 공장설립승인절차가 까다로움</li> <li>○ 산업기반시설(전력,용수,항만,도로등)이 취약함</li> <li>○ 교육, 문화 등 생활편의시설이 미약함</li> <li>○ 각종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li> <li>○ 민원발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분양 후입주 방식이므로 필요한 때에 공장을 확보하기가 어려움</li> <li>○ 분양 공단이 지역별로 불균형하게 분포되어 있어 원하는 장소에 공장을 구하기가 어려움</li> <li>○ 구획 단지이므로 일단 입주하면 향후 사업확장(증축)이 제한됨</li> <li>○ 산업단지는 분양가격이 대체로 비싼 편임</li> </ul>

### 7-6. 계획입지의 종류는?

- 계획입지는 지정목적 및 지정권자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등으로 나누어짐
- 국가산업단지는 국가기간산업 및 첨단기술산업 육성을 위해 중앙정부가 지정, 개발, 관리하는 산업단지로서 외국인기업전용단지와 자유무역지역을 포함 45개 단지가 지정되어 있음
- 지방산업단지는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정부(시·도)가 지정, 개발, 관리하는 산업단지로서 전국에 175개가 지정되어 있음
- 농공단지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 육성하기 위하여 지방정부(시·군·구)가 지정, 개발, 관리하는 산업단지로서 전국에 315개가 지정되어 있음

### 7-7. 외국인기업전용단지는 어디에 있으며, 입주자격 및 입주혜택은?

- 현재 외국인기업전용단지는 충남 천안, 충북 오창, 광주 평동, 전남 대불, 경북 구미, 경남 진사 등 6곳이 있음
- 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입주자격은 외국인 투자비율이 30%이상인 합작기업으로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단, 평동, 대불은 10%)이어야 함
- 외국인기업전용단지에 입주하는 업체중 고도기술수반사업으로서 100만불 이상의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100% 감면하며, 일반제조업으로서 투자규모가 500만불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75% 감면하고 있으며, 임대기간은 50년간으로 연장도 가능함

### 7-8.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어디이며, 입주자격 및 입주혜택은?

- 자유무역지역은 자유무역지역지정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외자유치, 무역진흥, 지역 개발을 목적으로 항만이나 공항의 주변지역 또는 산업단지에 지정하며, 현재는 마산, 익산, 군산, 대불, 인천항, 부산항, 광양항, 인천공항 등 8개소가 지정되어 있음
- 입주자격은 제조업을 비롯하여 물류업, 무역업, 지원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종임
  - 외국인투자가 제한되지 않는 제조업
  - 창고, 운송, 하역, 포장, 전시, 판매 등 물류업
  - 수출·입 거래를 주목적으로 하는 도매업
  - 금융, 통관, 정보처리, 근로자 후생복지사업 등 입주업체 지원업종
- 부지임대 주체가 국가이며 입주혜택은 임대료 감면이 가능하고 관세유보, 각종 행정지원의 원스톱서비스가 이루어짐. 또 조세감면은 제조업의 경우는 투자금액 1,000만불 이상, 물류업의 경우는 투자금액 500만불 이상인 기업에 한해 외국인투자 지역에 준하는 법인세, 소득세 5년간 100%, 2년간 50%, 지방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됨

### 7-9. 제조업관련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요건 및 혜택은?

- 외국인투자지역은 대규모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투자가가 공장설치를 희망하는 지역에 유치협상을 통하여 사후적으로 지정
- 외국인투자자유지역의 지정요건은 다음과 같음
  -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불 이상인 경우

- 이 경우 조세감면혜택은 고도기술수반사업의 경우와 같고 개발에 필요한 비용과 향만, 도로 등의 기반시설 설치지원 등의 각종 혜택이 주어짐. 또 국가소유토지에 대한 임대료가 100%감면됨

### 7-10. 기타 계획입지에 입주하는 경우 어떠한 혜택이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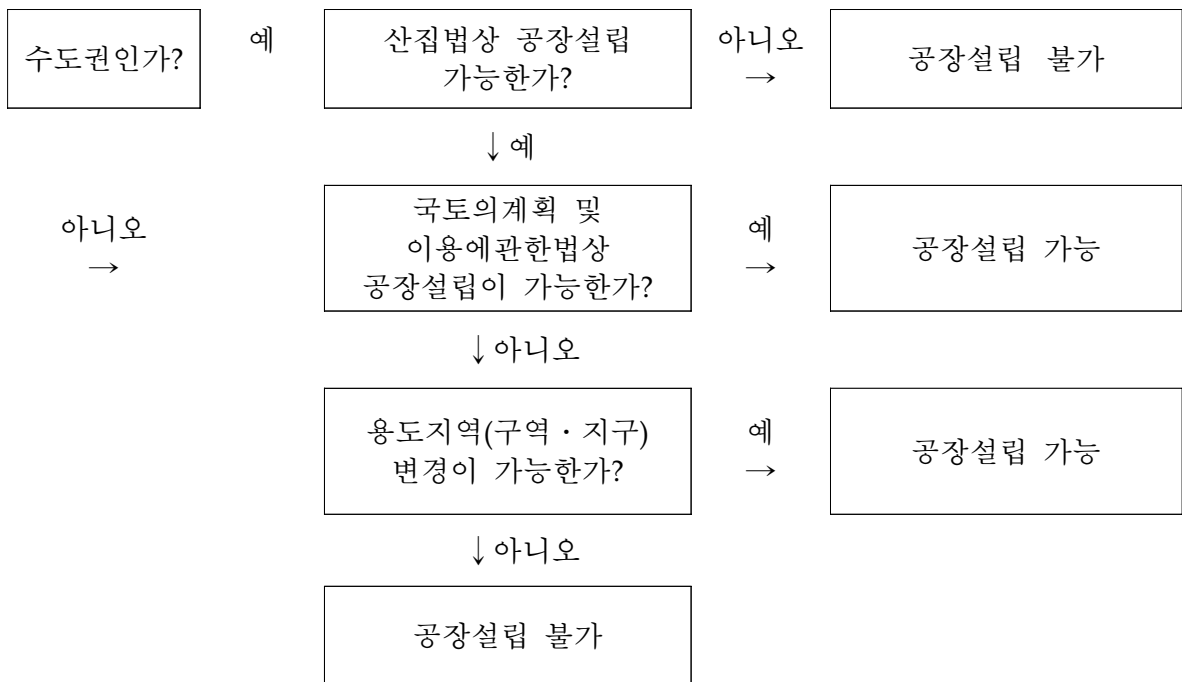
-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용 건축물등을 신축하는 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며,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취득일로부터 각각 5년간 50%가 경감되고, 서울·인천·경기외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100% 면제됨
- 국가가 소유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투자업종 및 규모에 따라 임대료의 50%까지 감면 가능
- 자금지원혜택, 경영정보, 기술교육, 단지내 지원시설 등 다양한 경영인프라 활용 가능

### 7-11. 개별입지 공장설립가능여부의 사전확인 방법은?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기준확인을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 사전에 공장설립 가능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음
- 공장설립시 검토할 사항은 아래와 같음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의 적정여부
  - 사업계획의 내용 및 입지규모의 적정여부
  - 환경보전 및 문화재보존에 미치는 영향
  - 군사시설의 보호 및 군작전에 미치는 영향

- 발생폐기물의 처리계획 및 교통수요 유발에 대한 대책
- 공장방류수의 유입으로 농업용수 사용에 지장이 있는지의 여부
- 국토건설종합계획, 산업배치기본계획, 지역개발계획, 도시계획 등 관련계획 및 다른 산업단지 개발계획과의 관계
- 지하수가 공업용인 경우 지하수 부존량 및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

※ 공장설립 가능 여부 확인 절차



### 7-12. 공장설립승인신청시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 있어야 하는가?

- 공장설립승인신청시에는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토지에 대한 사용권만 있으면 되므로 입지기준 확인 후 공장설립이 가능한 지역이면 부지 소유주로부터 부지사용승낙서를 받아 부지 소유권이전전이라도 공장설립승인을 신청할 수 있음

### 7-13. 공장설립이 가능한 지역에서는 공장건축허가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가?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승인의 경우에는 건축허가가 의제처리 되므로 공장설립승인신청과 동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함으로써 공장설립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장설립승인 등 일괄처리민원의 경우 여러가지 인·허가 사항을 의제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민원처리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음

### 7-14. 수도권내에서의 공장설립은?

- 수도권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공장설립의 총량규제 뿐만 아니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에서 과밀억제지역, 성장관리지역, 자연보전지역 등에서의 공장의 신설, 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제한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음

### 7-15. 외국인투자기업이 수도권 성장관리지역내에서의 공장신설 방법은?

- 성장관리지역내의 산업단지, 공업지역, 기타지역내에서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이 허용되며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인 기업에 한함. 단, 산업단지내에서 허용 기간은 2004년 12. 31일 까지임
- 신·증설 가능업종은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액정표시장치 제조업 등 25개 업종

### 7-16.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설립시 IK에서 지원가능한 분야는?

- Invest KOREA는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장설립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대행 또는 지원하고 있음
- Invest KOREA 공장설립을 희망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공장설립승인, 건축허가 등 민원사무처리시 민원처리기관의 장에게 이송하여 민원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또 중요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TF팀을 구성하여 심도있는 지원 제공
- 산업단지, 개별입지 등 입지를 알선하고 공장부지물색을 지원하고 있음

### 7-17. 외국인기업전용단지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지분 철수 등으로 입주가동후 입주요건을 상실했을 경우는?

- 외국인기업전용단지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단지별로 요구되는 외국인투자지분을 충족해야함
- 그러나 입주업체가 산업단지에 입주한 후 불가피한 사유발생으로 외국인투자지분이 철수된 경우 등 입주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는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2년 이내에 투자지분을 충족시켜야 함

- 따라서 기한내에 투자지분 미충족시는 단지별 임대계약규정에 따라 계약해지사유에 해당됨

**7-18. 개별입지의 공장설립시 환경규제는 어떠한가?**

-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현행 토지이용관련법령에서 당해 공장의 배출시설의 종류, 오염물질배출 규모에 따라 입지 허용 여부를 정하고 있으므로 투자자는 입지 검토시 계획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환경 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임

**7-19. 공장설립업무를 대행해 주는 전문기관이 있는지?**

- 산업자원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서울 본사를 비롯한 전국 10개 지역에 아래와 같이 공장설립대행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어느지역에서든 전국대표번호1566-3636으로 전화하면 공장설립 입지상담 및 공장설립관련 무료 대행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지역	담당지역	연락처
공장설립 지원팀	공장설립지원업무 전국총괄 공장설립관리정보망(FEMIS) 운영	02-6300-5731
서울센터	서울, 인천, 경기(양평, 여주 제외)	02-6300-6513
원주센터	강원, 충북, 경기	033-761-7124
수원센터	경기	031-259-6241
천안센터	대전, 충남	041-554-9636
구미센터	대구, 경북	054-467-0731
청주센터	충북	043-236-4107
창원센터	부산, 경남	055-260-1211
울산센터	울산, 경남	052-228-1550
광주센터	광주, 전남, 제주	062-953-5713
군산센터	전북	063-468-6900

**7-20. 산업단지 내 입주업체 등이 공장 등의 설립을 완료한 후에 공장을 처분하고자 할 때의 절차는?**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입주기업체에 처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리기관에 처분신고를 하여야 함

**7-21. 산업단지 내 공장 등을 경매 등에 의해 취득한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 기타 법률에 의하여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만일 6개월 이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는 1년 이내에 제 3자에게 양도 하여야 함

**7-22. 공업지역내에 외국인투자자가 대형할인매장건설 및 영업이 가능한가?**

- 할인판매장은 건축물의 용도분류상 대규모 판매시설로서 공업지역에서의 건축은 가능하나 당해 지역내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하므로, 건설 및 영업의 실익은 없음

**7-23. 외국인전용공단에 입주하고 있는 투자업체(고도기술산업업체)의 임대 기간 및 임대만료후의 처리방식은?**

- 임대기간은 50년으로 10년 단위로 재계약하여야 함
- 임대기간이 만료되거나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입주자는 본인의 부담으로 임대 재산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자에게 반환해야 함
- 또 임차자가 임대자에게 임차부지에 대해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그 배상책임이 임차자에게 있음

**7-24. 주요 공단별 입주정보(공단여건, 인센티브, 주요진출업체)는 어디서 제공되나?**

- 주요 공단별 입주정보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매년 발간하는 한국산업단지 총람에 국내의 모든 산업단지(국가, 지방, 농공단지)가 시·도별로 소개되고 있음. 동 총람에는 입주업체 현황, 입지여건, 입주혜택, 입주조건 등의 모든 정보가 수록되어 있으며 동 내용은 한국산업단지공단 e산단홈페이지 ([www.esadan.net](http://www.esadan.net))에서도 볼 수 있음

**7-25. 지진에 민감한 품목을 생산 시, 주요 공단입지별 지진관련 데이터를 입수할 수 있는가?**

- 국가, 토지공사, 수자원공사, 지자체, 일반기업체 등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개발되는 산업단지는 산업단지개발계획 수립시 지질, 지반, 지하수맥 등 산업단지의 안전성과 관계되는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산업단지 지반공사를 추진함
- 따라서, 지진과 관련된 자료는 산업단지 사업시행자로부터 입수할 수 있음

## 8. 법인 설립

## 차 례

8-1. 한국내 회사설립절차는? .....	153
8-2. 회사의 두가지 설립방법인 모집설립과 발기설립의 차이는? .....	154
8-3. 정관의 기재사항은? .....	156
8-4. 정관의 공증을 받게 하는 이유는? .....	157
8-5. 주식회사의 설립등기 절차는? .....	158
8-6. 주식회사 설립시 소요되는 비용은? .....	160
8-7.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는가? .....	160
8-8. 주식회사의 주주와 경영진의 책임범위는? .....	162
8-9. 개인사업자와 주식회사의 차이는? .....	163
8-10. 현지법인, 지점, 연락사무소의 차이점은? .....	164

### 8-1. 한국내 회사설립절차는?

- 우리나라에는 합명·합자회사는 거의 없고 주식회사의 비중이 95% 이상이므로 일반적인 회사설립절차로써 주식회사의 설립절차를 살펴 보겠음
  - 1) 발기인의 구성  
주식회사는 1인 이상의 발기인 필요
  - 2) 유사상호의 검토
  - 3) 발기인 총회 및 의사록 작성
  - 4) 정관의 작성과 공증
  - 5) 주식발행사항의 결정(발기설립 또는 모집설립)
  - 6) 주식인수와 모집배정
  - 7) 출자의 이행(현물출자를 포함)
  - 8) 설립경과 조사
  - 9) 창립총회의 개최
  - 10) 이사회회의 개최
  - 11) 법인설립등기 및 신고

**8-2. 회사의 두가지 설립방법인 모집설립과 발기설립의 차이는?**

- 발기설립이란 회사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발기인이 모두 인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고, 모집설립은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중에서 발기인은 일부만을 인수하고 잔여부분에 대해서는 주주를 모집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
- 발기설립 및 모집설립의 절차

발기설립절차	모집설립절차	
	<b>공통사항</b>	
	① 발기인의 구성 ② 발기인총회 및 의사록 작성 ③ 정관의 작성과 공증 ④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⑤ 발기인의 주식인수		⑤ 발기인의 주식인수와 주주의 모집, 배정
	⑥ 현금(현물)출자의 이행	
⑦ 검사인의 설립경과조사		⑦ 변태설립사항에 대한 검사인 또는 감정인의 조사
	⑧ 창립총회의 개최 ⑨ 이사회회의 개최 ⑩ 법인설립등기 ⑪ 설립신고	

	발기설립 (폐쇄적)	모집설립 (공개적)
주식인수	발기시에 발행하는 주식은 전부 발기인들이 인수 (상법 293조)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일부를 발기인이 인수하고 남은 부분은 주식청약서에 의해 주주 모집 (상법 301조)
주금 납입장소	발기인은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를 지정(상법 제305조 제1항 후단)	주식청약서에 기재한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장소(상법 제305조 2항, 302조 2항 9호)
납입해태(지연)	일반 채무불이행절차, 단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다른 발기인이 인수하여 납입하는 경우 회사설립이 가능	법정 실권절차(제307조)
이사·감사(감사위원회)의 선임	발기인이 주식인수인으로서 가지는 의결권의 과반수로 임명(제296조 1항, 제415조의 2 제6항)	창립총회의 결의요건은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2/3 이상이며 인수주식 과반수의 다수결로 선임(309, 312조)
설립경과 조사	1)이사와 감사가 설립경과를 조사하여 발기인에 보고(298조 1항) 2)단, 정관에 변태설립사항(상법 290조)이 있는 경우 이사는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298조 4항) 검사인은 변태설립에 관한 사항, 주금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한 사항과 기타 사항을 조사하여 서면으로 법원에 보고, 보고서의 등본을 각 발기인에 교부(상법 299조 1항, 2항)	1)이사와 감사는 취임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상법 313조 1항) 2)정관에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 발기인은 이에 관한 조사를 하기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검사인의 조사보고서는 창립총회에 제출되어 위 1)의 이사와 감사의 조사를 받게 됨(310조)
창립총회	불필요	필요
주식의 모집	불요	필수적

### 8-3. 정관의 기재사항은?

○ 절대적 기재사항(289조 1항)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요건으로서 하나라도 기재하지 않으면 회사설립 자체가 무효가 됨

- a. 목적
- b. 상호(주식회사 명기)
- c.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 d. 1주의 금액(100원 이상)
- e. 회사설립시 발행할 주식의 총수
- f. 본점 소재지
- g. 회사 공고를 하는 방법
- h. 발기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상대적 기재사항

기재여부가 정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나 기재하지 않으면 회사와 주주에 대하여 효력이 없음

a. 변태설립사항(290조)

규정해 놓지 않으면 발기인과 제3자의 개인적 이익추구로 회사의 재산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고 회사와 주주 및 회사 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수 있는 사항

-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290조 제1호)
- 현물출자자의 성명과 목적 재산의 종류·수량·가격·대가로 지급되는 주식의 종류와 수 (290조 제2호)
- 회사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수량·가격·양도인 성명(290조 제3호)

-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290조 제4호)

※ 변태설립사항은 남용의 우려가 있어 반드시 법원이 임명한 검사인의 심사를 받게 함

b. 기타의 상대적 기재사항

주식의 양도제한(상법 제335조 1항 단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340조의 2), 수종의 주식발행권(344조), 무기명주권의 발행(357조 1항), 전환주식의 발행(346조), 의결권 없는 주식의 발행(370조 1항), 주식의 이익소각(343조 1항 단서) 등

o 임의적 기재사항

기재하지 않아도 정관의 효력이나 회사의 영업활동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여타 기재사항들과 같은 법적 효과를 누리게 됨. 정관에 기재하여야만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상대적 기재사항과 차이가 있음

예 : 지점 소재지, 주권의 종류, 정기총회 소집시기 등

#### 8-4. 정관의 공증을 받게 하는 이유는?

- o 정관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으로부터 공증을 받아야만 정관의 효력이 발생하며(상법 제292조), 공증을 필한 정관이 있어야 법인 등기가 가능

※ 첨부서류 : 정관 2통과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증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 8-5. 주식회사의 설립등기 절차는?

- 등기의 목적
  - 법인격은 설립등기로 완성되며 회사의 이해관계자에게 회사가 성립된 사실과 회사의 조직의 대강을 외부에 공시
- 등기기간
  - 발기설립: 설립경과의 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2주간 이내
  - 모집설립: 창립총회 종료일 또는 상법 314조에 의한 변태설립사항의 변경절차가 끝난 날로부터 2주간 이내
- 등기 기재사항(317조)
  - ① 정관 절대적 기재사항 중 목적, 상호, 1주 금액, 공고방법 및 발행예정주식총수, 본점의 소재지
  - ② 자본의 총액
  - ③ 발행주식의 총수 및 그 종류와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 ④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⑤ 지점의 소재지
  - ⑥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 ⑦ 건설이자를 배당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⑧ 전환주식에 관한 사항
  - ⑨ 이사와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대표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⑩ 회사를 대표할 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⑪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⑫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⑬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소재지

## ○ 등기신청시 구비서류

- ① 외국인투자신고필증 사본
- ② 위임장
  - 대표이사가 등기신청 : 대표이사가 모든 위임장에 수임인이 되어야 함
  - 법무사가 등기신청 : 발기인, 임원에 관계없이 대리인이 수임인이 됨
- ③ 임원 취임승락서
  - 내국인 : 인감 날인후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첨부
  - 외국인 : 서명 공증 원본, 여권 사본 첨부
- ④ 주금납입보관증명서
- ⑤ 법인인감도장
- ⑥ 채권매입
- ⑦ 대법원수입인지
- ⑧ 지방등록세 납부영수증 : 본점 소재지 구청
- ⑨ 임원 및 발기인 개인인감(외국인 포함)
- ⑩ 정관 : 공증
- ⑪ 주식인수증
- ⑫ 주식청약서
- ⑬ 창립사항보고서
- ⑭ 창립총회기간단축동의서
- ⑮ 창립총회 의사록 : 공증
- ⑯ 이사회 의사록 : 공증
- ⑰ 인감신고서 및 법인인감카드신청서
- ⑱ 주주명부
- ⑲ 주식발행사항동의서

### 8-6. 주식회사 설립시 소요되는 비용은?

- 지방등록세 : 자본금의 0.4%(대도시는 3배 초과됨)
- 지방교육세 : 등록세의 20%
- 채권매입 : 자본금의 0.1%
- 대법원수입증지(등기신청 수수료) : 15,000원
- 공증료 (정관 등) : 약 150,000원

※ 예를들어 법정 최저자본금(5,000만원)의 회사 설립시:

등록세(200,000원 x 3) + 교육세(120,000원) + 채권(50,000원) + 공증료(약 150,000원)  
= 935,000원 정도 소요됨 (법무사 비용 별도)

### 8-7.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는가?

- 사업자등록과 법인설립신고를 동시에 하는 경우
  - 보통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신청은 세무서에 비치된 한 장의 용지에 동시에 하게 됨
- ① 신청장소 : 법인소재지 관할세무서 또는 KOTRA 외국인투자지원센터(IK)
- ② 기 한 : 사업자등록 -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법인설립신고 -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2월 이내

## ③ 필요서류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서(IK 및 세무서 제공)
  - 정관(현물 출자시 그 출자목적물 명세서 첨부)
  - 법인등기부등본
  - 개시대차대조표(IK에서 대리작성 가능)
  - 주주및출자자 명세서(법인인감 날인)
  - 외국인투자신고필증 사본
  - 외국환 매입·예치 증명서 사본
  - 사업허가증(허가, 인가, 신고 등을 요하는 사업에 한함) 사본
  - 대표자가 국내거주자가 아닌 경우 외국인등록증(혹은 여권)원본 제시후 사본 제출
  - 사무실임대차계약서(임대)/사무실소유증명서류(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등기부 등본)
  - 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대표자가 외국인이며 서류 송달을 받은 국내인 종업원이 없는 경우) : 납세관리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 사업자등록을 먼저 하는 경우(현물출자시)
- 일반적으로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신청은 동시에 함
  - 외국인투자자가 현물출자를 하여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목적물의 통관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받기위하여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투자목적물의 수입에 앞서 사업자등록을 끝마쳐야 함, 이러한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서는 법인등기부등본대신에 발기인 전원의 주민등록등본, 사업허가신청서(단, 허가사업인 경우), 사업계획서가 필요하며 기타 법인설립시 필요한 서류는 법인설립후 모두 제출해야 함

## 8-8. 주식회사의 주주와 경영진의 책임범위는?

### ○ 주주의 책임범위

- 주주의 유한책임의 원칙상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이며(상법 331조),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음. 따라서 주주는 회사의 채무초과로 인한 청산 또는 파산시에 자기가 출자한 금액(주식 구입가격을 의미)을 되찾지 못함으로써 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손해를 볼 뿐이지 추가로 책임을 부담하는 일은 없음
- 이는 주식회사의 본질적인 특색으로서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서도 주주의 책임은 가중시킬 수 없음

### ○ 경영진의 책임

1. 회사의 경영진이라 함은 보통 이사 혹은 대표이사를 의미하므로 경영진의 책임이라 하면 이사의 책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왔음. 그러나 1999년도 개정상법 제401조의2 규정에 의거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조항을 추가하여 그 동안 이사가 아니면서 회장, 사장 등의 직함을 갖고 회사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면서도 법률상으로는 전혀 책임을 지을 수 없었던 사람들을 모두 회사의 이사로 간주하여 동일한 책임을 지우고 있음
2. 이사의 책임으로는 회사에 대한 책임과 제3자에 대한 책임을 들수 있음

첫째,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은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책임과 임무를 태만한 데 대한 책임으로 이러한 책임을 지울수 있는 경우로는 위법 이익 배당안의 제출(상법 462조 제1항)· 경업 금지에 위반한 거래(397조 제1항)· 이사회 승인 없는 이사의 자기거래(398조 제1항)· 자기주식의 취득(제341조)·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한 이익공여(467조의2)·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위반(382조 2항)이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회사에 책임져야 할 부분임. 이사가 이러한 책임을 지는 경우에 위의 위반행위가 이사회 결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일 경우는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이사 전원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됨

둘째, 제3자에 대한 책임으로는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 이사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제401조 제1항). 이사가 책임을 지는 행위로는 주식청약서·사채청약서·신주인수권증서·신주인수권증권·채무제표·기타의 서류에 허위의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등기 또는 공고를 한 때 등임

3. 개정 상법 제401조의 2에 따라 이사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는 첫째,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둘째,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수행한 자, 셋째,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기회조정실장·전무·상무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임

## 8-9. 개인사업자와 주식회사의 차이는?

### 1. 성격상의 차이

- 1) 개인사업자 : 개인이 본인의 명의로 사업을 수행하며 모든 업무는 개인대표의 명의 및 책임아래 이루어지고, 모든 채무도 대표인 개인이 부담
- 2) 주식회사 : 법인은 개인들과는 완전히 별개의 존재로 모든 업무는 회사의 명의로 대표이사가 수행하면, 모든 채무나 보증 등도 회사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짐. 법인의 구성원인 대표이사, 이사, 주주 등은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음

### 2. 설립절차상의 차이

- 1) 개인사업자 : 외국인투자신고 이외의 별도의 절차는 필요 없고 단지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만을 받으면 영업이 가능함
- 2) 주식회사 : 외국인투자신고 외에 법인설립절차(등기)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등기관련 서류의 준비 및 절차상 이유로 약 1-2주 정도의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음

## 8-10. 현지법인, 지점, 연락사무소의 차이점은?

### 1. 현지법인

현지법인은 외국회사가 투자하여 국내에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상법의 규정이 적용되며 내국법인으로 취급됨. 상법상으로 주식회사의 최소 자본금은 5,000만원이며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의 최소투자금액도 외국인 투자가 1인당 5,000만원 임(현지법인과 외국인투자자는 별도의 법인으로 회계, 결산이 독립적임)

### 2. 지점

외국회사가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내지점의 대표자를 임명하고 외국환거래법상의 지점설립절차를 밟아야 하고 법원에 등기를 요함. 국내에서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내국법인들과 동일한 법인세율이 적용됨(외국본점과 지점은 동일법인으로 회계, 결산이 상호 연결됨)

### 3. 연락사무소

지점과 연락사무소의 근본적인 차이는 지점이 영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데 반해 연락사무소는 단지 본사를 위한 비영업적활동만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임. 따라서 연락사무소는 관할 세무서에서 고유번호만을 부여받게 되며 법원에 등기를 요하지 않음

## 9. 부 동 산

## 차 례

9-1. 외국인(법인 포함)이 한국내 토지를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나? .....	169
9-2. 외국인이 한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구체적인 절차는? .....	169
9-3. 외국법인이 국내에 별도의 법인이나 지점의 설립 없이 토지취득이 가능한가? .....	170
9-4. 영주권을 가진 교포가 한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구체적인 절차와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는가? .....	171
9-5.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을 경우에도 토지취득신고를 하여야 하는가? .....	172
9-6. 외국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매각하였을 경우, 매각대금을 해외로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는가? 또 그 절차는? .....	172
9-7. 한국내 토지의 취득 및 이용·개발에 따르는 규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	173
9-8. 부동산과 관련한 세금은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할 경우 어떠한 세제혜택이 있는가? .....	174
9-9. 부동산중개 수수료는 어느 정도인지? .....	176
9-10. 국내 SOC 프로젝트에 투자 희망시 방법은? .....	176

### 9-1. 외국인(법인 포함)이 한국내 토지를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나?

- 국내거주에 관계없이 외국인도 국내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용도, 규모 등의 제한 없이 토지를 취득할 수 있음
  - 토지취득 및 이용·개발에 따르는 규제 또한 마찬가지로 국내인과 동일하게 적용됨
  - 다만, 예외적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문화재보호구역·생태계보존지역 내의 토지 등에 대한 외국인의 토지취득은 사전허가가 필요 (외국인토지법 제4조)
  - 이 경우에도 허가권자는 사전허가가 필요한 구역, 지역 등의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당해 구역, 지역 등의 지정목적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야 함
- ※ 토지관할 시·군·구청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받으면 해당 토지에 대한 주요 규제내용을 알 수 있음

### 9-2. 외국인이 한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구체적인 절차는?

- 거주외국인의 경우
  - 외국환거래법상의 신고절차없이 매매계약후 60일 이내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 (토지취득신고)한후 관할등기소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함
  - 거주외국인은 부동산등기시 필요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와 주소증명서류가 외국인 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외국인등록번호와 주소지로 대체 가능
- 비거주외국인의 경우
  - 부동산 취득자금의 반입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은행장에게 먼저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여야 하며(외국환거래규정 제7-45조)

- 이후 **부동산이 토지일 경우\*** 외국인토지법에 따른 '토지취득신고'를 관할 시·군·구청에 하고 소유권이전 등기절차에 들어감

※ 외국인토지법은 토지취득에 대한 규정만 두고 있으므로 토지이외의 부동산(건물) 및 관련권리(전세권, 저당권 등)를 취득할 경우 외국인토지법에 따른 신고절차는 불필요. 그러나 한국에서 부동산의 거래관행은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여 매각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건물만 별도로 취득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임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발급 : 비거주 외국인 개인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법인은 토지소재지 시·군·구청 지적과에서 발급 받을 수 있음

※ 거주자 정의

- 개인 :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 국내 영업소에 근무하거나 영업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6개월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외국인
- 법인 : 대한민국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 및 비거주자의 국내 지점·출장소 기타 사무소

**9-3. 외국법인이 국내에 별도의 법인이나 지점의 설립 없이 토지취득이 가능한가?**

- 비영리목적의 취득은
  - 별도법인이나 지점 설립 없이 가능하나 이 경우 취득한 토지를 임대 등 영리행위에 사용할 수 없음
- 영리활동(임대 등)을 목적으로 한 취득인 경우에는
  - 상법 제614조에 의해 국내에 법인이나 지점의 설립이 반드시 필요

- ※ 상법 제614조 제1항 :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정하고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 ※ 만약 외국법인이 직접 부동산을 매입한 이후에 임대 등 영리사업을 위해 별도 법인을 설립할 경우, 부동산의 명의변경에 따라 취득세·등록세를 다시 부담해야 하므로 영리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는 국내에 지점이나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명의로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
- ※ 최근 기업들이 자금난으로 외국기업에 보유부동산을 매각후 임차(Sale & Lease)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임차는 영리행위이므로 외국기업은 국내에 법인이나 지점을 설립하여야 함
- 국내 영업소가 없는 외국법인도 매입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가 가능하며 이 경우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는 토지관할 시·군·구청에서 발급
- ※ 등록번호 발급시 필요한 서류 : 당해 국가에서 발급한 법인등록, 대표자·대표자 주소지 증명서류

#### 9-4. 영주권을 가진 교포가 한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구체적인 절차와 구비 서류는 어떻게 되는가?

- 영주권자는 외국인토지법상의 외국인이 아니므로 동법에 규정된 토지취득신고는 필요 없으나 외국환거래법상의 비거주자에 해당되므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자금의 반입·반출시 신고절차가 필요 (비거주자 취득절차 참조)
-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 필요한 서류는
  - 주민등록 존치시 : 국내인과 동일
  - 주민등록 말소시 : 다음의 추가서류가 필요
    - 주소증명 서류 또는 거주사실증명서(외국거주지 관공서 발급 또는 외국의 공증기관 공증)

- 서울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부여하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기과 ☎ 02-530-1892)

※ 등록번호 신청시 재외국민등록등본(거주국 한국영사관발급)과 호적등본, 위임장  
(대리신청시) 등을 첨부 (민원우편신청 가능)

### 9-5.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을 경우에도 토지취득신고를 하여야 하는가?

- 아파트,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을 분양받았을 경우에도 일반적인 토지취득절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토지취득신고를 하여야 함
-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취득신고서, 토지등기부등본, 계약서 등을 구비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
- 이 경우 토지취득면적은 분양받은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의 대지지분이 될 것임
- 소유권 이전 등기는 통상적으로 잔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하면 될 것임

### 9-6. 외국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매각하였을 경우, 매각대금을 해외로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는가? 또 그 절차는?

- 은행계정을 통해 정상적으로 들어온 취득자금에 의해 구입된 부동산의 매각자금은 자유로운 해외송금이 전적으로 보장됨
- 비거주외국인의 부동산매매자금 반·출입
- 부동산취득자금의 반입시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된 자금에 의해

구입된 부동산의 매각자금 역시 신고만으로 반출 가능(당해 부동산의 취득 및 매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거주외국인(6개월이상)의 부동산매매자금 반출입
  - 부동산 매입자금의 반입은 자유로우나 매각대금 혹은 부동산임대소득의 반출은 한국 은행총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

### 9-7. 한국내 토지의 취득 및 이용·개발에 따르는 규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 토지취득과 관련된 규제로서
  - 2004년 4월 현재 전국적으로 총 15,183km<sup>2</sup>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내국인이 토지취득시 계약 체결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나, 외국인에게 적용되지 아니함
  - 수도권 및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4,294km<sup>2</sup>, 판교 택지개발 예정지구, 신행정수도 건설예정지, 전남도청이전후보지, 경제자유구역 지정지역(인천,부산,진해), 전남 우주센터 건설지, 수도권 김포, 파주지구 신도시 건설지역, 아산 신도시 개발예정지 등
  - 농지법상 농지소유상한은 없으며, 농지 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함
  - ※ 농지법상 농지는 실질적으로 농업경영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취득이 가능하므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은 사실상 농지취득이 불가능
- 다음으로 토지의 이용과 관련된 규제는
  - “국토계획”에 의해 전국토는 5개의 용도지역으로 분류되고 개별용도마다 일정한 행위제한이 따르고 있으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용도지역이 지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내지 “건축법” 등에서 개별적인 행위제한이 따름

\* 토지관할 시·군·구청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받으면 해당토지에 대한 주요 규제내용을 알 수 있음

○ 끝으로 토지의 개발과 관련된 규제는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해 택지개발·관광단지조성 등 28개 개발사업 시행시 개발이익의 25% 부담금을 부과해 왔으나, 정부의 부담금부과 완화정책에 의하여 2004년 1월 1일 이후에 인가 등을 받은 사업부터 따로 법률이 정하는 시기까지 개발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있음

### 9-8. 부동산과 관련한 세금은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할 경우 어떠한 세제혜택이 있는가?

○ 부동산과 관련한 세금으로

- 토지 매입(등기)단계에서 취득세(2%)와 등록세(3%)가 있고, 이외 부가세로 농특세(취득세의 10%)와 지방교육세(등록세의 20%)가 있으며 기타 국민주택채권을 매입(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된 경우 감면)하여야 함
- 보유단계에서는 재산세(0.3~7%), 종토세(0.2~5%)와 기타 지방교육세(재산세·종토세의 20%), 농특세(종토세의 10%~15%) 등의 부가세가 있음
- 매각시에는 개인의 경우 양도소득세(9~36%)와 주민세(양도세의 10%)가 있고, 법인은 법인세(15%~27%) 및 주민세(법인세의 10%)가 있음

○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세제혜택으로는

-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국가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기술수반사업에 따른 토지취득 및 외국인투자지역내에서의 토지취득인 경우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토세를 면제함 (처음 5년간 100%, 다음 3년간 50%)
-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된 기업의 업무용 부동산 등기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혜택을 받는 자는 전액 감면하고, 기타 외국인 투자기업은 투자비율만큼 매입이 감면됨

단계	세 목		비 고	
취득	취득세(취득가액 2%) 농특세(취득세의 10%)	중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의 신·증설 공장 및 본점용 부동산 신축 : 3배 중과(6%)</li> <li>· 골프장·별장 등 사치성 부동산 취득시 : 5배 중과(10%)</li> </ul>	
		감면	· <b>고도기술사업, 외국인투자지역</b> 의 경우 감면	
	부가가치세 (건물취득가액의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영위시 매입세액으로 공제가능</li> <li>· 국민주택규모(85㎡)이하 주택취득시 면제</li> </ul>		
등기	등록세(취득가액 3%) 지방교육세(등록세의 20%)	중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밀억제권역내의 공장 신·증설 : 3배중과 (9%)</li> <li>·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지점 설립·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 설립후 5년내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 : 3배중과 (9%)</li> </ul>	
		감면	※ 위 취득세 경우와 동일	
	국민주택채권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된 기업의 업무용 부동산의 등기시 투자비율만큼 채권매입 감면</li> <li>· 시가표준액이 1억이상일 경우 : 주거전용 건축물 6.5%(대도시 7%), 기타 4.5% (대도시 5%)</li> </ul>	
보유	재산세 (0.3 - 7%)	중과	과밀억제권역내 공장 신·증설시 : 5년간 5배 중과	
		감면	<b>고도기술사업, 외국인투자지역</b> 의 경우 감면	
	종합토지세 (0.2 - 5%)	감면	<b>고도기술사업, 외국인투자지역</b> 의 경우 감면	
	기타 부가세	지방교육세 (재산세·종합토지세의 20%), 농어촌특별세 (종합토지세의 10%·15%)		
매각	개 인	양도세(9-36%)	중과	미등기 양도시는 70%
	법 인	법인세 (15~27%)	매매차익은 영업외 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로 부과	
		주민세	양도세 · 법인세의 10%	
		부가가치세	건축물 양도가액의 10% (양수인으로부터 징수)	

### 9-9. 부동산중개 수수료는 어느 정도인지?

- 부동산중개업자는 부동산매매, 임대차 등 부동산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 및 부동산 대상물의 관리관계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음
- 다만,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 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을 수 없음
- 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에 수수료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다만 요금액이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한도액 범위내에서 받음
- 일반주택의 수수료 요율 및 한도액은
  - 매매의 경우 5천만원 미만은 0.6%(25만원 한도),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은 0.5%(80만원 한도),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은 0.4%임
  - 임대의 경우 5천만원 미만은 0.5%(20만원 한도),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0.4%(30만원 한도),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은 0.3%임
- 일반주택을 제외한 중개대상물과 매매가 6억원·임대가 3억원 이상의 고급주택은
  - 법정중개수수료의 한도(매매·교환0.2~0.9%, 임대차등 0.2~0.8%)내에서 중개 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상호계약에 따라 결정

### 9-10. 국내 SOC 프로젝트에 투자 희망시 방법은?

- 한국정부는 민자사업의 가시적 추진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도개선, 투자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음

- 그 결과 2003년 12월 현재 국가가 관리하는 사업이 37개, 지자체 관리사업이 97개에 이르고 있으며
  - SOC 프로젝트의 경우 건설사의 참여가 주를 이뤄 왔으나 최근에는 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가 활성화 되고 있음
- 외국인 투자가 역시 수익성 및 환차손 적정보장, 파이낸싱 제도정비 등에 힘입어 참여업체가 계속 늘어가고 있음
  - 인천국제공항 제2연륙교(AMEC, 영국), 부산신항만 (CSX World Terminal, 미국), 검단하수종말처리시설 (Veolia Water, 프랑스), 대전천변고속화도로 (Egis, 프랑스) 등
- 새로이 국내 SOC 투자를 희망하는 외국 업체 및 투자가의 경우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정보수집이 가능
  - 민간투자지원센터(<http://picko.krihs.re.kr>)에서는 외국인 민간투자자를 위한 투자 상담,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간담회, 해외 투자설명회 등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외자유치활동을 지원
  - 해당 지자체에서 매년 투자유치설명회를 미국, 유럽, 일본 등지에서 개최
  -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관심분야에 대한 투자가능 여부, 관련정보 수집, contact point 확인 등 가능
- 민간투자법에 의거하여 투자하는 경우

- 투자가 가능한 SOC 시설 (36개 유형)

분 야	소관부처	사회간접자본시설 유형
도 로 분 야(3)	건설교통부	도로 및 도로부속물, 노외주차장, 지능형 교통체계
철 도 분 야(2)	철 도 청	철도
	건설교통부	도시철도
항 만 분 야(2)	해양수산부	항만시설, 어항시설
공 항 분 야(1)	건설교통부	공항시설
수자원분야(4)	건설교통부	다목적댐, 하천부속물
	환 경 부	하수도, 수도
정보통신분야(4)	정보통신부	전기통신설비, 정보통신망, 초고속정보통신망
	건설교통부	지리정보체계
에 너 지 분 야(3)	산업자원부	전원설비, 가스공급시설, 집단에너지시설
환 경 분 야(6)	환 경 부	폐기물 처리, 분뇨처리, 축산폐수공공처리, 폐수 종말처리, 재활용, 하수종말처리시설
유 통 분 야(3)	건설교통부	유통단지, 화물터미널 및 창고, 여객자동차터미널
문화관광분야(8)	문화관광부	관광지 및 관광단지, 청소년수련시설, 생활체육시설,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국제회의시설
	과학기술부	과학관
	건설교통부	도시공원

- 민간투자사업의 각종 Incentive

- 최고 15년 동안 정부고시사업의 경우 90%,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80%까지 최소 운영수입보장가능 : 5년마다 보장 수준 10%씩 하향 조정 (단, 실제 운영수입이 추정 운영 수입의 50% 미만인 경우 수입 보장 적용 배제)
- 20% 이상의 환차손 발생시 사용료 조정 또는 재정지원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건설 또는 관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정부에 사업을 매수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

- 투자비 보전 또는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건설, 택지개발, 관광사업 등의 부대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수용권을 부여하고 국공유재산의 경우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무상사용토록 함
- BTO 및 BOT 사업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BOT 사업의 경우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면제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감면

## 10. 건 축

## 차 례

10-1. 허가(신고)를 받아야하는 대상건축물은? .....	185
10-2. 건축허가 절차 및 처리기간은? .....	186
10-3. 건축허가시 제출되는 기본설계도서는? .....	187
10-4. 건축허가시 부담하는 수수료의 기준은? .....	187
10-5. 건축물의 착공신고 절차는? .....	188
10-6. 건축착공시 필요한 설계도서는? .....	188
10-7. 건축물의 사용승인 절차는? .....	188
10-8. 건축물 건축시 건축 가능한 건축물면적은(건폐율)? .....	189
10-9. 건축물 건축시 몇 층까지 건축할 수 있는지(용적률)? .....	190
10-10. 건축법상 공장건축이 가능한 지역은? .....	190
10-11. 공장건축물 건축시 관계기관에서 득하여야 할 인·허가·신고 사항은? .....	191
10-12.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 타법령에 의한 허가(신고)처리되는 사항은? .....	192
10-13.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할때 어느 기관에서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지? .....	193
10-14. 건축허가를 받은 후 건축허가 취소 대상은? .....	193
10-15. 건축물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 타 법령에 의한 준공처리사항은? .....	194
10-16. 건축물의 건축관련 각종분쟁 발생시 조정해 주는 제도적 장치는? .....	195
10-17. 건축물 증·신축과 관련하여 가장 밀접한 법령은? .....	195
10-18. 골프장 내에 관광호텔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	196

10-1. 허가(신고)를 받아야하는 대상건축물은?

-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이라 해도 신고로서 건축허가를 갈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음
- 건축허가(신고) 대상 건축물

건 축 허 가		건 축 신 고 (신고로서 건축허가를 대신하는 건축물)
지 역	대상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li> <li>• 고속국도 및 철도의 경계선으로부터 각각 양측100미터이내의 구역</li> <li>• 일반국도 경계선으로부터 양측50미터이내의 구역</li> <li>• 지역균형발전 또는 지역계획 등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지역</li> <li>•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부담구역</li> </ul>	모든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 개축 또는 재축하는 건축물</li> <li>•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규모 주택·축사 또는 창고로서 읍·면지역(도시계획상 지장이 있다고 시장, 군수가 지정·공고한 구역 제외)에서의 건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면적합계가100제곱미터(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33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li> <li>- 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이하인 창고</li> <li>-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하인 축사 또는 작물재배사</li> <li>- 대수선</li> </ul> </li> <li>•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li> <li>• 기타 소규모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li> <li>- 건축물높이를 3미터이하의 범위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li> <li>- 공업지역(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산업단지(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에 한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안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500 제곱미터 이하인 공장</li> <li>-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규모가 주위환경·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타 지역 또는 구역</li> </ul>	건축물연면적200제곱미터이상이나, 3층 이상인 건축물(증축으로인하여 당해 건축물이 대상 규모에 해당될 경우를 포함)	

## 10-2. 건축허가 절차 및 처리기간은?

- 건축법 제8조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신청서에 대지범위 및 사용에 관한 권리(공동주택의 경우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건축사가 작성한 기본설계도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 신청하여야 하며, 규모별 그 처리기간은 다음과 같음

대 상 규 모	처 리 기 간	
	건축법(국내기업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기업)
○ 표준 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할 건축물	2일	7일
○ 2층이하 또는 1천 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7일(3)	14일
○ 3층이상 10층미만 또는 1천제곱미터이상 5천 제곱미터 미만건축물	14일(7)	
○ 10층이상 16층미만 또는 5천제곱미터이상 3만 제곱미터미만건축물	20일(10)	
○ 16층이상 또는 3만제곱미터 이상건축물	30일(15)	
○ 특별시·광역시장의 허가대상 건축물	50일	
○ 시·도지방건축위원회 건축심의대상 건축물 (도지사의 사전승인대상건축물포함)	90일(45)	30일

※( )안은 건축사가 조사점사의 업무대행을 하는 건축물의 처리기간임

### 10-3. 건축허가시 제출되는 기본설계도서는?

- 건축허가시 제출하여야 하는 기본설계도서는 다음과 같음
  - 건축계획서(위치, 면적, 규모, 용도 등)
  - 배치도(건물배치, 도로, 주차 및 조경계획 등)
  - 평면도(1층 및 기준층 평면도, 기둥, 벽, 창문, 계단 위치 등)
  - 입면도(2면 이상의 입면계획, 외부마감재료)
  - 단면도(중횡단면도, 건축물 및 각층의 높이 등)

※ 건축허가 등에 제출되는 설계도서는 반드시 건축사가 작성하여야 하며 축척은 임의임

### 10-4. 건축허가시 부담하는 수수료의 기준은?

- 연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다음수수료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건축법시행규칙 제10조)

건축연면적	수수료
200제곱미터미만	단독주택 : 2천원이상 3천원이하 기 타 : 5천원이상 7천원이하
200제곱미터이상 1천제곱미터미만	단독주택 : 3천원이상 4천500원 이하 기 타 : 1만원이상 1만5천원이하
1천제곱미터이상 5천제곱미터미만	2만5천원이상 4만원이하
5천제곱미터이상 1만제곱미터미만	5만원이상 7만5천원이하
1만제곱미터이상 3만제곱미터미만	10만원이상 15만원이하
3만제곱미터이상 10만제곱미터미만	20만원이상 30만원이하
10만제곱미터이상 30만제곱미터미만	40만원이상 60만원이하
30만제곱미터이상	80만원이상 120만원이하

※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하는 부분의 면적에 따라 적용

### 10-5. 건축물의 착공신고 절차는 ?

- 건축주는 건축공사에 착수하기 전까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그 공사계획을 신고 하여야함. 공사 감리대상인 경우 공사감리자 및 공사 시공자가 착공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 신고해 야 함
- 착공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및 도서는 다음과 같음
  -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 설계도서
  - 흙막이구조 도면(지하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

### 10-6. 건축착공시 필요한 설계도서는?

- 건축착공신고시 제출하는 설계도서 (축척 임의)는 다음과 같음
  - 배치도, 각층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구조도
  - 시방서
  - 실내마감도
  - 소방설비도, 건축설비도
  - 토지굴착 및 옹벽도

### 10-7. 건축물의 사용승인 절차는 ?

- 건축주 : 건축허가(신고) 대상 건축물의 공사 완료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사용승인 신청(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 감리자가 작성한 공사완료보고서 첨부)

- 시장, 군수, 구청장
  - 건축사업무대행건축물 : 사용승인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 건축주에게 사용승인서 교부
  - 건축사업무대행제외건축물 : 사용승인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건축주에게 사용승인서 교부

### 10-8. 건축물 건축시 건축 가능한 건축물면적은(건폐율)?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건폐율이라 하며, 용도지역에 따라 다음 범위 안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7조)
  - 주거지역 : 전용(50%), 제1·2종일반(60%), 제3종일반(50%)
  - 상업지역 : 중심(90%), 일반(80%), 근린(70%), 유통(80%)
  - 공업지역 : 70%
  - 녹지지역 : 20%
  - 관리지역 : 보전·생산(20%), 계획(40%)
  - 농림지역 : 20%
  - 자연환경지역 : 20%
  - 취락지구,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농공단지 : 60%
  - 개발진흥지구, 수산자원보호구역 : 40%
  -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 80%

### 10-9. 건축물 건축시 몇 층까지 건축할 수 있는지(용적률) ?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이며, 다음 범위에 따라 건축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됨(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8조)
  - 전용주거지역 : 제1종(100%), 제2종(150%)
  - 일반주거지역 : 제1종(200%), 제2종(250%), 제3종(300%)
  - 상업지역 : 중심(1,500%), 일반(1,300%), 근린(900%), 유통(1,100%)
  - 공업지역 : 전용(300%), 일반(350%), 준(400%)
  - 녹지지역 : 보전(80%), 생산(100%), 자연(100%)
  - 관리지역 : 보전(80%), 생산(80%), 계획(100%)
  - 자연환경지역 : 80%
  - 개발진흥지구,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
  - 수산자원보호구역 : 80%
  - 농공단지 : 150%

### 10-10. 건축법상 공장건축이 가능한 지역은?

- 공장건축이 가능 또는 선택적으로 가능한 지역으로는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임
  - 주거지역  
: 인쇄업, 기록매체복사업, 봉제업(의류편조업 포함),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 조립업, 두부제조업의 공장, 아파트형 공장(대기환경보전법 등의 규정에 의한 유해물질 배출 공장 제외)
  - 중심상업지역  
: 출판업·인쇄업 및 기록매체복제업(대기환경보전법 등의 규정에 의한 유해물질 배출 공장 제외)

- 일반·근린상업지역  
: 대기환경보전법 등의 규정에 의한 유해물질 배출 공장만 제외
- 전용·일반공업지역 : 모든 공장 가능
- 준공업지역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 생산녹지지역  
: 도정공장·식품공장 및 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상 첨단업종의 공장(대기환경보전법 등의 규정에 의한 유해물질 배출 공장 제외)
- 자연녹지지역  
: 아파트형공장, 도정공장, 식품공장과 읍, 면 지역에서 건축하는 제제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
- 계획관리지역  
: 부지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과 시장·군수가 15,00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안에 입지하는 공장(화학제품 제조시설 등 제외)

#### 10-11. 공장건축물 건축시 관계기관에서 득하여야 할 인·허가·신고 사항은?

- 인·허가 사항(시장, 군수, 구청장)
  - 공장설립승인인가
  - 건축허가
  - 건축물사용승인

※ 기타 타법에 의한 인·허가사항은 복합심의 또는 의제처리

- 신고사항(시장, 군수, 구청장)
  - 공장설립완료신고
  - 환경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 환경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
  - 건축착공신고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 위험물취급자선임신고 : 소방서장
  - 방화관리자선임신고 : 소방서장
  - 전기안전관리자선임신고 : 전기안전협회

10-12.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 타법령에 의한 허가(신고)처리되는 사항은?

- 건축법 제8조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 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2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법률의 허가 또는 승인을 얻은 것으로 봄
-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송부하여야 함
  1. 건축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공사용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2. 건축법 제72조 규정에 의한 공작물의 축조허가 또는 신고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5. 산림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허가
  6. 사도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

7. 농지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
8. 도로법 제40조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9. 도로법 제50조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안에서의 건축물·공작물의 설치허가
10.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등의 허가
11. 하수도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 신고
12.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설치신고
13. 수도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의한 상수도 공급신청

### 10-13.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할때 어느 기관에서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지?

-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 하고자 할때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신고)를 받아 건축할 수 있음. 단 다음 건축물을 특별·광역시에 건축하고자하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하고, 시장, 군수가 건축물을 허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 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만 됨

- 21층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공장 제외)

### 10-14. 건축허가를 받은 후 건축허가 취소 대상은?

-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거나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가 취소되며, 단 허가권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10-15. 건축물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 타 법령에 의한 준공처리사항은?

- 공장 건축물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검사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봄
  - 수도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준공검사
  - 소방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 등의 완공검사, 동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의 준공검사
  -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신고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의 준공검사
  - 대기환경보전법 제14조,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신고
  - 전기통신공사업법 제2조 규정에 의한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의 준공검사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시설의 완성검사
- ※ 당해 공장의 사용승인시 관련서류 함께 제출
- 일반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거나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봄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준공검사
  - 지적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 변동사항의 등록신청
  - 하수도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준공검사

### 10-16. 건축물의 건축관련 각종분쟁 발생시 조정해 주는 제도적 장치는?

-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하여 분쟁이 있을시 시·도 및 시, 군, 구에 설치된 건축분쟁 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수 있음
- 건축분쟁 조정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 건축관계자와 당해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간의 분쟁
  - 관계 전문기술자와 인근주민간의 분쟁
  - 건축관계자와 관계전문 기술자간의 분쟁
  -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분쟁
  - 인근주민 상호간의 분쟁
  - 관계전문기술자 상호간의 분쟁

### 10-17. 건축물 증·신축과 관련하여 가장 밀접한 법령은?

- 건설계통의 많은 법규들이 건축법령과 관계가 있으나 그 중에서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법규는 다음과 같음
  - 수도권정비계획법 :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억제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적정한 토지이용 및 제한사항과 도시계획의 입안, 결정 및 사업시행 과 행위제한사항 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업등록 도급계약 건설기술자 의 면허 등에 관하여 규정
  - 소방법 : 화재예방, 경계, 진압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관하여 규정
  - 건설기술관리법 : 건설기술의 연구, 공사품질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
  - 건축사법 : 건축사의 자격과 업무 등에 관하여 규정
  - 주차장법 : 주차장의 설치, 정비 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안전점검, 유지관리 사항 등 규정

10-18. 골프장 내에 관광호텔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 골프장 안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의 시설물을 설치할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 에서 규정하는 8개항에 저촉되지 않을 때 신축가능
- 골프장이 상기 법령의 8개항목에 저촉되지 않으면 사업자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법률 제12조에 의거 변경사업계획서를 작성, 관할 시·도지사에게 승인 신청하는 한편,
- 골프장부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이므로 관광호텔을 신축하기 위하여는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야 할것임
-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관광호텔 계획을 반영하여 관할 시장, 군수에게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청하고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사업계획변경승인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변경이 완료되면
- 관광진흥법 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 도지사에게 관광숙박업등록신청을 하면 됨

## 11. 관 광

## 차 례

11-1. 호텔, 골프장, 카지노는 언제부터 외국인의 투자가 가능한가? .....	201
11-2. 외국인이 호텔을 매입한후 이를 다시 임대하여 경영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와같은 Sales & Lease Back 방식의 투자가 가능한가? .....	201
11-3. 외국인도 휴양콘도미니엄을 분양받을 수 있는가? .....	201
11-4. 외국인이 경매나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절차에 따라 호텔을 인수한 경우 관광사업자로서의 지위도 승계되는가? 종전의 관광사업자가 받은 관광사업자 등록은 유효한가? .....	202
11-5. 골프장내에 관광호텔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 .....	202
11-6. 신규호텔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한 절차는? .....	202
11-7. 신규호텔사업을 위한 등록기준은? .....	203
11-8. 외국인이 신규 카지노허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허가요건상 내국인과 다른 점이 있는가? .....	203
11-9. 카지노사업은 반드시 관광호텔내에서만 할 수 있나? 기존 카지노를 양수하는 경우 호텔과 함께 양수하여야만 하는가? .....	203
11-10. 카지노사업을 위한 영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204
11-11. 카지노업 운영을 위한 시설기준은? .....	204
11-12. 카지노사업자는 관광진흥개발기금에 일정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그 액수는 어떻게 정하는가? .....	205
11-13. 외국인이 구조조정차원에서 매각하려는 국내재벌회사의 골프장과 호텔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각각 세제상의 감면혜택이 있는가? .....	205
11-14. 카지노와 호텔에 대한 외국인투자시 세제면에서 내국인과 다른점은? 배당이익의 송금시 과세는 몇% 정도인가? .....	206
11-15. 외국인이 국내 골프장의 영업권을 인수했을 때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와 지점 또는 연락사무소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의 세제상 차이는? .....	206

### 11-1. 호텔, 골프장, 카지노는 언제부터 외국인의 투자가 가능한가?

- 호텔은 이미 외국인투자가 개방되어 있는 업종이며, 골프장도 '98년 4월 1일자로 개방되었음
- 카지노는 '99년 5월 1일부터 외국인투자를 허용하기로 결정되었으며, 이때부터 모든 관광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사실상 개방됨

### 11-2. 외국인이 호텔을 매입한후 이를 다시 임대하여 경영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와같은 Sales & Lease Back 방식의 투자가 가능한가?

- 관광진흥법 제11조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관광호텔의 객실은 타인 경영이 불가능함. 다만 나이트클럽, 식당, 면세점 등 부대시설에 대하여는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을 허용하되 부대시설에 대해 관광호텔 사업자 명의를 유지할 필요가 없으므로 부대시설 사업자가 직접 영업허가를 얻을 수 있음

### 11-3. 외국인도 휴양콘도미니엄을 분양받을 수 있는가?

- '97년 6월 부터 외국인 개인의 부동산취득이 자유로와짐에 따라 휴양콘도미니엄에 대한 외국인의 소유권 등기도 가능함

**11-4. 외국인이 경매나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절차에 따라 호텔을 인수한 경우 관광사업자로서의 지위도 승계되는가? 종전의 관광사업자가 받은 관광사업자 등록은 유효한가?**

-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換價)나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관광호텔 등 관광사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함
- 다만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월 이내에**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에 나열된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 지위승계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재한 서류 (외국인의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 정부의 증명서 또는 한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지위승계자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11-5. 골프장내에 관광호텔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

- 현행법상으로는 골프장내에 숙박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함

**11-6. 신규호텔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한 절차는?**

- 먼저 서울시·광역시·도 관광과에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개별법에 의해 건축허가 등을 받아 시설건설을 완료하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관청에 관광사업자로서 등록을 하여야 함

### 11-7. 신규호텔사업을 위한 등록기준은?

#### 관 광 호 텔 업

1. 욕실 또는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30실 이상일 것
2. 외국인에게 서비스제공이 가능한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을 것

※ 종합관광호텔업과 일반관광호텔업에 대한 구분이 없음

### 11-8. 외국인이 신규 카지노허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허가요건상 내국인과 다른 점이 있는가?

- 기본적으로 내국인과 허가요건이 같음

### 11-9. 카지노사업은 반드시 관광호텔내에서만 할 수 있나? 기존 카지노를 양수 하는 경우 호텔과 함께 양수하여야만 하는가?

- 현행법상 카지노사업은 국제공항 또는 국제여객선터미널이 있는 시·도내에 있거나 관광특구내에 있는 특1등급 호텔내 (특1등급이 없는 시·도는 특2등급 호텔포함)이나 외국간을 왕래하는 1만톤급이상 여객선 안에서 운영할 수 있음
- 신규로 카지노허가를 받으려는 호텔 또는 여객선은 전년도 외래관광객 유치실적이 문화관광부장관이 공고하는 기준에 적합하고 외래관광객 유치계획 및 장기수지전망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가 적정할 것 등 관광진흥법상의 허가요건을 갖추어야 함

- 다만, 기존 운영중인 카지노는 개별적으로 양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수한 자는 문화관광부 관광국 관광시설과에 대표자 등의 변경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

#### 11-10. 카지노사업을 위한 영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아래의 종류가 있음

1. 룰렛(Roulette) 2. 블랙잭(Blackjack) 3. 다이스(Dice, Craps) 4. 포커(Poker) 5. 바카라(Baccarat) 6. 다이사이(Tai Sai) 7. 키노(Keno) 8. 빅휠(Big Wheel) 9. 빠이 까우(Pai Cow) 10. 판탄(Fan Tan) 11. 죠커 세븐(Joker Seven) 12. 라운드 크랩스(Round Craps) 13. 트란타 콰란타(Trent Et Quarante) 14. 프렌치볼(French Boule) 15. 차카락(Chuck-A-Luck) 16. 슬롯머신(Slot Machine) 17. 비디오게임(Video Game) 18. 빙고(Bingo) 19.마작 (Majang)

#### 11-11. 카지노업 운영을 위한 시설기준은?

- 카지노업 시설기준

- 330제곱미터 이상의 전용영업장
- 1개소 이상의 외국환환전소
-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카지노 전산시설
- 위에 규정한 카지노업의 영업종류 중 4종류 이상의 영업을 할 수 있는 게임기구 및 시설

**11-12. 카지노사업자는 관광진흥개발기금에 일정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그 액수는 어떻게 정하는가?**

- 카지노사업자는 총매출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의한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하여야 함
  - 총매출액의 정의 : 카지노영업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수입한 총금액에서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을 공제한 금액
- 징수비율
  - 연간 총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 총매출액의 100분의 1
  - 연간 총매출액이 10억원초과 100억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 + 총매출액중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 연간 총매출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4억6천만원 + 총매출액중 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11-13. 외국인이 구조조정차원에서 매각하려는 국내재벌회사의 골프장과 호텔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각각 세제상의 감면혜택이 있는가?**

-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세제상 별도의 차별이나 혜택은 없으며 내국인과 동일한 적용을 받음

**11-14. 카지노와 호텔에 대한 외국인투자시 세제면에서 내국인과 다른점은?  
배당이익의 송금시 과세는 몇% 정도인가?**

- 배당이익의 송금시 배당소득세를 25% 원천징수하도록 되어있으나, 현재 대한민국은 홍콩, 대만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와 조세협약이 체결되어 있어 동 조세협약이 체결된 국가에 대해서는 개별협약에 의거 5%~15%를 원천징수토록 되어 있음

**11-15. 외국인이 국내 골프장의 영업권을 인수했을 때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와 지점 또는 연락사무소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의 세제상 차이는?**

- 연락사무소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골프장을 직접 운영할 수 없음
- 지점의 경우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비해 골프장 운영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액은 동일하며 부동산취득과 등기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도 동일
- 다만, 법인등기시 등록세는 자본금의 0.4%를 납부해야 하지만 지점의 경우 등록세가 23,000원으로 정해져 있음
- 특히, 대도시내 법인설립과 이에 따른 부동산 취득시에는 등록세와 취득세가 3배 증가됨

## 12. M & A

## 차 례

12-1. M&A시 인수대상기업의 채무를 승계하지 않는 경우는? .....	211
12-2. 적절한 M&A valuation 방법은? .....	211
12-3. 비밀보장계약서(Confidentiality Agreement)란? .....	211
12-4. 외국투자자의 국내기업 M&A시 요구되는 신고절차는? .....	212
12-5. 국내 M&A관련 법규는? .....	212
12-6. LBO란? .....	214
12-7. P&A란? .....	214
12-8. 합작투자후 KOSDAQ에 등록시킬 수 있는가? 있다면 등록 요건은? .....	214
12-9. 외국기업도 국내 증권거래소 상장이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그 요건은? .....	215
12-10. 파산절차중인 회사나 회사정리절차중인 회사도 합병대상이 될 수 있는가? .....	216
12-11. 합작법인에서 국내측 파트너의 동의 없이 외국파트너 임의로 제3자에게 지분매각을 할 수 있는가? .....	216
12-12. 외국인의 국내 주식·채권투자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는가? .....	216
12-13. Due Diligence(정밀실사)란? .....	217
12-14. M&A를 통해 기업을 인수하는 방법 및 형태는? .....	217
12-15. 합병 회계를 위한 방법은? .....	218
12-16. MBO(Management Buyout)란? .....	218
12-17. 위임장 대결전략(Proxy Fight)이란? .....	218
12-18. 외국 투자자가 한국내 회사를 자산 인수 혹은 사업 양수하는 방법은? .....	219
12-19. M&A를 통해 기업결합이 일어날 때 어떤 경우에 공정거래 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는가? .....	219
12-20. M&A 계약서 상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구성요소는? .....	220
12-21. M&A 중개기관의 수수료의 종류 및 성격은? .....	220
12-22. 외국투자자가 M&A대상기업선정을 할 때에 필요한 수집대상정보는? .....	221

### 12-1. M&A시 인수대상기업의 채무를 승계하지 않는 경우는?

- 자산인수(asset acquisition)방식에 의해 개별자산을 선택적으로 인수하는 경우에는 인수 대상기업의 채무를 승계하지 않아도 됨
- M&A 계약서 상에 진술과 보증(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부분에서 면책조항 및 사후보증 부분을 명확히 하여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소멸시키는 것이 바람직 함

### 12-2. 적절한 M&A valuation 방법은?

- 상장기업의 가치평가는 현금흐름할인법(discounted cash flow), PER를 이용한 방법, 배수(multiple)를 이용한 방법 등이 있음
- 비상장기업의 가치평가는 현금흐름 할인 평가, 이익의 자본환원법, 이익배수를 이용한 가치평가, 시장성과 소수성을 고려한 가치평가 등이 있음

### 12-3. 비밀보장계약서(Confidentiality Agreement)란?

- 매도자 또는 매도자의 대리인은 보통 매도거래와 매각대상기업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기 전이나 제공함과 동시에 해당정보를 받게 되는 측이 비밀보장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상당히 정형화되어 있지만 매도자의 취향과 매도기업의 성격 인수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 다소간 달라질 수 있음
- 비밀보장계약은 실사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임

#### 12-4. 외국투자자의 국내기업 M&A시 요구되는 신고절차는?

- 외국인직접투자의 신고절차를 밟아 외국환은행 본·지점, IK 및 KOTRA 국내·해외 투자거점무역관에 신고하고 신고기관에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함

#### 12-5. 국내 M&A관련 법규는?

- 증권거래법
  - 적대적 M&A 방법으로 주시장을 통한 매집, 위임장 대결, 공개매수에 의한 방법을 규율함
  -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 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 상장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승인은 당해 법인이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을 한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한 후에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음(증권거래법 제190조)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절차(증권거래법 제191조)
  - 매수청구가격 결정(증권거래법 제191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2항)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합병 금지(법 제7조, 제12조, 시행령 제18조)
- 상법
  - 합병에 따른 상법상 제한(상법 제174조, 제600조)

○ 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 법인세·소득세

- 조세감면대상으로 결정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기술 수반사업과 외국인투자 지역 입주사업에 동일한 감면 혜택
- 감면세액범위 :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외국인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
- 감면기간 및 비율 :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해로부터 7년간은 100%, 이후 3년간은 50% 감면

-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 감면세액범위 : 산출 배당소득세에서 전체사업소득 중 감면 대상사업소득이 차지 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 감면기간 및 비율 : 외투기업의 법인세, 소득세와 동일함

- 토지·건물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 감면세액범위 : 산출세액에서 외국인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
- 감면기간 및 비율 :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간은 100%, 이후 3년간은 50%(지방자치 단체가 조례로 감면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감면비율을 높인 경우 이에 따름)

○ 외국인투자촉진법

-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시행령에 의거 외국인투자신고를 하고 외자도입 후 외국인기업 등록을 하여야함
- 외국인 투자비율이 50% 미만이고 외국투자가가 최대주주가 아닌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국내기업으로 보아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의 주식취득 허용(과거에는 외국인투자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외국법인으로 보아 영위업종 제한)

-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의 비중이 경미한(총매출액 중 제한업종 사업의 매출액 비율이 1% 미만) 국내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구주 취득(M&A) 허용

### 12-6. LBO란?

- Leveraged buyout의 약자로서 대상기업을 담보로 소수의 투자자들이 대규모 차입을 통한 자금조달로 대상기업의 전체주식 또는 자산을 매집하여 인수하는 차입인수를 말함

### 12-7. P&A란?

- Purchase & Assumption의 약자로 통상 정부 주도하에 은행 및 금융기관들의 구조조정과정에서 해당 기관끼리의 통폐합이 일어남
- 인수 금융기관은 피인수 기관의 자산 및 부채를 선별적으로 인수하고, 부실자산만 남게된 피인수 기관은 자동적으로 청산 정리 절차를 밟게되며, 인수되지 않은 자산 및 부채는 일반적으로 bad bank를 설립하여 인수시킴

### 12-8. 합작투자후 KOSDAQ에 등록시킬 수 있는가? 있다면 등록 요건은?

- 외투기업도 KOSDAQ에 등록에 제한이 없으며 요건을 구비하면 KOSDAQ 등록이 가능함
- 주요등록 요건(선택 I 기준)
  - 설립후 3년 이상 경과

- 자본금 10 억원 이상
- 정관 등에 주식의 양도 제한이 없을 것
- 액면가액이 100원, 200원, 500원, 1,000원, 2,500원, 5,000원 중의 하나일 것
- 최근사업연도말 자본잠식이 없을 것
- 감사의견이 최근사업연도 적정일 것
- 경상이익이 있을 것
- 동업종 평균 1.5배 미만
- 기타 자세한 요건은 증권업협회 홈페이지 참조(<http://www.ksda.or.kr>)

### 12-9. 외국기업도 국내 증권거래소 상장이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그 요건은?

- 상장주요 요건(선택 2 기준)
  - 상장할 주식수가 상장신청일 현재 100만주 이상
  - 설립후 3년이상 경과하고 계속 영업. 다만,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양수가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 영업활동기간을 고려
  - 자본금 및 자기자본 규모가 각각 상장신청일 현재 30억원, 75억원 이상일 것
  - 최근연도 매출액이 직전사업년도 대비 20%이상 증가할 것 또는 최근연도 150억원 이상이고 최근 3년도 평균 100억원 이상
  - 소액주주 지분율이 30%이상 또는 공모비율이 30% 이상

- 동종업종 평균의 1.5배 미만. 다만, 금융업은 "적기시정조치(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법률 제10조)" 상태에 있지 아니할것
- 자세한 요건은 증권거래소 홈페이지 참조(<http://www.kse.or.kr>)

**12-10. 파산절차중인 회사나 회사정리절차중인 회사도 합병대상이 될 수 있는가?**

- 파산절차중인 회사는 합병을 할 수 없고(파산법 제44조) 회사정리 절차중인 회사는 회사정리법에 의하여만 합병이 가능함(회사정리법 제 211, 224, 225조)

**12-11. 합작법인에서 국내측 파트너의 동의 없이 외국파트너 임의로 제3자에게 지분매각을 할 수 있는가?**

- 원하지 않는 제3자에게 기존파트너의 지분이 양도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 상법 제335조에서 회사는 이사회결의에 의해 정관에 규정함으로써 지분의 양도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이런 경우 이사회 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불가능함)
- 또한 증권거래법 203조에서도 외국인 유가증권 취득의 제한을 두고 있는데 정관이 정하는 바에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했을 때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는 시정을 명할수 있게 되어있음

**12-12. 외국인의 국내 주식·채권투자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는가?**

- 외국인의 국내 주식 및 채권투자는 완전 개방되어 있음

- 외국인 이 유가증권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가 필요함
  - 증권회사와의 상임대리인 계약
  - 증권감독원으로부터 외국인투자자 고유번호를 발급 [필요서류: 여권사본(개인), 회사 설명서 및 회사등록서류(법인)]
  - 외국환은행에 원화 및 외화 유가증권 투자계정 개설
  - 증권회사에 계좌개설

### 12-13. Due Diligence(정밀실사)란?

- M&A에서 실사는 인수자가 매도 대상 자산의 실제존재여부, 향후 수익 창출 가능성, 부외 부채, 환경 문제 등 잠재적인 채무의 존재여부 등을 확인하는 작업을 의미함. 이러한 실사를 위해 실사팀을 구성하게 되는데, 필요 구성원으로서 재무, 회계, 세무전문가, 법률전문가, 해당업종 엔지니어, 환경전문가, 산업분석전문가 등이 필요함

### 12-14. M&A를 통해 기업을 인수하는 방법 및 형태는?

- M&A는 둘 이상의 기업이 통합되어 하나의 기업이 되는 기업합병과 인수기업이 인수대상기업의 주식이나 자산을 전부 또는 일부 매입함으로써 경영권을 획득하는 기업인수가 결합된 것으로써, 크게 합병(흡수합병, 신설합병), 인수(주식인수, 자산인수), 매각(분리설립, 분할설립, 분리공개, 분리매각, 완전매각)의 방법을 통해 할 수 있음

### 12-15. 합병 회계를 위한 방법은?

- 합병회계를 위한 방법은 매수법(purchase method), 지분풀링법(pooling of interests method)이 있음
- 매수법이란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의 순자산을 일괄 취득하는 것을 합병의 본질로 봄. 취득된 자산과 부채는 공정시장가치(fair market value)로 기록하고 이를 초과하는 취득원가는 영업권(good will)으로 계상함. 반대로 순자산의 공정시장가치가 취득원가를 초과할 때는 시장성 있는 장기투자유가증권을 제외한 비유동자산의 공정가치를 비례적으로 차감하여 계상함
- 지분풀링법이란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사이에 실질적인 거래가 없다는 것을 합병의 본질로 보고 합병당사회사의 소유자 지분의 단순한 결합으로 간주함. 피합병회사의 자산 및 부채는 장부가액으로 합병회사의 장부가액과 결합됨

### 12-16. MBO(Management Buyout)란?

- 경영진 또는 종업원이 인수자금의 일부를 조달하는 형태인 경영진에 의한 인수 방법을 말함. 차입인수(LBO)의 특수한 형태로서 LBO의 경우 주된 인수자가 외부 투자자인데 비해 MBO는 현재의 경영진이라는 점이 다름. 기존의 경영진이 외부자금을 이용하여 기업 전체 또는 일부를 인수함

### 12-17. 위임장 대결전략(Proxy Fight)이란?

-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위임장을 다수 확보함으로써 기업의 지배권을 확보하는 방법임. 의결권 위임장(proxy)은 의결권의 대리 행사를 위해서 주주총회에 제출하는 대리권 증명 서면을 말함

### 12-18. 외국 투자가가 한국내 회사를 자산 인수 혹은 사업 양수하는 방법은?

- 한국내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그 현지법인이 대상회사의 자산 혹은 사업을 양수하는 절차를 밟음. 결과적으로 외국투자가는 신규 현지법인의 신주를 인수하여 투자하게 되어 신주인수로 처리됨

### 12-19. M&A를 통해 기업결합이 일어날 때 어떤 경우에 공정거래 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는가?

-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회사(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신고 대상회사라 함)와 그 회사의 특수관계인이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있음. 여기서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는 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한 규모를 말함. 또한, 신고대상회사의 규모기준에 미달하는 회사 또는 그 회사의 특수 관계인이 신고대상회사의 규모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와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있음
  -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의 20% 이상(상장법인은 15%)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 회사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다른 회사의 임원지위를 겸임하는 경우
  -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경우
  -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수, 임차 또는 경영의 수입이나 다른 회사의 영업용 고정자산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양수 (주요부분이라 함은 양수, 임차 부분이 독립된 사업단위로 영위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고, 영업양수 금액이 양도회사의 직전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의 10%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경우임)
  - 새로이 설립되는 회사 주식을 20% 이상 인수하는 경우
- 기업결합관련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 (☎ 02-507-1934/5)

**12-20. M&A 계약서 상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구성요소는?**

1. 도입부문
2. 대금결제의 시기 및 방법
3. 매도자와 인수자의 진술과 보증
4. 매도자와 인수자의 약정사항
5. 대금결제 및 거래완료의 조건
6. 면책조항 및 사후 보증
7. 계약의 해지조건 및 방법
8. 기타 법적인 사항 등

**12-21. M&A 중개기관의 수수료의 종류 및 성격은?**

1. 검색료(finder fee) : M&A의 의뢰에 따라 적합한 대상기업을 찾아주는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 주로 소규모의 거래에서 요구됨
2. 착수금(up front fee) : M&A 거래에 대한 중개나 자문을 위임하기로 결정하면 계약과 더불어 착수금으로 수수료의 일정 비율이나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데, 이 금액은 계약유지금과 함께 나중에 거래가 끝난 후 총 수수료에서 공제되는 것이 일반적임
3. 계약유지금(retainer fee) : 중개전문회사의 자문이 수시로 필요하며 영속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하거나 또는 거래가 완료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될 때 지급하는 비용임. 거래의 성공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하며 보통 일정한 기간마다 미리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게 됨

4. 성공보수(success fee) : 가격이 확정되고 거래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는 때에 지급하는 비용으로 통상 총수수료에서 이미 지급한 착수금과 계약유지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함
5. 부대비용(out-of-pocket) : 중개기관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지출한 여행경비, 자료수집의 경비, 변호사의 자문 비용 등이 이에 포함됨

**12-22. 외국투자자가 M&A대상기업선정을 할 때에 필요한 수집대상정보는?**

1. 회사의 개황 등의 일반적인 기본 정보
2. 재무 상태, 경영 성과 및 기타 재무적 상황
3. 생산, 판매 및 유통 상황
4. 기술 수준 및 연구개발 동향
5. 조직 형태 및 인사, 노사 관계 상황
6. 중요 계약 및 기타 관리 시스템의 상황 등

## 13. 환 경

## 차 례

13-1. 공장 등을 신설하고자 할 경우 준수해야 하는 환경관련 법령은? .....	229
13-2.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할 대상사업의 종류 및 절차는? .....	229
13-3. 환경영향평가지 주요 평가내용은? .....	230
13-4. 사전 환경성검토 협의를 해야 하는 사업의 범위 및 협의 절차는? .....	231
13-5. 제조업을 신규로 하고자 할 경우 허가(신고)를 받아야 할 배출시설의 종류와 허가권자는? .....	232
13-6. 기존공장을 인수하여 증설할 경우 배출시설허가(신고) 변경 절차는? .....	233
13-7. 같은 사업장에서 일부 공정을 외국인에게 분리 매각하였을 경우 변경절차는? .....	233
13-8. 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배출허용기준은? .....	234
13-9. 상수도로 공급받은 물을 가공하여 타용도의 물로 제조하여 판매 가능한가? .....	234
13-10.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도 폐기물처리사업 등 환경관계법령에 의한 환경산업에 종사할 수 있는가? .....	235
13-11. 폐기물처리업의 종류는? .....	235
13-12. 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할 경우 허가요건 및 허가절차는? .....	236
13-13. 산업활동과 관련하여 dust, chlorine, HCl, dioxine의 배출허용(제한)기준은? .....	236
13-14. 폐타이어를 파쇄하여 공업용 중간제품을 만들고자 하는데 필요한 절차는? .....	236
13-15. 외국인이 대표자로서 지분을 100% 가지고 있는 국내소재 법인이 환경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정책자금 또는 기타 지원자금을 받을 수 있는가? .....	237
13-16. 국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주요 환경 프로젝트에 외국 기업이 참여 하려면 방법은? .....	237
13-17. 환경개선부담금제도는 무엇이며 부과대상은? .....	238
13-18. 환경오염방지시설업 종류 및 등록관청은? .....	239
13-19. 환경친화기업이란 무엇이며 지정되면 혜택은 있는가? .....	239
13-20. 환경마크 지정권자와 대상제품으로 선정된 제품의 종류는? .....	240
13-21.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초과부담금이란 무엇인가? .....	240

13-22. 생태계 보전지역의 지정기준은 무엇인가? .....	241
13-23. 생태계 보전지역 내의 행위제한내용은 무엇인가? .....	242
13-24. 생태계 보전지역 내에서의 금지행위는? .....	242
13-25. 생태계 보전지역 행위제한의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는? .....	243
13-26.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및 보호야생동·식물이란? .....	244
13-27. 멸종위기 및 보호대상 야생동식물을 포획·채취·이식·가공·수출·반출·유통 또는 보관하려면? .....	245
13-28. 자연보존지구 내 행위제한 내용은? .....	245
13-29. 경매처분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오염토양 시정명령을 현 소유자가 받아야 하는가? .....	246
13-30.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은 무엇이며 허가대상시설과 신고대상시설의 구분은? .....	247
13-31.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설치면제 대상시설과 제출서류는? .....	247
13-32. 방지시설업자가 아닌 자가 설계시공할 수 있는 경우는? .....	248
13-33. 휘발성 유기화합물질(VOC) 발생 신고대상 시설은? .....	249
13-34. 청정연료사용 대상지역 및 시설은? .....	249
13-35. 저황유 사용 대상지역 및 시설은? .....	250
13-36. 고체연료 사용금지 대상지역 및 고체연료 사용승인제도는 무엇인가? .....	250
13-37. 폐수배출시설은 무엇이며 허가대상시설과 신고대상시설의 구분은? .....	251
13-38.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해서는 안 되는 지역은? .....	251
13-39.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은? .....	253
13-40.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은? .....	253
13-41. 수질배출부과금제도란 무엇이며 부과대상 오염물질의 종류와 부과내용은? .....	255
13-42. 수질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는 양도시 승계되는가? .....	256
13-43. 폐수처리업 제도란 무엇이며 종류는? .....	256
13-44. 폐수처리시설 없이 위탁 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	256
13-45. 건물신축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경우와 설치면제되는 경우는? .....	257
13-46. 제조·수입·판매 및 사용 금지된 특정 공산품이란? .....	258
13-47. 가축과 축산폐수배출시설의 범위는? .....	258
13-48.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 및 허가의 절차는? .....	259
13-49. 축산폐수의 처리방법은? .....	260

13-50.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종합대책이란?	261
13-51. 상수원보호구역은 무엇이며 근거법령은?	262
13-52.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행위는?	263
13-53. 중수도란 무엇이며 설치·관리자는?	264
13-54. 샘물개발의 허가대상과 유효기간은?	265
13-55. 먹는샘물의 광고 기준은?	265
13-56. 먹는샘물 판매 등의 금지사항은?	266
13-57. 먹는샘물 수입판매업 등록절차는?	266
13-58. 수처리제란 무엇이며 이를 제조 또는 수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267
13-59. 정수기 제조·수입·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절차는?	268
13-60.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제도란 무엇인가?	268
13-61.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제도란 무엇인가?	268
13-62. 폐기물의 재활용 신고 또는 허가대상은?	269
13-63. 재활용 신고와 중간처리업 허가의 구분은?	269
13-64. 국가간 이동 통제대상 폐기물은?	270
13-65. 국가간 이동 통제대상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271
13-66. 폐기물수출입시 수수료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272
13-67. 폐기물부담금 제도란 무엇이며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대상은?	272
13-68. 화학물질 유해성심사제도란 무엇인가?	273
13-69. 유해성심사 면제대상 화학물질은?	273
13-70. 유독물의 수입·수출신고 절차는?	274
13-71. 등록을 해야 하는 유독물 영업의 종류는?	275
13-72. 취급제한 유독물 영업허가의 종류는?	275
13-73. 쓰레기종량제란 무엇인가?	276
13-74. 교토의정서에서 규제하고 있는 온실가스 종류는?	277

### 13-1. 공장 등을 신설하고자 할 경우 준수해야 하는 환경관련 법령은?

- 공장입지 선정시 공장부지가 15만㎡이상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할 대상사업이며, 공장부지가 15만㎡미만이라도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성검토 협의를 받아야 함
- 공장을 건축하기 전에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지역·위치 또는 규모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허가(신고)를 받되, 대기오염물질의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를, 폐수가 배출되는 경우에는 수질환경보전법의 규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를, 소음·진동이 배출되는 경우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규정에 따라 소음·진동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를 각각 받아야 함
-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시공)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 등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또한,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이의 설치를 완료하여 가동하고자 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 규제법의 규정에 따라 허가관청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신고를 해야 하며, 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상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되거나 방지시설 이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가 가능하여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 13-2.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할 대상사업의 종류 및 절차는?

- 환경영향평가는 각종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의 경제성, 기술성 뿐만 아니라 환경적 요인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여 최적의 사업계획안을 모색하는 과정으로서,

-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환경오염 사전예방제도이며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음
  - 골프장 건설 등 사업특성상 자연환경·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큰 사업
  - 자연공원 집단시설지구 등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
  - 매립사업·댐 건설 등 환경영향이 장기적·복합적으로 발생하여 쉽게 예측이 곤란한 사업
  - 택지·공단조성 등 대기·수질오염 등 복합적 환경오염이 발생될 것으로 우려되는 사업
-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상 평가대상사업은 일정규모 이상의 관광단지조성 등 17개 분야 62개 단위사업으로 되어 있음(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별표1 참조)
- 환경영향평가절차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평가서초안을 작성함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의 실시를 환경영향평가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평가 시에는 주민 및 관계행정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후 환경영향평가협의기관(사업승인 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인 경우는 환경부, 그 외는 지방환경관리청)에 협의를 요청하면 됨
-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은 후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사업완료 후에는 지방환경관리청이 사후관리함

### 13-3. 환경영향평가지 주요 평가내용은?

- 환경영향평가지 주요 분야 및 평가내용은
  - 자연환경 (5) : 기상, 지형·지질, 동·식물, 해양환경, 수리·수문
  - 생활환경 (11) : 토지이용, 대기질, 수질,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전파장애, 일조장애, 위락·경관, 위생·공중보건
  - 사회·경제환경 (7) : 인구, 주거, 산업, 공공시설, 교육, 교통, 문화재 등

- 대상사업의 특성,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환경적으로 중요한 일부 항목을 집중 평가토록 하는 중점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사업자가 작성한 평가서는 사업승인기관에 제출되어 다시 사업승인기관에 의하여 환경부(또는 지방환경관서)에 협의요청 하는데, 환경부는 평가서를 협의함에 있어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의 검토의견을 들어 필요시 수정·보완 등의 조치를 한 결과(협의내용)를 사업승인기관에 통보함
-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협의내용의 충실한 이행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사업자는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한 협의내용관리대장 비치,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지정, 사후환경영향 조사 등의 의무를 질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으로 확정된 오염물질의 배출농도에 관한 협의기준을 위반하는 때에는 협의기준초과 부담금이 부과됨
- 한편, 협의내용의 충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승인기관은 사업장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공사중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지방환경관서는 사업자나 사업승인기관에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 13-4. 사전 환경성검토 협의를 해야 하는 사업의 범위 및 협의 절차는?

- 환경영향평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이를 확정·승인하기 전에 사전 환경성검토 협의(이하 '사전 협의'라 함)를 실시하여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 및 환경의 보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수단임
- 사전 협의는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을 승인·인가·허가·면허·결정·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승인 전에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는 것임
- 협의대상, 사업의 범위, 협의시기, 구비서류 등 절차에 관하여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2] 와 [별표3] 에 명시되어 있음

-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용도지역을 변경(예: 준농림지역→준도시지역)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해야 하며 이 경우 국토이용계획권자(건교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국토이용계획변경(안)을 입안하고,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과 사전 협의를 해야 함
- 협의제외 대상
  -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이 되는 사업 중에서 사전협의의 시기가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시기와 같은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
  - 토지의 형질변경, 나무의 벌채 또는 흙·돌 등의 채취를 수반하지 않는 개발사업
  - 자연재해대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응급대책사업
  -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요구된다고 인정하거나 군사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한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
  - 특별히 다른 법령에 의하여 사전 환경성검토가 이루어지는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

**13-5. 제조업을 신규로 하고자 할 경우 허가(신고)를 받아야 할 배출시설의 종류와 허가권자는?**

- 제조업체를 신설할 경우 허가(신고)를 받아야 하는 배출시설의 종류는 일반적으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소음·진동배출시설임
- 허가대상 배출시설의 종류는 특정대기유해물질배출시설,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시설, 특별대책지역에서의 대기오염 또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종합병원·학교 등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이내 지역에서 소음·진동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각각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허가, 폐수배출시설허가, 소음·진동배출시설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외의 배출시설은 신고 대상임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고)권자는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임

### 13-6. 기존공장을 인수하여 증설할 경우 배출시설허가(신고) 변경 절차는?

- 다음과 같이 시설용량을 증설할 경우에는 배출시설변경허가(신고)를 받아야 됨
  - 배출시설 규모가 50/100 (특정대기유해물질 또는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30/100)이상 증설하는 경우
  - 폐수배출량이 1일 700m<sup>3</sup> 이상 증설하는 경우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새로운 오염물질이 발생되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 13-7. 같은 사업장에서 일부 공정을 외국인에게 분리 매각하였을 경우 변경 절차는?

- 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가 개별 공정별로 되어 있거나 사업장내 전체 공정이 함께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를 해야 함. 즉, 매도자는 당초에 받은 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서에 매각한 공정에 설치된 배출시설을 삭제하고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받으면 되고, 매수자는 매수한 공정에 설치된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를 신규로 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를 받으면 되나,
-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폐수배출시설에 부착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매도자, 매수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신설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동수질오염 방지시설을 변경서류를 제출해야 함
- 이러한 경우는 기존에 설치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이므로 함께 사용한다는 협약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배출시설설치변경허가(신고)를 받으면 공동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승인을 받은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음

### 13-8. 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배출허용기준은?

- 공장가동과 관련되는 배출허용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과 악취배출허용기준이 있고,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배출허용기준이 있으며,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소음·진동배출허용기준이 있음
- 대기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8에 규정되어 있는 바, 공정오염물질로 가스상 물질(황산화물, 암모니아 등) 16종, 입자상물질(먼지, 매연 등) 9종이 대기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음. 악취배출허용기준은 측정방법(직접관능법, 공기희석법, 기기분석법)별로 규정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직접관능법의 경우 배출허용기준은 2도 이하임
- 폐수배출허용기준은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5에 생물화학적산소량 즉 BOD 등 28종이 폐수배출허용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음. 동 배출허용기준은 폐수배출량과 지역(환경부장관이 고시)에 따라 차등 적용됨
- 소음·진동배출허용기준은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별표4에 규정되어 있는 바, 지역별, 시간대별로 보정하여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음
- 배출허용기준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고 이를 위반 시 배출부과금이 부과되고 사법기관에 고발되기도 함

### 13-9. 상수도로 공급받은 물을 가공하여 타용도의 물로 제조하여 판매 가능한가?

- 수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수도사업자 이외의 자는 수돗물을 기구 등으로 다시 처리하여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환경부장관은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기구 등의 철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수도사업자로 하여금 수돗물의 공급을 중지하게 할 수 있음
- 따라서, 상수도로 공급받은 물을 가공하여 타 용도의 물로 제조하여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 다만, 상수도로 공급받은 물을 자체 제품생산 등 자기사업용으로 사용할 수는 있음

### 13-10.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도 폐기물처리사업 등 환경관계법령에 의한 환경 산업에 종사할 수 있는가?

- 환경산업 인·허가에 내·외국인 차별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도 환경산업에 종사할 수 있음
- 환경오염방지시설업 등 환경산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환경관계법령(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허가요건(자본금, 기술능력, 실험기기, 실험실 등)을 갖추어 지방환경관리청장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인·허가를 받지 않고 환경산업에 종사할 경우 관계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환경오염방지시설업자로 등록하지 않아도 공공기관 또는 등록된 방지시설업자가 발주하는 방지시설의 설계 및 각종 기자재를 방지시설업자에게 공급할 수 있음

### 13-11. 폐기물처리업의 종류는?

- 폐기물을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 및 감염성폐기물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갖추어야 될 시설장비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을 다음과 같이 세분하고 있음
- 폐기물수집·운반업 :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
- 폐기물중간처리업 : 폐기물중간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중화·파쇄·고형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중간처리(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를 제외)하는 영업
- 폐기물최종처리업 : 폐기물최종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 등(해역배출을 제외)의 방법에 의하여 최종처리 하는 영업

- 폐기물종합처리업 :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를 함께 하는 영업

**13-12. 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할 경우 허가요건 및 허가절차는?**

- 지정폐기물처리업 허가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그 밖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는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우선 「폐기물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검토 받아야 하며,
- 사업계획서 검토결과 적합통보를 받으면,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6]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장비·기술능력을 갖추어, 허가신청서를 해당 관서에 제출하면 됨

**13-13. 산업활동과 관련하여 dust, chlorine, HCl, dioxine의 배출허용(제한)기준은?**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8]의 배출허용기준에 규정되어 있음

**13-14 폐타이어를 파쇄하여 공업용 중간제품을 만들고자 하는데 필요한 절차는?**

-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이를 소각·중화·파쇄·고형화하는 등의 시설을 갖추고 중간처리를 하는 영업(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는 제외)을 하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함
- 그러나,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인증을 받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를 제조하거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재활용제품(지정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 제외)을 제조하거나 폐지, 고철, 폐용기류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폐축전기, 폐변압기, 폐타이어, 폐가전제품

또는 폐드럼의 경우는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한함)는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하면 됨

**13-15. 외국인이 대표자로서 지분을 100% 가지고 있는 국내 소재법인이 환경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정책자금 또는 기타 지원자금을 받을 수 있는지?**

- 환경부에서는 환경산업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재원을 확보하여 장기 저리로 용자·지원해 주고 있음
- 이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환경과 관련된 특허 혹은 인·허가 등 소정의 자격요건만 구비하면 자격에 대하여는 내국법인이든 외국인투자법인이든 그 차별을 두지 않음
- 환경기술 개발자금·산업화 자금 등 환경개선자금 또는 재활용 시설자금·기술 개발자금·경영안정 자금 등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중 자격요건에 따라 심사를 거쳐 용자·지원해 주고 있음

**13-16. 국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주요 환경 프로젝트에 외국 기업이 참여하려면 방법은?**

- 외국기업이 직접 대한민국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주요 환경프로젝트에 참여하려면 우선 영위하고자 하는 환경프로젝트의 관리주체인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직접 단독법인 즉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하여 참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음
-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IK, KOTRA 국내·해외투자거점무역관, 외국환은행 본·지점 또는 외국은행 한국 내 지점 등에 외국인투자신고를 마친 다음, 투자자금으로 5,000만원 이상의 외화를 입금하신 후 설립하면 됨

- 그 다음 절차로서 영위하고자 하는 외국기업이 직접 대한민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주요환경프로젝트 또는 사업에 외국인투자법인으로서 국내기업과 같이 소정의 절차에 따라 참여할 수 있음
- 소관 관청에서는 타당성 조사, 공개경쟁입찰 등 필요적 절차를 거쳐 민간투자대상 사업으로 선정·고시되면 위탁계약 등을 직접 체결하고 상호 약정된 내용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면 됨. 이 때, 고도기술수반사업 또는 산업지원서비스업인 경우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13-17. 환경개선부담금제도는 무엇이며 부과대상은?

- ‘환경개선부담금’이란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을 말함
- 개선부담금제도는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의거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 제도의 주요특징으로는
  - 『유통·소비부문』을 주요대상으로 함
  - 오염물질배출성상이 복잡하고 다양한 생산·제조부분에 대해서는 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직접규제방식에 의해 관리
  - 『오염원인자부담원칙』 적용
  - 환경개선사업추진에 따른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오염원인자로부터 투자재원을 징수
  - 『총량부과방식』 적용
  - 배출농도와 배출량을 감안하여 오염물질배출총량에 따라 부담금 산정

### 13-18. 환경오염방지시설업 종류 및 등록관청은?

-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및 소음·진동의 배출 및 발생을 방지, 저감 또는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에 관한 영업을 방지시설업이라 함
- 분야에 따라 대기오염 방지시설업, 수질오염 방지시설업, 소음·진동 방지시설업으로 나누어짐
- 방지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능력을 갖추어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등록해야 함

### 13-19. 환경친화기업이란 무엇이며 지정되면 혜택은 있는가?

- 오염물질의 현저한 저감, 자원 및 에너지의 절감, 제품의 환경성 개선, 기타 환경 보호활동 등을 통하여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하는 사업장으로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장을 말함
-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되면,
  -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 및 변경 허가를 신고로 대체
  - 대기환경보전법 제49조 및 수질환경보전법 제49조에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대한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 시설, 장비 등의 검사면제
  - 중소기업의 경우 방지시설설치자금 융자 신청 시 우선 순위 적용
  - 각종 표창 시 우선 순위 적용

### 13-20. 환경마크 지정권자와 대상제품으로 선정된 제품의 종류는?

- 같은 종류의 다른 제품에 비해 생산, 소비, 폐기과정에서 환경오염을 덜 시키거나 에너지 및 자원절약과 관련 있는 저공해상품에 공인기관이 일정한 마크를 부여하여 다른 상품과 구별하는 환경친화적 상품 인증제도로서,
- 현재 우리나라는 환경마크협회에서 인증하고 있는데 우선 환경마크 부여대상 상품군을 지정하고 상품군별로 부여기준을 설정하게 됨
- 환경오염의 개선 및 자원절약 효과 등의 증진이 기대되는 제품으로서 환경마크 협회로부터 환경마크사용 대상제품으로 선정된 제품을 말함

### 13-21.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초과부담금이란 무엇인가?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서 확정된 평가협의내용에 오염물질의 배출농도에 관한 기준(협의기준)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시설의 운영자에게 협의기준 초과부담금을 부과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을 확보하고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임
- 부과대상시설 및 오염물질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 황산화물, 암모니아, 먼지 등 10종
  - 폐수배출시설 : 유기물질, 부유물질, 카드뮴 및 그 화합물, 시안화합물 등 17종
  - 폐수종말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 유기물질, 부유물질
  - 오수정화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 유기물질, 부유물질

## ○ 부과요건

- 환경영향평가협의 시 당해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오염물질배출로 인하여 수질환경보전법 등 개별 환경법령에서 규정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는 주변지역의 환경기준달성이 어려운 경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으로 오염물질의 엄격한 배출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초과부담금 부과
- 초과부담금 부과 시 협의기준의 초과정도, 배출오염물질의 양, 종류, 배출기간 등에 의하여 부과금액을 산출

<b>13-22. 생태계 보전지역의 지정기준은 무엇인가?</b>
-------------------------------------

## ○ 생태계보전지역 지정기준

- 생태·자연도에 의한 1등급 지역
-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학술적 연구가치가 큰 지역
- 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자연경관의 유지를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또는 보호야생 동·식물의 서식지·도래지 등으로서 보전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 각종의 다양한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생태계의 표본지역

### 13-23. 생태계 보전지역 내의 행위제한내용은 무엇인가?

- 생태계보전지역 안에서는 자연환경보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허가없이 다음 행위를 할 수 없음
  - 생태계보전지역 안에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어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야생 동·식물을 포획·채취·이식·훼손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 또는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화약류·덫·올무·그물·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 등을 살포·주입하는 행위
  -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증축(기존 건축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함) 및 토지의 형질변경
  - 하천·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 토석의 채취
  - 수면의 매립·간척
  - 불을 놓는 행위

### 13-24. 생태계 보전지역 내에서의 금지행위는?

-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 또는 유독물을 버리는 행위
- 휘발유·등유 등 인화점이 70°C미만인 액체,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기체연료를 소지하거나 지정하는 장소 외에서 취사 또는 야영하는 행위
-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안내판, 기타 표식물을 오손 또는 훼손하거나, 함부로 이전하는 행위

- 소리·빛·연기·악취 등을 내어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
- 야생 동·식물의 둥지·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
- 풀, 입목·죽의 채취 및 벌채. 다만, 문화재 및 그 보호구역에서는 문화재보호법규정에 따름
- 가축의 방목
- 동물의 포획 또는 알의 채취. 다만, 문화재 및 그 보호구역에서는 문화재보호법규정에 따름
- 동물의 방사. 다만, 조난된 동물을 구조·치료하여 동일지역에 방사하는 경우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야생 동·식물의 복원을 위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 13-25. 생태계 보전지역 행위제한의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는?

- 군사목적 상 필요한 행위,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거나 원상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 생태계보전지역 또는 그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과 당해 토지 및 공유수면의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인의 행위로서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농사, 어로행위, 수산물 채취행위, 버섯·산나물 등의 채취행위 및 이에 준하는 행위
-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학술조사
-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생태계의 보전·복원을 위한 행위
-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 의한 조수의 서식상황 조사
- 기타 생태계보전지역의 보전에 특히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행위

- 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지역의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음
-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격에 의함

### 13-26.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및 보호야생동·식물이란?

-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과 보호야생 동·식물을 포획·채취·이식·가공·수출·반출·유통·보관(가공·수출·반출·유통·보관의 경우 죽은 동·식물을 포함)·훼손하거나 고사시켜서는 안되며,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화약류·덫·올무·그물·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 등을 살포 또는 주입해서는 안됨
-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이라 함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인한 주된 서식지·도래지의 감소 및 서식환경의 악화 등에 따라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되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 동·식물을 말함
- ‘보호야생 동·식물’이라 함은 학술적 가치가 높은 야생 동·식물, 국제적으로 보호 가치가 높은 야생 동·식물, 우리나라의 고유한 야생 동·식물 또는 개체수가 감소되고 있는 야생 동·식물을 말함
- 현재 포유류 (붉은박쥐, 늑대, 여우, 표범, 수달 등), 조류(노랑부리백로, 황새, 매, 두루미, 크낙새 등) 양서·파충류(구렁이, 맹꽁이, 금개구리, 남생이, 까치살모사) 어류 (감돌고기, 흰수마자, 미호종개, 꼬치동자개, 통사리 등), 곤충류(장수하늘소, 두점박이사슴벌레, 수염풍뎅이, 상제나비, 산굴뚝나비 등), 무척추동물(나팔고둥, 귀이빨대칭이, 두드럭조개, 별혹산호, 측맷시산호 등), 식물 (한란, 나도풍란, 광릉요강꽃, 매화마름, 고란초 등) 등이 보호야생 동·식물로 지정되어 있음

### 13-27. 멸종위기 및 보호대상 야생동식물을 포획·채취·이식·가공·수출·반출·유통 또는 보관하려면?

-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및 보호야생 동·식물을 포획·채취·이식·가공·수출·반출·유통 또는 보관할 수 있음
- 허가 대상 (환경관리관서의 장에게 허가 신청 )
  -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원·동물원·식물원·자연휴양림 또는 박물관 등에서의 관람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인체·가축 또는 농작물의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종의 번식을 위하여 증식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토지수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또는 보호야생 동·식물을 이동 또는 이식하여 보전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 13-28. 자연보존지구 내 행위제한 내용은?

- 공원의 효율적인 보호와 이용을 도모하게 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도지사 또는 군수(공원관리청)가 공원 내 용도지구를 공원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으로 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취락지구, 집단시설 등 4개 지구로 세분하여 이용 목적에 따라 차등관리하고 있음
- 자연보존지구는 자연보존상태가 원시성을 가지고 있거나 보존할 동·식물 또는 천연기념물 등이 있거나 자연풍경이 특히 수려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하며, 동 지역에서는 다음의 행위를 허용할 수 있음

- 학술연구 또는 자연보호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 최소한의 공원시설의 설치 및 사업
- 군사시설 통신시설 항로표지시설 수원보호시설 등으로서 이 지역이 아니고는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시설의 설치
- 관할 도지사를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의 추천이 있는 사찰의 복원과, 사찰경내지에서의 불사를 위한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 문화관광부장관이 종교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의 시설물 중 공원 지정 이전에 건립한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환경부령이 정하는 증축 개축 재축 복원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 자연보존상태의 원시성이나 수려한 자연풍경을 현저히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산림법에 의한 조림 육림 및 임도의 설치

**13-29. 경매처분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오염토양 시정명령을 현 소유자가 받아야 하는지?**

- 시정조치명령이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양수가 이루어져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동 시정조치명령이 오염토양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므로 시정조치명령의 효력은 유효하며 이는 승계됨
- 다만, 경락 등 특수한 사정에 의해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정조치명령은 승계되지 않으며,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전 소유자는 토양환경보전법 제3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벌칙이 적용됨
- 그러나, 동 시설은 이미 토양오염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다음에 도래하는 토양오염 검사(정기검사 등)에서도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현 소유자가 시정조치명령을 받아, 오염토양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함. 따라서 전 소유자와 조속히 합의하여 오염토양개선 등 시정조치명령이 이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13-30.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은 무엇이며 허가대상시설과 신고대상시설의 구분은?

-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 입자상물질과 악취물질로서 환경부령, 즉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에 52종이 지정되어 있으며, 이중 특히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25종의 물질을 특정 대기유해물질로 지정하여 대기오염물질에 비해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 대기오염물질을 대기 중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기타 물체로서 금속의 용융 제련 또는 열처리시설 등 14개 시설로 대별하고 업종 시설의 종류에 따라 시설용적, 동력 또는 연료사용량 등을 기준으로 그 최소 규모를 정하고 있음
-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동 시설의 설치 전에 지방환경관리청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함

#### - 허가대상시설

-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하는 시설
- 특별대책지역 안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다만,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 하는 5종 사업장은 제외

#### - 신고대상시설

- 허가대상시설 외의 시설

### 13-31.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설치면제 대상시설과 제출서류는?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허가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변경신고를 한 자는 당해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하여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함.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 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상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 기타 방지시설의 설치 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가 가능한 경우
-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제출서류
  - 당해 배출시설의 기능 공정 사용원료(부원료를 포함한다) 및 연료의 특성에 관한 설명자료
  -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문헌 기타 시험분석자료
-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자의 준수사항
  - 배출시설의 공정을 변경하거나 사용하는 원료 또는 연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고,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함

**13-32. 방지시설업자가 아닌 자가 설계 시공할 수 있는 경우는?**

-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 외의 자가 설계 시공할 수 있는 방지시설은 방지시설의 공정을 변경하지 않고 다음 사항은 변경이 있는 경우
  - 방지시설에 부대되는 기계·기구류를 신설·대체 또는 개선하는 경우
  - 시설의 용량 또는 용적을 허가 또는 신고 당시보다 100분의 30이내로 증설·대체 또는 개선하는 경우. 다만 2회 이상의 증설·대체 또는 개선으로 최초허가 또는 신고 당시보다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 13-33. 휘발성 유기화합물질(VOC) 발생 신고대상 시설은?

- 휘발성 유기화합물질(Volatile Organic Compounds)이란 탄화수소류 중 석유화학제품·유기용제 기타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물질
- 신고대상 배출시설
  -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제조업
  - 저유소
  - 주유소
  - 세탁시설
  - 유기용제 및 페인트제조업
  - 선박 및 대형철구조물 제조업
  - 자동차 제조업
  - 기타(세정, 도장 등)제조업
  - 폐기물보관 처리시설
  - 자동차 정비시설

### 13-34. 청정연료사용 대상지역 및 시설은?

- 연료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및 시설에 대하여는 청정연료 외의 연료에 대한 사용금지를 명할 수 있음
- 청정연료 사용대상지역 및 시설은 '청정연료등의사용에관한고시'에 규정되어 있음

### 13-35. 저황유 사용 대상지역 및 시설은?

- 대기중의 아황산가스 및 먼지오염도 저감을 위해 산업체 등에 저황유 사용을 의무화함
-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부장관은 연료용 유류의 황함유기준을 정하고(황함유기준이 정해진 연료용 유류를 '저황유'라 함), 그 공급 및 사용시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환경기준의 유지정도 및 지역적 특성 등을 참작하여 고시함
- 다만, 저황유 사용지역에서 기타 저황유의 연료를 사용하더라도 배출되는 황산화물이 당해시설에서 저황유를 사용할 때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항상 배출될 수 있을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0조의2의 규정에 의거, 관할 시·도지사에게 저황유 외 연료사용승인 신청을 하여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그 승인을 득한 연료(고황유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저유황 외 연료사용승인제도도 있음

### 13-36. 고체연료 사용금지 대상지역 및 고체연료 사용승인제도는 무엇인가?

- 대기환경보전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연료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석탄류, 코크스, 기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폐합성수지 등 가연성 폐기물 또는 이를 가공처리한 연료를 사용할 수 없음
- 고체연료 사용금지 대상지역은 '청정연료등의사용에관한고시'에 규정되어 있음
- 고체연료 사용금지지역 내에서 고체연료를 사용하더라도 당해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될 수 있을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의3의 규정에 의거, 관할 시·도지사 등에게 고체연료사용승인 신청을 하여 승인을 득한 고체연료를 사용할 수 있음

### 13-37. 폐수배출시설은 무엇이며 허가대상시설과 신고대상시설의 구분은?

-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동 시설의 설치하기 전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 환경관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함
- 허가대상시설
  -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하는 시설
  - 특별대책지역,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및 그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10km이내의 지역,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 중 상수원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취수시설로부터 15km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 ※ 다만,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로서 위탁받은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이 허가대상 지역 또는 구역 밖에 있는 경우에는 신고
- 신고대상시설 : 허가대상시설 외의 시설

### 13-38.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해서는 안 되는 지역은?

-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경우
- 특별대책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및 그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 지역,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 중 상수원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에서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동·식물의 생육에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
- 폐수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
  - 팔당호·대청호 특별대책지역
  - 물금·매리 주변지역
  - 임진강 유역

○ 다른 법률에 의한 경우

- 토지이용과건축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행위제한 규정에 의하여 일정규모이상 또는 특정종류의 시설에 대하여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음. 따라서 허가기관은 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와 관련한 입지제한 건축물의 건축제한 여부 등 수질환경보전법령 외의 다른 법령에의 저촉여부를 해당부서(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며, 타법령 검토의견이 상충될 때에는 관계법령을 운영하는 중앙부서의 유권 해석을 받아 처리해야 하며, 대표적인 검토대상 관계법규는 다음과 같음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18조의2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0조 및 동법시행령26,27조
  
- 국토이용관리법제15조 및 동법시행령제13조 내지 제19조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특별조치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4조
  
-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6조
  
- 도시계획법제4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19조의4, 제20조
  
- 건축법 제8조,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 내지 제81조
  
-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3조 및 동법시행령제3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 학교보건법 제6조
  
- 수도권법시행령 제5조등
  
- 농공단지 개발시책통합지침, 지자체 조례등 기타 관계법규

### 13-39.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은?

- 배출시설에 발생하는 폐수량이 1일 20m<sup>3</sup>이하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 또는 광유류가 포함되지 않은 폐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허가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 다만, 두부제조시설에서 완성된 두부제품을 냉각·침지한 폐수는 폐수량으로 계산하지 않음
-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량이 1일 20m<sup>3</sup>이하로서 원폐수의 농도가 항상 당해 배출시설에서 폐수를 방류하는 하천의 환경기준 이내로 유지될 수 있다고 허가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
-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량이 1일 10m<sup>3</sup>이하로서 원폐수 중의 오염물질항목이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항목에 국한되고 원폐수의 농도가 항상 동 방류수 수질기준이하로 배출된다고 허가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
-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중금속이 포함된 폐수가 1일 0.01m<sup>3</sup>미만 발생하거나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중금속이 포함되지 아니한 폐수가 1일 0.1m<sup>3</sup>미만 발생하는 시설의 경우. 다만, 출판·인쇄시설과 자동식 사진처리 및 X-Ray 시설을 제외함
- 용수를 원료·부원료 또는 세척수로 사용하지 않고 공정 중에서 폐수가 발생되지 않는 경우
- 제1호 내지 제23호의 배출시설 중 타 영업소에 생산제품을 판매하지 않고 자체 조리·판매하는 제과점·방앗간 등의 경우로서 허가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

### 13-40.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은?

- 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 상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

고시하는 관계전문기관에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 기타 방지사설의 설치 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가 가능한 경우
- 방지사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 제출서류
  - 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 상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어 방지사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
    - 당해 배출시설의 기능 공정 사용원료(부원료를 포함한다) 및 연료의 특성에 관한 설명자료
    -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문헌 기타 시험분석자료
  -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자에게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 위탁처리할 폐수의 종류·수량 및 오염물질별 농도 예측서
    - 위탁처리할 폐수의 성상별 저장시설 또는 고정식 용기의 설치계획 및 그 도면
    -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자와의 위탁처리계약서
  - 방지사설 설치 외의 방법으로 폐수를 자가처리하는 경우
    -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배출시설에 사용하는 물과 액체물질의 양 및 재이용량에 관한 서류 및 재이용공정도
    - 폐수를 재이용 후 배출하는 경우에는 배출주기별 농도·양 및 처리방법에 관한 서류와 폐수처리업자와의 위탁계약서
  - 기타 처리방법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문헌 등 관련자료

### 13-41. 수질배출부과금제도는란 무엇이며 부과대상 오염물질의 종류와 부과내용은?

- 수질배출부과금제도는 오염물질 배출자에 대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줌으로써 오염물질 배출을 스스로 억제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며, 이는 환경자원을 공공재산으로 규정하고 어떠한 개인도 경자원의 사용과 이에 따른 환경질의 오염에 대하여는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한다는 오염자 부담원칙을 전제로 하고 있음
- 즉, 환경자원사용에 따른 오염비용을 사용자가 지불하게 함으로써 수질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로서 그 법적근거는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임
- 수질 배출부과금 산정방법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오염물질량에 대해 부과하는 초과부과금과, 배출허용기준이내 이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된 오염물질량에 대하여 부과하는 기본부과금으로 구분함
  - 초과부과 :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초과한 오염물질량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며
  - 기본부과 : 배출허용기준이내이거나 폐수종말처리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할 때 초과된 오염물질량에 부과하는 것임
- 부과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 초과 부과금의 부과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 유기물질(BOD, COD), 부유물질(SS), 카드뮴 및 그 화합물, 시안화합물, 유기인화합물, 납 및 그 화합물, 6가크롬화합물, 비소 및 그 화합물, 수은 및 그 화합물, 포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 구리 및 그 화합물, 크롬 및 그 화합물, 페놀류, 트리크로로에틸렌, 망간 및 그 화합물, 아연 및 그 화합물 등 17종임
  - 기본부과금의 부과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 유기물질(BOD, COD), 부유물질(SS)등 2종임

### 13-42. 수질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는 양도시 승계되는가?

- 수질환경보전법 제11조의2 규정에 의거 사업자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양도 또는 상속하거나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허가·변경허가·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자가 승계함

### 13-43. 폐수처리업 제도란 무엇이며 종류는?

- 우리나라의 산업폐수배출 특성은 사진처리시설, 도금시설 등 소규모 사업장이 전체 폐수배출사업장의 90%에 해당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나, 소량의 폐수를 배출하여 규모면에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음
-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배출되는 폐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량의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장은 자체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전문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는 폐수처리업제도를 운영함
- 폐수처리업의 종류
  - 폐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수탁한 폐수를 재생·이용 외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폐수 수탁처리업과
  - 수탁된 폐수를 제품의 원료·재료 등으로 재생·이용하는 폐수재이용업으로 구분하고 있음

### 13-44. 폐수처리시설 없이 위탁 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 방지시설 중 물리·화학적처리시설에 의하여 처리가 가능한 폐수로서 1일 20m<sup>3</sup> 이내로 배출되는 폐수. 다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에서 고정된 관망을 이용하여 이송처리하는 경우에는 폐수량의 제한을 받지 않음

- 사업장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그 성상이 달라 방지지설에 유입될 경우 적정처리가 어려운 폐수로서 1일 20m<sup>3</sup> 이내로 배출되는 폐수
  - 방지지설을 설치하지 않은 배출시설에서 부득이하게 배출하여야 하는 폐수
  - 해양오염방지법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로서 지정된 폐기물배출해역에 배출할 수 있는 폐수
  - 보일러 기타 생산관련 시설이나 해양오염방지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4호 규정에 의한 지정 폐기물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 방지지설의 개선 또는 보수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수로서 시·도지사 등과 사전 협의된 기간동안만 배출되는 폐수
  - 기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폐수

#### 13-45. 건물신축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경우와 설치면제되는 경우는?

- 설치 대상
  -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등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되,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해야 하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함
  - 오수가 발생하는 모든 건물에 대하여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다음 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건물 등에 대하여는 2002. 1. 1부터 시행

- 특별대책지역, 호소수질보전구역, 상수 취수시설로부터 유하거리 4킬로미터 이내의 상류지역과 상수원보호구역,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 지하수보전구역
- 하천·호소·바다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인 지역의 식품접객업·숙박업·목욕장업의 영업을 하는 건물 등

○ 면제 대상

-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 중에 있거나 설치예정인 지역에서 오수를 동 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동 시설로의 유입·처리시점이 건물 기타 시설물의 준공예정시점 이전인 경우에 한함)

**13-46. 제조·수입·판매 및 사용 금지된 특정 공산품이란?**

- 수세식화장실이 설치되지 아니한 건물 등으로서 1일 오수발생량이 1세제곱미터 이하인 건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오수의 수질을 현저히 악화시킨다고 판단되는 특정공산품에 대하여는 그 제조·수입·판매나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음
- 현재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일명 '디스포자')에 대하여는 제조·수입·판매 및 사용 금지

**13-47. 가축과 축산폐수배출시설의 범위는?**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의 규제를 받는 가축의 범위 : 소, 돼지, 젓소, 말, 닭, 오리, 양 및 사슴
- 배출원 단위 : 가축 1두당 1일 배출하는 축산폐수량(가축분뇨와 축사 등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청소한 물이 섞인 것)

- 돼지 : 8.6 l /일,
- 소·말 : 14.6 l /일
- 젓소 : 45.6 l /일

○ 축산폐수배출시설의 범위

-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축산폐수가 배출되는 시설 및 장소  
: 축사, 먹이방, 착유실, 분만실 및 운동장

**13-48.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 및 허가의 절차는?**

- 일정규모 이상의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함
- 허가 및 신고대상 배출시설의 규모(m<sup>2</sup>)

배출시설	허가대상	신고대상
돼지 사육시설	면적1,000(500)이상	면적 50 이상 1,000 미만
소·말 사육시설	면적900(450) 이상	면적 100 이상 900(450)미만
젓소 사육시설	축사면적 900(450)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2,700 (1,350)이상	축사면적 100이상 900(45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300 이상2,700(1,350) 미만
닭·오리·양사육시설	-	면적 150 이상
사슴사육시설	-	면적 500 이상

※ ( )내는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 오분법시행령 제2조의2제1호 내지 제7호의 각목에 해당되는 지역 또는 구역에 해당되는 면적

**13-49. 축산폐수의 처리방법은?**

-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당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함
  - 정화하여 방류하는 방법 : 호기성 또는 혐기성 생물학적 방법, 물리·화학적 방법 또는 이들을 조합한 방법의 시설을 설치하여 축산폐수를 방류수수질기준 이하로 처리하여 방류하는 방법
  - 퇴비화 방법 : 톱밥발효시설 등 축산폐수를 수분조절재와 혼합한 후 퇴비화하여 재활용하는 방법
  - 저장액비화 방법 : 축산폐수를 6개월이상 부숙시켜 액비화하여 초지 또는 농경지에 환원하는 방법
- ※ 처리시설을 저장액비화 방법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반드시 일정면적 이상의 초지 또는 농경지를 확보해야 함

〈액비살포에 필요한 초지 또는 농경지 면적 : m<sup>2</sup>/두〉

구 분	초 지	논	밭
소·말	520 이상	990 이상	640 이상
젖 소	1,610 이상	3,080 이상	1,990 이상
돼 지	340 이상	640 이상	420 이상

### 13-50.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종합대책이란?

- 오염원의 특별관리
  - 폐수배출시설 : 특정유해물질 배출시설, 1일 500m<sup>3</sup>이상의 폐수배출시설, 폐기물 재생 및 매립시설 신규 입지를 허용하지 않음
  - 오수배출시설 : 건축연면적 800m<sup>2</sup>이상 건물 및 기타시설물(창고 및 바이오수배출시설은 제외), 건축연면적 400m<sup>2</sup>이상의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조리판매업의 I 권역에는 입지를 허용하지 않음
  - 축산폐수배출시설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의 규제를 받는 축산 폐수배출시설의 I 권역 신규입지는 허용하지 않음
  - 골프장 : 골프장의 신규입지는 골프장의입지기준및환경보전등에관한규정에 의함
  - 내수면양식장 : 내수면양식장의 신규입지 및 면허기간 연장은 허용하지 않음
  - 집단묘지 :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설묘지와 동법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경우의 사설 묘지의 신규입지는 허용하지 않음
- 국토이용계획상의 용도지역 변경억제
  - 자연환경보전지역, 산림보전지역, 경지지역을 공업지역과 개발촉진지역 중의 공업 용지 지구로의 변경은 제한하고, 관광휴양시설과 개발촉진지역 중의 시설용지지구로의 변경은 선별 허용함
- 기존 특정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이전유도
  - 기존 폐수배출시설 중 특정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이전은 공업용지의 확보 등에 관하여 관계부처와 협의 후 단계적으로 시행함

- 총량규제의 실시
  - 팔당호 및 대청호의 수질이 상수원수로서 부적합하게 될 우려가 있을 경우 수질환경보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총량규제를 실시하기로 함
  - 환경부장관은 팔당호 및 대청호 주변 오염물질의 총량규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실시방안을 마련토록 함
- 질소·인의 규제
  - 환경부장관은 호소의 부영양화 예방을 위하여 특별대책지역 내 규제대상 시설의 질소·인 규제방안을 마련함

**13-51. 상수원보호구역은 무엇이며 근거법령은?**

- 상수원보호구역이란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상수원의 보호를 위하여 관할 시·도지사가 지정한 곳을 말함
- 근거 법령
  - 수도법 제5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 수도법 제6조(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
  - 수도법시행령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 수도법시행령 제8조(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 수도법시행령 제9조(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기준)
  - 수도법시행령 제10조(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
  - 수도법시행령 제11조(상수원보호구역 관리의 특례)

- 상수원관리규칙 제10조(행위허가 신청 등)
- 상수원관리규칙 제10조의2(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의 어로행위)
- 상수원관리규칙 제11조(건축물 등의 종류 및 규모)
-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건축물 등의 용도변경)

### 13-52.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행위는?

-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 가축을 놓아기르는 행위
  - 수영, 목욕, 세탁 또는 뱃놀이를 하는 행위
  - 행락, 야영 또는 야외취사행위
  -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환경부령이 정하는 어로행위 제외)
-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의 제한행위
  - < 허가를 받아야 되는 행위 >
    -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변경 또는 제거
    - 죽목의 재배 또는 벌채
  - < 신고를 하여야 되는 행위 >
    - 상하수도시설, 환경오염방지시설 및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시설을 제외한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제거
    - 주택지 안에서의 나무의 재배·벌채
    - 농업개량시설의 보수 또는 농지개량 등을 위한 복토 등 토지의 형질변경

- 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손괴된 건축물 및 공작물의 원상복구

< 금지 또는 제한행위 위반 시 제재내용 >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수도법 제60조제1호)

### 13-53. 중수도란 무엇이며 설치·관리자는?

- '중수도'라 함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함
-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중수도를 설치·관리하도록 권장할 수 있음
- 중수도의 설치·관리자는 다음과 같음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장으로서 1일 물사용량이 1천톤 이상인 공장의 소유자
  - 공중위생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규정에 의한 숙박업 또는 목용업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1일 물사용량이 500톤 이상인 시설의 소유자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사업주체 또는 관리주체
  - 공중위생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제3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시설로서 1일 물사용량이 500톤 이상인 시설의 소유자
  -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건축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시설로서 1일 물사용량이 500톤 이상인 시설의 소유자
  - 기타 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 13-54. 샘물개발의 허가대상과 유효기간은?

- 샘물개발의 허가대상
  - 먹는샘물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
  - 1일 취수능력 300톤 이상의 샘물(원수의 일부를 청량음료·주류 등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을 개발하고자 하는 자
- 허가의 유효기간
  - 먹는샘물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함
  - 샘물개발허가를 받은 자의 유효기간 연장은 매차의 연장기간을 5년으로 함(먹는물 관리법 제9조의4)
  - 샘물개발허가의 유효기간 연장허가는 샘물개발허가의 유효기간 만료 3월 이전에 신청해야 함(동법시행규칙제4조의4)

### 13-55. 먹는샘물의 광고 기준은?

- 규정에 의한 허위 또는 과대의 표시·광고의 범위는 용기·포장·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곡·영상·인쇄물·간판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먹는샘물 그 용기·포장의 명칭·제조방법·품질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행위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 등록된 사항 또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 제품 중에 함유된 성분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 '최고', '특수' 등의 표현이나 '특수제법' 등의 모호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 13-56. 먹는샘물 판매 등의 금지사항은?

-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 누구든지 먹는 데 제공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저장·운반 또는 진열을 하지 못함
- 먹는샘물 외의 물이나 그 물을 용기에 넣은 것
-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은 먹는샘물이나 그 먹는샘물을 용기에 넣은 것
-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먹는샘물이나 그 먹는샘물을 용기에 넣은 것

### 13-57. 먹는샘물 수입판매업 등록절차는?

- 먹는샘물의 수입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
- 사업계획서(수입선을 포함한다)
- 보관시설 내역서
- 원수가 법 제3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상태의 깨끗한 물인지를 입증하는 서류

- 먹는샘물 또는 그 용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먹는물관리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별지 11호 서식의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
  - 수입 관련서류
  - 수질검사서 사본
  - 제조일자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제조자가 제품의 제조일자를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
  - 원수가 법 제3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상태의 깨끗한 물인지를 입증하는 서류

### 13-58. 수처리제란 무엇이며 이를 제조 또는 수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수처리제’라 함은 자연상태의 물을 정수 또는 소독하거나 먹는물공급시설의 산화 방지 등을 위하여 첨가하는 제제를 말하며
- 수처리제의 기준 및 규격, 표시기준, 제조업등록, 자가품질 검사 등에 관하여는 먹는물 관리법에서 정하고 있음
- 수처리제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고
- 먹는샘물·수처리제 또는 그 용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함

### 13-59. 정수기 제조·수입·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절차는?

- '정수기'라 함은 물리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과정을 거치거나 이러한 과정을 거쳐 먹는물을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하는 기구임
- 정수기 제조·수입·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함

### 13-60.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제도란 무엇인가?

- 공공하수도 배수구역내에서 일정량 이상의 하수를 배제하거나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신축 또는 개축이 필요하게 된 경우, 공공하수도를 훼손시킬 행위로 인하여 공공 하수도의 수선 또는 유지가 필요한 경우,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함에 따라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신·증설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 그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행위자 등에게 부담시키는 제도

### 13-61.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제도란 무엇인가?

-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제'란 폐기물관리법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의 방치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써, 폐기물처리업자들은
  - 폐기물처리공제조합을 결성하여 조합에서 조합원의 방치폐기물을 처리토록 하는 방안
  -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으로 방치폐기물을 처리토록 하는 방안

- 방치폐기물 이행보증금을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예치하는 방안중 한 가지 방안을 선택하여 처리업소의 부도나 폐업 등으로 발생될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을 사전에 보증토록 하는 제도임

### 13-62. 폐기물의 재활용 신고 또는 허가대상은?

- 폐기물의 재활용신고나 중간처리업허가는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만 해당됨
- 따라서 다음의 경우는 그 대상이 아님
  - 폐기물이 아니거나 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이 아니므로 대상이 아님
  - 사업장폐기물이라도 수출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대상이 아님
    - 폐기물의국가간이동에관한법률 제6조 규정에 의거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임
    - 또한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운반, 선별, 포장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집·운반업이나 중간처리업(재활용 전문)에 해당되므로 대상이 아님

### 13-63. 재활용 신고와 중간처리업 허가의 구분은?

- 재활용 신고를 할 수 있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거 사업장 폐기물을 다음과 같이 재활용하는 자만 가능함
  -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규격 인증 제품,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 및 부산물비료,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제조하는 자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별표1에서 규정한 재활용제품을 제조

하는 자(지정폐기물 재활용자 제외)

- 폐지, 고철, 폐용기류(예치금대상품목에 한함), 폐축전지 및 폐변압기(손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폐타이어, 폐가전제품, 폐드럼(내용물이 없을 것)을 재활용하거나 수집·운반하는 자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1의2에서 규정하는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
-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우가 아닌 재활용은 중간처리업(재활용 전문)허가를 받아야 함
- 재활용신고자는 방치폐기물처리대상이 아니나, 중간처리업 허가자는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보험가입 또는 폐기물처리공제조합의 분담금 납부대상임
- 기타 사항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별표1[재활용 제품]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1의2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을 참고

### 13-64. 국가간 이동 통제대상 폐기물은?

-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을 통제하고 있으며
- 국가간 이동 통제대상 폐기물은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및 「OECD의 재생목적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통제에 관한 이사회결정」에서 분류한 폐기물체계를 수용하여 적색폐기물과 황색폐기물로 분류, '98. 7. 15. 개정·고시(환경부고시 제98-75호)함
- 적색폐기물은 반드시 수입국의 서면동의를 있어야 수출이 가능하고, 황색폐기물은 수입국으로부터 수입동의요청에 대한 접수사실을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신이 없는 때에는 묵시적 동의로 간주하여 수출이 가능함

-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령에 의한 적색폐기물과 황색폐기물에 해당되는 폐기물은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득하여야만 수출·입이 가능함
- ※ 적색폐기물과 황색폐기물의 폐기물품목은 환경부홈페이지 (<http://www.me.go.kr>)에 게재되어 있음
- 폐기물자원 → 법령·고시 → 고시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적용 대상품목)

### 13-65. 국가간 이동 통제대상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할 때는?

- 수출·입되는 폐기물의 국내에서의 수집·운반·보관·재활용 등에 관해서는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관리법이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을 적용받게 됨
- 따라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허가를, 중간처리과정을 거치는 경우라면 동법 동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다만 단순 무역업무만 대행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상 별도의 허가없이 대외무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업 신고만으로 가능함
- ※ 폐기물의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 등에게 위탁처리 해야 함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4항에 해당되는 폐기물인 경우에는 배출·운반·처리할 때마다 폐기물간이인계서 또는 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해야 함
- 다만, 폐기물인계서 중 처리자가 작성해야 하는 사항은 폐기물이 수출 선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수출면장 등을 첨부하면 처리자가 작성해야 할 사항에 갈음할 수 있음

**13-66. 폐기물수출입시 수수료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허가 수수료는 아래 방법으로 산출하며 천원미만은 산출 금액에서 제외하고 기준금액이 외국환으로 표시된 경우에는 납입당시 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함
  - 수출의 경우 : 당해 폐기물의 본선인도가격(F.O.B) × 1 ÷ 1,000
  - 수입의 경우 : 당해 폐기물의 선적가격(C.I.F) × 1 ÷ 1,000
  - 본선인도가격 또는 선적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당해 폐기물의 처리비용 × 1 ÷ 1,000
- 폐기물수출입 허가수수료 납부서는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에 납부하고 당해 폐기물의 수출입허가 신청 시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함

**13-67. 폐기물부담금 제도란 무엇이며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대상은?**

- 폐기물부담금은 특정대기·수질유해물질 또는 특정 유독물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재료·용기의 처리비용을 그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부담시켜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오염자 부담원칙에 입각하여 환경부하가 높은 제품에 대하여 당해 제품의 가격에 환경비용을 내재화시켜 환경비용의 합리적 배분을 꾀하고자 하는 것임
-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용기와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수입하는 연구용 제품·용기의 견본품에 대하여는 폐기물부담금의 부과를 제외함

### 13-68. 화학물질 유해성심사제도란 무엇인가?

- 화학물질이란 원소 또는 화학물질에 인위적으로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상태에서 얻어진 물질을 추출·정제한 것을 말하고, 전세계적으로 1,200만여 종의 화학물질이 존재하며 상업적으로 생산·유통되고 있는 화학물질의 수는 10만여 종이고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은 37,000여종임
- 화학물질은 최초 유통시기에 따라 '91.2.2이전부터 유통되고 있던 것은 기존화학물질, '91.2.2이후 처음으로 유통되는 것은 신규화학물질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음
  - ※ 기존화학물질은 이를 목록화하여 고시(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안내받을 수 있음)
- 그리고 화학물질은 유해성정도에 따라 유독물, 관찰물질, 유독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로 구분하여 고시하고, 유독물 중 유해의 정도가 특히 크다고 인정되는 물질에 대하여는 사용금지 또는 취급제한유독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 ※ 환경부홈페이지 → 폐기물자원 → 법령·고시에 게재
    - 유독물·관찰물질 지정
    - 유독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 제조·수입 또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화학물질
- 유해성심사제도란 화학물질이 국내에서 유통되기 전에 당해화학물질의 유해성을 미리 심사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임

### 13-69. 유해성심사 면제대상 화학물질은?

- 유해성심사결과 유해성의 정도에 따라 유독물·관찰물질 및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질로 분류하고, 유독물로 분류된 물질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영업등록(허가)을 하도록 하여 관리하고 있음

- 유해성심사대상은 '91.2.2이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제조되거나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이 해당되며, 유해성심사는 국립환경연구원의 화학물질심사단에서 심사함
- 다만, 신규화학물질인 경우에도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유해성 심사 면제(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 제4조)
  - 화학물질의 수입량이 연간 100kg이하
  - 검사용 등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소포장된 시약
  - 기계·장치 내장 또는 시운전용으로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
  - 완제품상태로 소비자가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고체상태의 화학물질
  - 전량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는 누적 총량 10톤 이하인 염료 또는 염료 중간체

### 13-70. 유독물의 수입·수출신고 절차는?

- 수입 또는 수출하려는 화학물질이 유독물(취급제한유독물 포함)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의 경우 외에는 연간 수입품목 및 수량을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신고해야 하며, 이때 수수료는 품목 당 9,000원임
  - 시험·연구 또는 검사용 시약을 제외한 연간 수입수량이 100kg이하
  - 취급제한유독물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수입하는 취급제한 유독물
- 관찰물질의 경우는 제조하거나 수입할 경우에 연간 제조·수입품목 및 수량을 신고해야 함. 이때 신고기관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임

### 13-71. 등록을 해야 하는 유독물 영업의 종류는?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로 지정된 화학물질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업종별로 영업등록을 해야 함
  - 유독물제조업 : 판매목적으로 유독물을 제조하는 경우로서 유독물 제조업등록을 한 자가 자기가 제조한 유독물의 판매, 사용, 보관·저장, 운반에 대하여 별도의 영업등록이 필요하지 않음
  - 유독물판매업 : 유독물을 수입 또는 구입하여 수요자에게 판매를 하는 업으로서 판매업등록을 한 자가 판매하는 유독물을 보관·저장 또는 운반을 하는 경우 별도의 영업등록이 필요하지 않음
  - 유독물보관·저장업 : 타인이 제조 또는 사용하는 유독물을 보관·저장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영업
  - 유독물운반업 : 타인이 제조·판매 또는 사용하는 유독물을 운반하는 영업
  - 유독물사용업 : 유독물을 수입 또는 구입하여 다른 유독물 또는 유독물이 아닌 화학 제품을 제조하거나 이를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것으로, 자기가 사용하는 유독물을 보관·저장하거나 운반하는 경우 별도의 영업 등록이 필요하지 않음

### 13-72. 취급제한 유독물 영업허가의 종류는?

- 유독물 중 유해의 정도가 특히 크다고 인정하여 취급제한유독물로 지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종류는 아래와 같음
  - 취급제한유독물 제조업허가

- 취급제한유독물 수입업허가
- 취급제한유독물 사용업허가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영업허가대상에서 면제됨
- 취급제한유독물을 특별대책지역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외의 지역에서 연간 60톤 이하 (규정수량이상의 가스상 취급제한유독물제외)로 사용하는 자
- 취급제한 유독물을 시험·연구 또는 검사용으로 사용하는 자
- 기계·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취급제한유독물을 사용하는 자
- 산업안전보건법규정에 의한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

### 13-73. 쓰레기종량제란 무엇인가?

- 종전에 건물면적, 재산세 등을 과표로 쓰레기처리 수수료를 징수하던 방식을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실제 배출량을 과표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임
- 동 제도는 사용자부담금(User Charge/unit pricing)제도의 성격으로서 일반적으로 환경친화적소비패턴의 촉진, 분리수거촉진 등 을 위해 사용되는 제도임
- 계량 및 수수료 부과방식
  - 부피기준 부담제(우리나라는 규격봉투에 의한 부피기준) : 봉투, 꼬리표 또는 스티커 또는 정해진 폐기물용기를 사용하여 폐기물의 부피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
  - 중량기준 부담제 : 폐기물의 양을 계량한 결과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

### 13-74. 교토의정서에서 규제하고 있는 온실가스 종류는?

- 교토의정서 부속서A에서는 CO<sub>2</sub>, CH<sub>4</sub>, N<sub>2</sub>O, HFCs(수소불화탄소), PFCs(과불화탄소), SF<sub>6</sub>(육불화황) 등 6개 가스를 감축대상가스로 설정하고 있음
- 온실가스는 화합물이 가지고 있는 구조상 종류별로 열축적 능력에 차이가 있고, 이로 인해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잠재력이 달라지는데 이것을 지구온난화지수(Global Warming Potential : GWP)라 함
- 이산화탄소(CO<sub>2</sub>)를 1로 기준할 때 메탄(CH<sub>4</sub>) 21, 아산화질소(N<sub>2</sub>O) 310, 수소불화탄소(HFCs) 1,300, 과불화탄소(PFCs) 7,000, 육불화황(SF<sub>6</sub>) 23,900으로 산출됨
- \* 즉, 메탄은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잠재능력이 이산화탄소(CO<sub>2</sub>)보다 21배 크며, 육불화황(SF<sub>6</sub>)은 무려 23,900배나 크다는 의미임

## 14. 노동

## 차 례

14-1. M&A와 고용조정 방법은? .....	283
14-2. 합병의 경우 고용의 승계와 시기는? .....	283
14-3. 흡수합병의 경우 고용조정은? .....	283
14-4. 영업의 인수(양도·양수)시 고용승계 여부는? .....	284
14-5.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산만을 매입할 경우 고용승계 여부는? .....	285
14-6. 주식매매의 경우 고용승계 여부는? .....	285
14-7. 근로자의 기준근로시간·임금에 휴일이 포함되는가? .....	285
14-8. 근로자의 임금에 사회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가 포함되어 있는가? .....	286
14-9.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사업장은? .....	286
14-10. 근로계약기간은? .....	287
14-11.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	287
14-12. 법정퇴직금제도의 폐지 가능성은? .....	288
14-13. 퇴직금제도 개선내용은? .....	288
14-14.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시간 휴일·휴가제도는? .....	289
14-15. 학자금, 경조사비 등 특별금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가? .....	290
14-16. 무노동·무임금 원칙의 시행은? .....	291
14-17.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의무제도의 개선책은? .....	291
14-18.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노동조합원 자격유지 여부는? .....	292
14-19. 노사대표 합의서 총회부결의 효력은? .....	292
14-20. 인사·경영권 참여요구가 정당한 쟁의행위인가? .....	292
14-21. 쟁의행위 기간 중 사용자 채용 제한의 한계는? .....	293
14-22. 파견근로자 쟁의행위시 사용자사업주의 제한은? .....	294
14-23. 단체협약의 개폐 사항에 대한 쟁의행위는? .....	294

14-24. 적법 쟁의행위에 따른 휴일·휴가 산정방법은?	294
14-25. 근무시간중 노동조합활동이 가능한지?	295
14-26. 노동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중 특히 외국기업에 메리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295
14-27. 최근 노동계에서 발생한 폭력시위는 외국인투자자를 놀라게 하였고, 한국의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쳤음. 향후 폭력시위에 대한 전망과 정부의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297
14-28. 직위별 차별 정년제의 균등처우 위반여부?	297
14-29. 고용조정(정리해고)에 있어서 근로자대표의 정당성이 결여된 경우 효력인정 여부?	297
14-30. M&A로 영업권의 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사업인수 이전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던 해고자의 고용승계의 여부?	298
14-31. 각종 법률에 의한 의무고용인원이 과다하여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데 그 개선대책은?	299
14-32. 기업이 자율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하게 하거나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경우에도 부당해고를 범죄로 규정해야만 하는가?	300
14-33. 기본급 외에 학자금수당, 자격증수당 및 통근수당 등 각종 수당이 많은 것은 기업 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음	301
14-34. 한국의 높은 임금수준과 함께 근로기준법에서 지나치게 많은 노동 Cost를 규정하고 있어, 외국기업의 노무관리에 큰 어려움이 있음. 이에 대한 개선대책은?	301
14-35. 현재 한국의 임금체계는 너무 복잡한데, 이를 단순화할 계획이 있는가?	302
14-36. 평균개념을 도입한 현재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는 미리 계획된 연장근로 뿐만 아니라 계획되지 않은 연장근로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 아닌가?	302
14-37. 단체행동은 사업장 밖에서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파업기간동안 대체근로를 전면 허용해야 할 것 아닌가?	303
14-38.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규정 외에 불합리한 노조활동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되어야 할 것 아닌가?	304
14-39. 노사분규시 한국노동자들의 주요 제기사항은 무엇이며, 최근 분규 해결방식은 어떠한 추세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304
14-40. 한국을 노사분규가 극심한 나라로 인식하고 있음. 최근 한국의 노사분규 현황은?	305
14-41. 유급생리휴가 부여를 의무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청구가 있을 경우 무급으로 주도록 개선이 필요한 것 아닌가?	306

### 14-1. M&A와 고용조정 방법은?

- M&A의 방법, 즉 합병, 영업의 인수, 자산의 인수, 주식의 매입 등에 따라 고용승계의 가능 여부가 다르므로 아래에서 설명함

### 14-2. 합병의 경우 고용의 승계와 시기는?

- 상법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은 그대로 승계되어야 하며 합병 그 자체만으로는 고용조정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음
- 다만,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즉 고용조정의 공정한 기준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합병 전 두 회사가 각각 고용조정을 한 후 합병하거나, 일단 그대로 합병한 후 고용조정을 실시할 수 있음

### 14-3. 흡수합병의 경우 고용조정은?

- 흡수합병의 일반적인 경우로서 건설한 A기업이 부실한 B기업을 인수한다고 가정할때
  - 첫째, 합병 전에 각각 고용조정을 실시한다면
    - A회사는 합병예정이라는 이유 외에 고용조정의 정당성 근거를 찾기 어렵고 근로자와의 합의도 불가능할 것이므로 A회사의 근로자 감원은 불가함
    - 결국, B회사가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감원한 후 합병을 추진해야 함
  - 둘째, 합병 후(근로자 인수 후) 고정조정을 실시한다면
    - 합병으로 인하여 B회사는 이미 소멸되고 법률적으로 모든 근로자는 A회사

근로자가 되었는데, 감원을 추진할 때 양자간에 차별을 둘 수는 없는 것임

- 즉, A회사 근로자도 감원대상에 포함하여 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사태를 예견한 A회사 근로자들은 합병 자체를 반대할 가능성이 큼
- 현실적으로는 합병교섭부터 합병완료(등기)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되므로 합병계약 과정에서 고용조정계획이 논의될 것임
- 고용조정계획은 A회사가 주도적으로 수립하여 B회사의 경영진과 노조, A회사의 노조 등과 협의하는 형태가 될 것임
-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합병 등기 이전부터 A·B 회사가 손쉬운 것(희망퇴직자 모집 등 해고회피노력 차원)부터 착수할 것이나, 결국 합병이후 A회사가 법적으로 마무리하게 될 것임

#### 14-4. 영업의 인수(양도·양수)시 고용승계 여부는?

- 영업의 인수(양도·양수)는 당사자간 계약에 의하여 권리·의무관계의 이전 여부가 정해지므로 계약내용에 따라 고용승계 여부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
- 영업의 양도·양수계약에 당사자간 근로관계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제30조제1항)에 정한 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이 경우 영업의 양도·양수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물적 조직 일체를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또는 받는 것을 말함

#### 14-5.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산만을 매입할 경우 고용승계 여부는?

- 사업운영에 필요한 물적 시설만을 매입할 경우 이는 영업의 양도라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고용승계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음
- 따라서, 구체적 사례가 『영업』의 인수인지, 『자산』만의 매입인지에 따라 고용승계 여부가 달라지게 됨

#### 14-6. 주식매매의 경우 고용승계 여부는?

- 주식매매로 인하여 대주주가 바뀐 것과 고용승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
- 다만, 대주주의 변동은 경영진의 교체로 이어지고 새로운 경영진은 새로운 경영방식을 모색할 것임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클 것임
- 그러나, 이 경우에는 통상의 정리해고와 다를 바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제30조제1항)에 정한 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4-7. 근로자의 기준근로시간·임금에 휴일이 포함되는가?

- 근로자의 법정 기준근로시간에는 휴일 중 주휴일은 포함되지 않으나 주휴일 이외의 공휴일은 포함됨
- 임금의 경우 지급체계가 월급 형태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나 시급 또는 일급 형태인 경우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하여야 함

**14-8. 근로자의 임금에 사회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가 포함되어 있는가?**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중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의 임금에서 징수하며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중 사용자 부담분 및 산재보험료는 사용자로부터 징수함

**<사회보험료 부담률>**

(단위 : %)

	계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사용자	9.2~9.8	4.5	2.105	평균 1.48 (0.4~40.8)	1.15~1.75
근로자	7.0	4.5	2.105	-	0.45

**14-9.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사업장은?**

- 근로기준법 제10조 제1항에서 「이 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법의 일부를 적용하고 있음
  - 「상시」라 함은 상태적으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 됨을 말하며 이는 사회통념에 의거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임
  -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이 아니고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인 이상임을 말하며, 이 경우 근로자는 그때 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함
  - 따라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상례적으로 보아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 14-10. 근로계약기간은?

-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근로계약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음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허용됨
-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예외적으로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이 인정됨
- 근로계약의 종료는 기간의 만료에 의해서 당연히 종료되나 비록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라도 근로자 측에서 계약갱신의 의사가 있고 계약갱신이 관례화 되어 있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없음

### 14-11.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 단시간 근로자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함
-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보호해야 함
- 월차·연차유급휴가는 통상근로자의 휴가일수에 비례하여 보장하되, 시간단위로 부여해야 함
- 주휴일, 생리휴가, 산전·후 휴가는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부여하되 이 경우 사용자가 지급하는 임금은 일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함

- 단시간 근로자중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 근로자, 즉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 주휴일, 월차휴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함

#### 14-12. 법정퇴직금제도의 폐지 가능성은?

- 대부분 선진국의 사회보장제도는 3층 구조 (국가, 기업, 개인)를 유지하고 있고 한국의 퇴직금제도는 3층 구조 중 기업연금에 해당될 것임
-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선진국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며, 퇴직금제도 임의화는 국민과 근로자의 거센 반대에 직면할 것임
- 법정퇴직금 제도에 따른 기업의 부담은 임금의 8.3% 수준으로 법정 퇴직금 자체보다는 노사간에 채택된 퇴직금 누진제가 기업경영에 부담이 되고 있으며 이는 노사간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임
- 현행 퇴직금 제도가 비록 법에 의해 강제되고 있으나, 기업의 실정에 맞게 운영 되도록 퇴직금 중간정산제와 퇴직금 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실정에 맞게 운영하면 그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을 것임

#### 14-13. 퇴직금제도 개선내용은?

-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 중간정산제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이라도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할 수 있는 제도인데,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됨
  - 퇴직금 중간정산 후에도 연차유급휴가의 기산, 승진, 승급, 호봉, 상여금 등 다른 근로조건에 있어서의 계속연수는 인정됨

- 또한, 퇴직연금보험 기타 이에 준하는 보험에 가입하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제도를 둔 것으로 간주하는 퇴직금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 신탁에 가입하여 근로자퇴직시에 퇴직금을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케 할 수 있음
- 이 경우 퇴직보험 등에 의한 일시금의 액이 기존 퇴직금제도에 의한 퇴직 금액 보다 적어서는 안됨

#### 14-14.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시간 휴일·휴가제도는?

- 현재 1주간 44시간으로 되어 있는 법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단축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의 향상을 도모함
- 일정한 단위기간 내에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하여 주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단위기간 내의 특정일 또는 특정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일 또는 1주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적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현행 1월 이내에서 3월 이내로 확대하여 근로시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함
-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와 사용자의 임금과 휴가에 대한 선택의 폭을 확대함
- 국제적인 입법례에 따라 월차유급휴가를 폐지하고, 여성인 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도록 하던 것을 무급화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함
-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 8일의 유급휴가를 주고, 1년마다 1일의 휴가를 가산하도록 하던 것을,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며, 2년마다 1일의 휴가를 가산하되, 휴가일수의 상한을 25일로 정함
-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을 위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에게 그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를 면제하여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함

- 이 법의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 금융·보험업, 일정한 요건의 정부투자기관 등 및 상시 1,0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4년 7월 1일
- 상시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5년 7월 1일
-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6년 7월 1일
- 상시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7년 7월 1일
- 상시 20인 이상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8년 7월 1일
- 상시 2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201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 14-15. 학자금, 경조사비 등 특별금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가?

- 근로자의 임금인상 요구에 대해 기업 측이 기본급 인상대신 수당 신설, 복지혜택 증대를 통해 해결하는 관행에서 비롯됨
- 이로 인해 임금체계가 복잡해져 임금관리비용이 증가하고, 각종 수당이 고정급화 됨에 따라 근로자의 직무능력 등을 반영하기 어려운 문제에 봉착
- 이 문제해결은 원칙적으로 노사 자율해결이 바람직하나 정부차원에서도 노사에 대해 행정지도하고 있음
- 가능한 한, 각종 수당은 기본급에 편입하고 유사수당은 통폐합하여 직무능력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는 수당만 존속토록 유도

- 정부는 대기업근로자에 비해 복지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근로자와 저임금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장학금 지급 및 의료비·경조사비 등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실시 등 사회복지의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14-16. 무노동·무임금 원칙의 시행은?

- '97. 3월 노동관계법 개정 시 쟁의행위기간 중 무노동에 대해서는 임금지급의무가 없음을 명시
  - 노동조합이 이를 요구·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는 벌칙을 부과토록 함
- 정부는 파업시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준수되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해 나갈 예정임
  - 노조 측이 파업기간 중 임금지급을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경우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임

#### 14-17.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의무제도의 개선책은?

- '97년 3월 노동관계법 개정 시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을 금지토록 개선하였음
- 그러나, 한국의 노사현실은 다른 나라와는 달리 전임자 급여는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관행이 정착됨에 따라 전임자 급여지급을 일시에 제한할 경우 노조활동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현재의 급여지원 범위 내에서 2006년까지 금지규정의 적용을 유예함
  - 단, 유예기간중 전임자 급여지원 규모를 노사협의를 의해 점진 축소토록 함

**14-18.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노동조합원 자격유지 여부는?**

-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조직된 단체로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은 금지되며, 특정기업에서 해고된 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임
- 그러나, 사용자가 노동조합활동과 관련하여 해고된 경우 즉,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해고된 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노동조합원의 자격을 인정함

**14-19. 노사대표 합의서 총회부결의 효력은?**

- 노사대표 합의서는 노동조합 총회 부결과 관계없이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이 있음
- '97. 3월 노동관계법 개정 시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 관련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제1항에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라고 명시하여 입법적으로 논란의 소지를 불식시킴
- 따라서, 노동조합이 총회 부결을 이유로 재교섭 요구 시 사용자측이 이를 거부하더라도 교섭거부에 해당되지 않음

**14-20. 인사·경영권 참여요구가 정당한 쟁의행위인가?**

- 경영권이란 사유재산권에서 파생된 포괄적 권한(조직·관리·인사권)으로서 경영자에게 귀속·독점되는 권한임
- 따라서, 경영에 대한 간섭이나 경영에 참가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경우 그 정당성이 부정됨

- 징계위원회 구성 시 노사 동 수 참가와 함께 가부 동 수 시 결정권을 노동조합에 부여하라고 요구하는 경우 등
- 그러나, 구체적인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관련된 부문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경영 간섭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상 정당성이 인정됨
- 근로조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당·불법한 처우의 철회, 노조의 활동악화를 목적으로 하는 배치·전환의 철회 요구 등

#### 14-21. 쟁의행위 기간 중 사용자 채용 제한의 한계는?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는 노동조합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서 쟁의기간 중에는 사용자가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의 채용 또는 대체를 금지하고 있음
- 단순히 쟁의로 인한 생산의 손실방지 또는 보충수단으로서 일시적인 작업장을 변경하거나 지점 등을 설치하여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를 채용한다거나 타 사업체 또는 개인에 의뢰하여 제품을 제조하게 할 수 없음
-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제한이 없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의 사용자 개념에 포함되는 자가 스스로 판매 또는 제조를 하는 행위
-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중 쟁의행위에 참여하지 않는 근로자가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 자연감소인원의 보충, 이미 계획된 사업의 확장 등으로 인한 신규채용
-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는 관계없는 경영간섭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행동 등은 쟁의행위가 아니므로 이 경우 대체인력의 동원은 제한되지 않음

**14-22. 파견근로자 쟁의행위시 사용자업주의 제한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는 노동조합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서 쟁의기간 중 사용자가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의 채용 또는 대체를 금지하고 있음
- 따라서, 파견근로자의 쟁의행위 기간 중 사용자업주는 파견근로계약의 해약 등의 방법을 통하여 쟁의와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음

**14-23. 단체협약의 개폐 사항에 대한 쟁의행위는?**

- 단체협약은 노사관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사가 자주적으로 결정한 법적 규범이므로 노사 각자가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음
- 단체협약 당사자는 협약의 유효기간 중 협약에 정한 사항의 변경·폐지 등을 이유로 쟁의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와 그 구성원에 대하여 쟁의행위를 저지해야 할 의무를 부담(단체협약의 평화의무)하는데, 이는 협약 당사자의 특별한 합의에 의해서가 아닌 단체협약의 기능에서 오는 내재적 의무임
- 따라서, 노사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협약의 개폐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민사 및 형사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음

**14-24. 적법 쟁의행위에 따른 휴일·휴가 산정방법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적법절차에 따라 정당한 쟁의행위가 행하여진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 월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의 산정은 쟁의행위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수에 대한 출근률에 따라 산정함

- 쟁의행위기간이 주의 전부, 월의 전부, 년의 전부에 해당될 경우 사용자가 주휴일·월차·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음

#### 14-25. 근무시간중 노동조합활동이 가능한지?

- 노동조합활동은 근무시간 이외에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근무시간 중 총회 개최 등의 조합활동을 할 수 없음
- 부득이한 경우라도 단체협약에 의한 절차에 따라야 함
  - 조합원 총회 개최 등의 조합활동 시 회사측에 통보함으로써 가능하다는 등 단체협약상 명시규정을 둔 경우에만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할 수 있음

#### 14-26. 노동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중 특히 외국기업에 메리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 새 노동법은 노사간 교섭력의 균형을 유지함과 동시에 노동시장의 규제완화와 유연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개정되었음
- 특히 근로시간·고용조정제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으로 기업의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새 법에서는 노사가 일정한 요건 하에서 2주 또는 3월 이내의 기간을 단위기간으로 하여 근로시간을 변경·운영할 수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함
  - 이와 함께 1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근로해야 할 총 근로시간만 정하고 각 근로일의 근로시간과 시업·종업시각은 근로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도입 근거를 마련함

- 노사 서면합의에 따라 특정 근로일을 연·월차 휴가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함
-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퇴직전이라도 기왕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우선 정산해 줄 수 있는 퇴직금 중간 정산제도,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 신탁에 가입한 경우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는 퇴직연금보험제도를 도입하여 퇴직금제도를 기업의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가능 하도록 함
- '98. 2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고용조정의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였고 '99. 3월까지로 되어 있던 유예기간을 폐지하여 즉시 시행토록 하였으며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의 경우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명시함으로써 기업의 구조조정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음
- '98. 7. 1일부터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일정 업무에 대해서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기업의 인력관리의 유연성을 제고
- 이와 함께 불합리한 노사관계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여 노사간 교섭력의 균형을 기하도록 하였음
- 노조전임자의 급여지원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명시하되 기왕에 급여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5년간 적용을 유예(유예기간 중 지원규모를 노사협의를 의하여 점진적으로 축소하도록 노력하되 축소재원을 노조의 재정자립에 사용하도록 규정)
- 파업기간중의 임금지급과 관련하여 사용자는 파업참가자에게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노조는 파업기간의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파업을 할 수 없음을 명시
- 종래 쟁의행위 장소를 사업장내로 한정하던 규정을 폐지하는 대신 생산 기타 주요 업무 관련시설의 점거, 출입 및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를 금지

14-27. 최근 노동계에서 발생한 폭력시위는 외국인투자자를 놀라게 하였고, 한국의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쳤음. 향후 폭력시위에 대한 전망과 정부의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 '98년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노동계의 불만과 요구사항 증가로 일부 노동계의 불법적인 집회·파업이 발생한 바 있으나 2000년 이후 불법·폭력 시위는 대폭 감소하고 있음
- 정부는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는 최대한 보장하되, 법을 위반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여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행위는 철저히 엄단한다는 입장임
- 아울러 노동계에 대한 지속적인 대화·설득 노력을 전개하여 "협력적 노사관계 정착"을 통한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토록 적극 유도할 것임

14-28. 직위별 차별 정년제의 균등처우 위반여부?

- 근로자의 정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정한 바 없으므로 단체협약이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야 함
- 예를 들면, 단체협약내용에 직위별로 정년을 달리하는 제도를 설정했다면, 이는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적 대우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5조의 균등처우에 반하는 것이 아님

14-29. 고용조정(정리해고)에 있어서 근로자대표의 정당성이 결여된 경우 효력인정 여부?

-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는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정리해고함에 있어 그 요건으로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합리적인 공정한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고, 해고 회피방법 및 해고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에게 해고일 60일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한다는 등의 요건을 명시하고 있음

- 동 규정은 고용조정(정리해고)시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는 실질적 요건의 존재와 함께 절차적인 요건을 갖추어야만 고용조정(정리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임을 명백히 하고 있음
- 근로자대표를 선정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특별히 제한한 바 없으나, 전 근로자의 자율성에 의거하여 그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근로자위원들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한다면 그들이 정당한 근로자대표로서 인정될 수 있음
- 따라서,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근로자와 협의 절차를 거쳤을 경우에는 그 근로자대표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정당한 고용조정(정리해고)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음

**14-30. M&A로 영업권의 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사업인수 이전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던 해고자의 고용승계의 여부?**

- M&A(기업자체를 목적물로 하는 매매행위의 총칭)로 인하여 영업권의 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고용승계" 대상은 계약체결일 현재 실제 근무하고 있는 자와의 근로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업인수 이전에 이미 해고된 근로자로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근로자의 근로관계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사업인수 이전에 이미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상황에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를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다면 이는 당사자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노동위원회는 본 안에 대한 심리를 거부하는 "각하"의 판정이 예견되는 것임

### 14-31. 각종 법률에 의한 의무고용인원이 과다하여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데 그 개선대책은?

- 노동관계법에 따른 의무고용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의무와,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상의 장애인고용의무 등이 있음
- 안전보건관계자 선임의무
    -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보호를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안전보건 관계자를 사업장 내에 두도록 하는 것은 독일·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일반화된 것임
    - 오히려 선진국에서는 한국보다 훨씬 세분화되고 까다로운 안전보건기준을 설정하여 엄격하게 집행하고 있음
    - 그간 정부는 지속적으로 규제를 완화하여 왔으며, 특히 지난 '97. 5월 에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을 통하여 산업보건의 선임의무 면제, 겸직허용확대 등 채용의무완화, 공동채용제도신설, 의무고용인원축소 및 면제대상확대 등 필요최소한도로 완화하였음
    - 다만, 근로자와 건강이 침해되는 사례가 없도록 핵심적인 안전·보건 조치의무는 계속 유지·강화해 나갈 방침임
  - 장애인 고용의무
    - 장애인고용의무제도는 사회연대이념에 입각하여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임
    - 이 제도는 사회전체가 장애인고용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이념을 바탕으로 고용을 통한 경제적 자립에 그 기초를 두고 있는 것으로 자율적인 고용관행에 맡길 경우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는 장애인의 취업난이 심화될 수 있음
    - 장애인 미고용에 따른 부담금을 재원으로 조성된 기금은 장애인고용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직업훈련, 고용시설·장비비 지원과 장애인고용 장려금 등의 재원으로

사업주에게 직·간접적으로 환원되고 있으며 선진 각국은 오래 전부터 의무고용제, 부담금납부제도 등을 통해 장애인들에게 일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있음

- 정부는 앞으로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장애인고용촉진기반을 마련하여 우수한 기능을 갖춘 장애인을 기업에 제공함으로써 인력난 해소와 생산성 제고를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14-32. 기업이 자율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하게 하거나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경우에도 부당해고를 범죄로 규정해야만 하는가?**

- 기업들이 근로자를 자율적으로 해고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해고가 남용될 우려가 크며, 특히 사회복지제도가 완비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적·사회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근로자들이 생활에 큰 타격을 입게 됨
- 따라서 해고의 자유에는 정당한 이유 등 실체적 요건 및 절차적 요건 등 일정한 제한을 둘 필요가 있음
- 이러한 해고제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기업들의 해고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 위반자들에 대한 벌칙부과가 불가피함
- 한편,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98. 2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경영상 해고제도를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봄

**14-33. 기본급 외에 학자금수당, 자격증수당 및 통근수당 등 각종 수당이 많은 것은 기업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임금은 대체로 기본급과 각종 수당, 상여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종 수당의 종류가 다양하여 임금구성체계가 복잡하며, 기업의 임금관리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임
- 그러나 이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며 노사간 자율교섭에 의해 시행해 온 관행인 바, 원칙적으로 기업 스스로 결정할 문제임
- 정부는 복잡한 임금구성체계를 단순화하도록 노사에 권고하고 있음
  - 가능한 한, 각종 수당은 기본급에 편입하고 유사수당은 통폐합하여 직무능력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는 수당만 존속토록 유도하고 있음
- 또한 관리직, 전문직을 중심으로 연봉제를 도입하도록 권장하고 있음

**14-34. 한국의 높은 임금수준과 함께 근로기준법에서 지나치게 많은 노동 Cost를 규정하고 있어, 외국기업의 노무관리에 큰 어려움이 있음. 이에 대한 개선대책은?**

-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이외의 노동 Cost로 퇴직금,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법정 퇴직금은 사회보장 수준이 높지 않은 한국의 현실에서는 근로자 생활보장을 위한 중요한 제도로서
  - 일방적인 폐지는 근로자와 국민의 큰 반대가 예상되며, 특히 실업의 위험성이 높은 최근의 상황에서는 노사불안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97년에 도입된 퇴직금중간정산제와 퇴직연금제를 활용하여 기업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필요함

- 법정 퇴직금에 따른 기업부담은 5.3%의 수준으로서 기업에 큰 부담이 될 정도는 아니며, 특히 일본에서도 취업규칙을 통해 사실상 대부분의 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임
- 연차유급휴가는 다른 나라에 비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며, 다만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한 임금지급 규정이 기업에 Cost로 작용할 수 있으나, 이는 근로자들이 휴가를 사용토록 권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용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임

**14-35. 현재 한국의 임금체계는 너무 복잡한데, 이를 단순화할 계획이 있는가?**

- 현행 근로기준법상의 임금개념은 퇴직금 및 산재보상금 등을 산정하는 개념인 평균임금과 시간 외 근로 시 가산임금 등을 산정하는 통상임금으로 이원화되어 있음
- 현행 임금개념의 복잡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법 상 임금개념을 기준임금으로 단일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기준임금의 구성내용이나 결정기준 등은 노·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관심사안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노사·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다루어야 할 과제임

**14-36. 평균개념을 도입한 현재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는 미리 계획된 연장근로 뿐만 아니라 계획되지 않은 연장근로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 아닌가?**

-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기업의 경쟁력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동시에 근로자의 삶의 질(휴가일수의 증가)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 노사협정 또는 사업장 취업규칙에 의하여 시행함으로써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미리 예측할 수 있어야 함

- 계획되지 않은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이를 허용할 경우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미리 예측할 수 없어 생활리듬을 파괴하는 등 근로자의 건강과 문화적 생활확보가 곤란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 따라서 사전에 예정되지 않은 연장근로에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인정하는 것은 곤란함

**14-37. 단체행동은 사업장 밖에서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파업기간동안 대체근로를 전면 허용해야 할 것 아닌가?**

- 그간 사업장 밖 쟁의행위 금지 조항이 사업장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동 규정을 삭제하여 장소적 제한을 폐지하였음
- 한편, 현행법에 의하더라도 사업장 내 쟁의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 사업장 내에서도 i) 생산시설 및 이에 준하는 시설의 점거를 금지하고 ii) 작업시설의 손상과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기간에도 정상적으로 수행토록 하며 iii) 출입 및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등을 금지하고 iv) 쟁의행위의 참가독려는 평화적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함
-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 문제는 사용자의 조업권과 노동조합의 쟁의권 보호의 균형차원에서 보아야 함
  - 사용자도 직장폐쇄, 파업기간 중 임금무지급, 쟁의행위 비참여근로자를 이용한 조업활동을 할 수 있음에도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가 전면적으로 허용된다면, 이는 '교섭력의 균형유지'라는 노사관계의 기본원리가 무너질 우려 있음

**14-38.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규정 외에 불합리한 노조활동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되어야 할 것 아닌가?**

- 한국의 부당노동행위 제도는 헌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자의 근로자 단결권 침해를 방지하고자 마련된 것이며
- 노동조합의 불합리한 노조활동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현행법상으로도 불합리한 노조활동을 부당노동행위로 제재하기 위한 방안으로 행정관청은 노조의 규약 및 결의, 처분 또는 단체협약 등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명령이 가능하고
- 임·단체 교섭 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부당한 교섭요구를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14-39. 노사분규시 한국노동자들의 주요 제기사항은 무엇이며, 최근 분규 해결 방식은 어떠한 추세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 '98년 이전 노사분규는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과 관련된 분규가 많은 비율을 차지해 왔으나, 최근에는 구조조정과 관련한 고용보장이 단체협상 주요쟁점사항이 되고 있음
- 분규해결방식에 있어서는 자율교섭에 의한 해결이 증가하고 있음
- 정부는 임금 및 단체교섭에 있어서 노사 당사자간의 자율교섭을 보장하고
- 교섭에 필요한 객관적인 자료와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는 한편, 노사간 이견이 지속될 경우 노동위원회의 공정한 조정서비스를 통한 문제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14-40. 한국을 노사분규가 극심한 나라로 인식하고 있음. 최근 한국의 노사분규 현황은?

- 그간 한국의 노사관계는 '87년을 분기점으로 약 3년간 집중적으로 노사분규를 겪었으며, 이 과정에서 성숙되지 못한 방식의 파업은 노사 모두에게 실익이 없다는 값진 체험을 하였음
- '90년대 들어 노사분규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98년 IMF사태 이후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조정, 삭감된 임금의 보전 내지 인상요구와 관련한 분규 다발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노사분규 발생건수가 2001년도에 감소세로 전환됨
- 불법분규도 최근 감소하는 등 법 테두리 내에서 노동운동을 하는 관행이 확산되고 있음
- 정부는 노사정위원회의 상설화를 통한 대화와 참여로 노사분규가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경제위기 극복노력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으로 노사관계도 안정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연도별 노사분규 현황〉

	'02	'03	증감
노사분규 사업장	322개소	320개소	△0.6%
근로손실일수	1,580,424일	1,298,663일	△17.8%

**14-41. 유급생리휴가 부여를 의무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청구가 있을 경우 무급으로 주도록 개선이 필요한 것 아닌가?**

- 2003.9.15 법 개정으로 생리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 무급으로 주도록 개정 되었음
- 시행시기는 1,0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04. 7. 1부터 시행되며 단계적으로 확대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15. 중소기업 지원

## 차 례

15-1. 외국인투자기업도 창업자금이거나 기타 정부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는가? .....	311
15-2. 중소기업의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	311
15-3. 외국기업이 국내업체에 투자하기 위해 중소기업체들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데, 어디에서 검색이 가능한가? .....	312
15-4. 중소벤처·창업자금이란? .....	312
15-5.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이란? .....	314
15-6. 첨단고도기술수반업종의 외국벤처기업이 한국에 투자할 경우 투자기업이 받을 수 있는 기술개발보조금의 액수와 항목, 절차 및 관련부서는? .....	319
15-7. 외국인투자기업도 국내 중소기업에게 지원되는 각종 혜택(세제, 금융, 정부보조)을 받을 수 있는가? 있다면 혜택을 받기 위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	321
15-8. 외국인투자기업도 도입된 신기술을 바탕으로 벤처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있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	321
15-9. 벤처기업 지정요건은? .....	322
15-10. 농업, 임업, 어업 및 농협, 축협, 영농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도 중소기업범위 내에 해당되면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가? .....	324
15-11. 벤처기업임을 확인받고자 하는데 확인방법은? .....	324
15-12.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는 확인서는 어디에서 발급하는가? .....	325
15-13. 상시근로자수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	325
15-14. 규모는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지만 중소기업으로 보지않는 기업도 있는가? .....	326
15-15. 다른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는 어떻게 중소기업 범위를 확인하는가? .....	326
15-16. 중소기업 유예기간 제도란? .....	327
15-17. 특정 업종의 중소기업 범위 확대는 어느 때에나 수시로 가능한가? .....	327
15-18. 국내의 각종 중소기업지원용 정책자금현황을 일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 어디에서 알아볼 수가 있는가? .....	328
15-19. 창업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내용은? .....	329

### 15-1. 외국인투자기업도 창업자금이나 기타 정부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는가?

- 현재 100% 외국인투자기업도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음

### 15-2. 중소기업의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시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업종의 특성과 상시 근로자수, 자산규모, 매출액 등을 참작하여 그 규모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이하이고, 그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동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함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상의 기준>

해당업종	규모기준
1.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2. 광업, 건설업, 운송업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3. 대형 종합 소매업, 호텔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4. 종자 및 묘목 생산업, 어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휴양 콘도 운영업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통신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병원, 영화산업, 방송업	상시근로자수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5. 도매 및 상품중개업, 통신판매업 방문판매업,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공연사업 뉴스 제공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6. 그밖의 모든 업종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 단, 다음의 경우 제외

-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 증권거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자산총액 (직전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 15-3. 외국기업이 국내업체에 투자하기 위해 중소기업체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데, 어디에서 검색이 가능한가?

-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중소기업관을 통하여 한국의 중소기업(3만여개)에 대해 제품별로 국·영문 Key word 검색이 가능하며, 이 사이트에서는 적절한 한국의 중소기업을 소개해 주고 협상 중재, 계약체결까지 안내해 주는 "Free Business Matchmaking Service"를 On-Line 상으로 신청할 수 있음 ([www.koreasme.org](http://www.koreasme.org))
- 합작투자는 물론 기술협력, 제조협력 등 장기적 협력 파트너를 모색코자 하는 외국 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 국제협력처의 Matchmaking 전문가를 활용하여 최적의 한국 중소기업 파트너를 만날 수 있음 (문의처 : ☎ 02-769-6852/3, [findkorea@sme.or.kr](mailto:findkorea@sme.or.kr))

### 15-4. 중소벤처·창업자금이란?

- 사업목적
  - 사업성과 기술력이 우수한 창업초기 중소·벤처기업과 예비창업자를 지원하여 자금난 해소, 생산기반 구축 및 기술개발을 통한 창업기업의 성장에 기여하고 고용창출을 도모

- 지원규모 : 3,000억원 (2004년도 기준)
- 지원대상
  - 창업을 준비중인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 ※ 지원제한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4조에 명시된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및보험업, 부동산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및스키장운영업, 미용·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등 기타서비스업)
  - 금융기관 불량거래자 또는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자
- 지원범위
  - 창업 및 창업초기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시설 및 운전자금
- 지원조건
  - 대출금리 : 연 5.5%(변동금리)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지원 : 업체당 연간 10억원 한도 (단, 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

-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지원 : 5천만원 이내
- 지원방법
  - 중진공(신용보증기관)의 신청·접수를 통해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부 및 순수 신용 직접대출,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실시
- 신청·접수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담보부, 신용보증서 및 신용대출 이용시)
  -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기술신용보증서 이용시)
  -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 신용보증서 이용시)

#### 15-5.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이란?

##### 사업목적

- 중소기업의 생산 및 서비스기반 고도화와 경영혁신을 위한 시설자금 및 구조조정 자금을 지원하여 경영체질을 강화

##### 지원규모 : 12,000억원(2004년도 기준)

##### 지원대상 : 구조개선사업,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사업, 특별경영안정사업

- 구조개선사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별표>의 지원제외 대상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사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지식기반서비스업(전업율 30%이상)을 영위하는 업체

- **특별경영안정사업**은 <별표>의 지원제외대상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천재지변 또는 대형사고로 매출액의 3% 이상 피해
    - \* 재해 피해 중소기업은 별도로 정하는 지원기준을 적용
  - 거래 금융기관 또는 기업 구조조정이나 장기노사분규 등의 사유 발생
  - 사업성, 기술성은 있으나 업종별 지원제한부채비율 초과 등으로 정책자금 지원 신청이 어려운 기업
  - 최종 부도 발생기업, 금융기관·신용보증기관 등의 신용불량 기업, 화의·법정관리 진행중인 기업, 자본잠식 기업 중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기업
    - 1) 산업발전법에 의한 구조조정전문회사(구조조정조합 포함) 또는 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투자회사(창업투자조합 포함)가 상기 사유발생 후 투자가 일어난 경우
    - 2) 금융기관 또는 신용보증기관이 출자전환한 경우
    - 3) 자산관리공사가 회생지원대상으로 선정한 경우
    - 4) 직접대출기업 중 특수관리기업으로 지정하였으나 출자전환한 경우
    - 5) 대주주감자 등 강력한 자구노력을 추진하는 경우

## □ 지원범위

### 가. 구조개선사업

- **시설자금** :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시설자금
  - 생산설비를 구입·개체하거나, 정보화 촉진을 위해 시스템 및 설비를 구입·개체하는 경우 소요자금
  - 서비스제공을 위한 시설 구입자금
  -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건축, 임차보증금)

-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

- 기업간 인수·합병을 추진할 경우, 다른 기업이 보유중인 생산설비를 구입하는 경우 인수금액 등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소요되는 자금
- 중소기업이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소요되는 시설자금

○ 운전자금 : 초기 가동비 및 구조조정을 위한 자금

- 시설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시설자금의 40% 이내)

- 구조조정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 타기업 개발기술 도입 및 제조·판매권리양수비용
- 법인전환비용 등

**나.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사업**

○ 시설자금

-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확보(임차, 건축, 매입) 및 시설구입자금

○ 운전자금

-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한 원부자재 구입비용, 연구개발비, 시장개척비용 등 운전자금

**다. 특별경영안정사업**

- 재해, 구조조정 등으로 일시적인 자금수급 불균형 상태의 경우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 □ 지원조건

## 가. 구조개선사업

- 대출금리(변동금리) : 4.9%,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대출은 5.4%
- 대출기간 : 시설자금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운전자금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포함)
- 대출한도
  - 소요자금의 100% 이내로 업체당 연간 총 3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 지원방법
  - 대출취급기관이 기성고 등을 확인하여 일시 또는 단계별 지원
  - 담보부 대출 또는 신용대출 방식으로 지원
  - \* 담보범위 : 부동산, 신용보증서 등

## 나.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사업

- 대출금리(변동금리) : 4.9%,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대출은 5.4%
- 대출기간 : 시설자금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운전자금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포함)
- 대출한도
  - 소요자금의 100% 이내로 연간 총 1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 지원방법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신청·접수·지원결정 후 담보부(부동산, 신용보증서등) 또는 순수신용

## 다. 특별경영안정사업

- 대출금리 : 7.9%(변동금리), 재해자금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
- 대출기간 :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10억원
- 신청·접수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 별표 >

지원제외 대상업종

업종분류	코드번호	해 당 업 종
제조업	36949중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건설업	45~46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50중	자동차판매 중 소매업
	504	차량용 연료 소매업
	51102중	담배, 주류중개업
	51331	주류도매업
	51333	담배도매업
	52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55	숙박 및 음식점업(관광호텔업 제외)
운수업	601	철도운송업
	602	육상여객운송업
금융 및 보험업	65~67	금융 및 보험업 (단, 산업발전법에 의해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제외)
부동산업	70	부동산업
임대업	7111	승용자동차 임대업
	713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7423	지주회사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76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801	초등교육기관
	802	중등교육기관
	803	고등교육기관
	804	특수학교 및 외국인학교
	809중	입시학원
기타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	88331	골프장 운영업
	88332	스키장 운영업
	8891	오락장 운영업(비디오방, 게임방 포함)
	8899	그외 기타 오락관련 산업
회원단체	91	회원단체
기타 서비스업	93	기타서비스업(산업용세탁업(93911) 제외)
가사서비스업	95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제 및 외국기관

15-6. 첨단고도기술수반업종의 외국벤처기업이 한국에 투자할 경우 투자기업이 받을 수 있는 기술개발보조금의 액수와 항목, 절차 및 관련부서는?

□ 사업목적

-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개발 기술의 제품화·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력 중심의 중소기업 육성

□ 지원규모 : 750억원(2004년도 기준)

□ 지원대상

- 최근 3년 이내 중소기업청 등 정부시행 기술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중소기업, 중소기업청 선정 Inno-Biz 업체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기술평가 확정 등록이 3년 이내인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보유 중소기업
  - \* 한국특허정보원의 선행기술조사 결과 신규성 또는 진보성을 인정받은 특허 출원 중인 기술 포함
- 최근 3년 이내에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을 사업화하려는 중소기업

□ 지원범위

- 시설자금
  - 개발기술을 활용한 제품 양산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시험검사설비 등
- 운전자금
  - 개발기술 및 특허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등

## □ 지원조건

- 대출금리 : 연 4.9%(변동금리)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5억원(운전자금은 3억원)
  - 대출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직접 순수 신용대출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부 대출
- \* 2004년부터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평가를 통한 보증서부 대출제도 도입

## □ 지원절차

- 자금신청·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 보증서를 통한 대출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접수와 동시에 기술신용보증기금(기술평가센터)에 통보하여 보증심사 진행
- 심사 및 최종 지원결정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직접 순수 신용대출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에서 자금지원 신청·접수후 예비평가
    - 지방중소기업청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가 공동으로 현장실사를 거쳐 자금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지원결정
  -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부 대출
    - 지역기술평가센터(10개)에서 기술성 평가 및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결정
- 신청·접수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15-7. 외국인투자기업도 국내 중소기업에게 지원되는 각종 혜택(세제, 금융, 정부보조)을 받을 수 있는가? 있다면 혜택을 받기 위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 외국인투자기업도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자금 및 세제 등 각종 정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절차 없이 지원대상 요건에 충족시 지원이 가능함
- 관련 지원제도는 중소기업청([www.smba.go.kr](http://www.smba.go.kr)), 중소기업진흥공단([www.sbc.or.kr](http://www.sbc.or.kr)), 국세청([www.nts.go.kr](http://www.nts.go.kr)), 정책자금 안내 시스템([www.finainfo.go.kr](http://www.finainfo.go.kr))에서 상세 정보를 알 수 있음

15-8. 외국인투자기업도 도입된 신기술을 바탕으로 벤처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관련 혜택을 받을수 있는가? 있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 외국인투자기업도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벤처기업 지정요건 충족시 관련 모든 지원 제도(자금, 세제 등) 수혜가 가능
- 벤처기업 지정요건 및 지원제도는 벤처넷 사이트([www.venturenet.or.kr](http://www.venturenet.or.kr)) 참고

15-9. 벤처기업 지정요건은?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벤처기업의 개념을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 투자기업, 신기술기업(창업하는 기업 포함)으로 정의하고 있음

구 분	기 준
벤처 투자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투자신탁회사(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조합)로부터의 주식인수총액이 자본금의 10%이상이고 투자비율의 유지기간이 벤처기업확인 요청일의 직전 6월 이상(연속하여) 유지한 기업</li> </ul>
연구개발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율이 총 매출액의 5% 기준이상(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에 한함)</li> <li>※ 창업 1년미만 기업의 연구개발비는 직전 2분기 2,500만원 이상, 3년 미만 기업은 연구개발비율 적용제외</li> </ul>
신기술 개발기업 (창업하는 기업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허권(특허출원을 한 기술로서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기술포함)을 이용하여 사업화하는 기업으로서 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성 및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li> <li>○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기술수반사업과 관련된 기술을 이용하여 사업화하는 기업으로서 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성 및 사업성이 우수하다고 평가 받은기업</li> <li>○ 공공연구기관, 한국기술거래소를 통하여 이전(양도, 양수에 의한 이전)받은 기술을 이용하여 사업화하는 기업으로서 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성 및 사업성이 우수하다고 평가받은 기업</li> </ul>

구 분	기 준
신기술 개발기업 (창업하는 기업포함)	<p>○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의해 개발된 기술(기술개발 완료일로부터 5년이내의 기술에 한함)을 이용하여 사업화하는 기업으로서 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성 및 사업성이 우수하다고 평가받은 기업</p> <p>가.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부품 소재기술개발사업, 대체에너지연구개발사업,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청정생산기술개발사업, 신기술창업보육사업(산업자원부)</p> <p>나. 기술혁신개발사업, 국내조달시장연계신제품개발사업(중기청)</p> <p>다. 정보통신산업기술개발사업, 정보통신선도기반기술개발사업, 온라인디지털 콘텐츠기술개발사업, 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정통부)</p> <p>라. 원자력연구개발사업, 특정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지원사업(과학기술부)</p> <p>마. 문화컨텐츠응용기술개발사업(문화관광부)</p> <p>바. 환경기술개발사업(환경부)</p> <p>사.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건설교통부)</p> <p>아. 농업기술개발사업(농림부)</p> <p>자.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보건복지부)</p> <p>차. 해양수산기술개발사업,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해양수산부)</p>

**15-10. 농업, 임업, 어업 및 농협, 축협, 영농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도 중소기업범위 내에 해당되면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가?**

-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종전에는 중소기업범위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으나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이 개정되어 2001년 1월 1일부터는 농업, 임업, 어업 등 1차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도 중소기업범위를 적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 농림부에서 영농조합법인도 영리를 목적으로 기업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 범위 적용대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도 주 업종과 규모에 따라 중소기업범위를 적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4항에 의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비롯한 비영리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으로 보아 지원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중소기업으로 규정하는 경우 그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비영리 법인·단체도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음

**15-11. 벤처기업임을 확인받고자 하는데 확인방법은?**

- 벤처기업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기업은 혁신능력 진단표와 벤처기업 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온라인사이트(벤처넷 : [www.venturenet.or.kr](http://www.venturenet.or.kr))를 통해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하여야 함.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 투자기업, 신기술기업(창업하는 기업 포함)중 하나의 요건을 구비한 기업은 평가기관의 현장실사 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벤처투자기업 15일)
- 벤처기업 지정요건 및 지원제도는 벤처넷 사이트([www.venturenet.or.kr](http://www.venturenet.or.kr)) 참고

### 15-12.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는 확인서는 어디에서 발급하는가?

- 어느 기업의 중소기업 해당여부는 해마다 달라질 수 있으며, 중소기업 명단을 관리하는 기관은 없음.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확인을 필요로 하는 기관에서 직접 확인해야 하며, 별도의 확인서 발급기관은 없음

### 15-13. 상시근로자수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함
  - 일용근로자
  -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의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
-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중에서 산정하므로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노동부의 해석을 우선 적용하게 되며 다음과 같이 3가지 방법으로 산정
  - 직전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의 경우
    -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현재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 ※ 월중 퇴사, 입사, 재입사 구분 없이 말일 현재 인원 기준
  - 창업 또는 합병한 지 12개월 이상인 기업의 경우
    -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12월이 되는 달까지 매월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 창업 또는 합병한 지 12개월 미만인 기업의 경우

- 창업일·합병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중소기업범위해석 참고

**15-14. 규모는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지만 중소기업으로 보지않는 기업도 있는가?**

- 있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로 지정된 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제외(2005.3.31까지 적용)
- 또한, 2005.4.1부터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상법 제37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제외

**15-15. 다른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는 어떻게 중소기업 범위를 확인하는가?**

- 동일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는 우선 주업종을 정하고, 당해 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산정하여 주업종의 중소기업 기준에 따라 해당여부를 확인

- 2개 이상의 사업 중 매출액이 가장 큰 업종이 주업종임

### 15-16. 중소기업 유예기간 제도란?

- 중소기업에 해당하던 기업이 규모의 확대나 중소기업 기준의 변경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즉시 지원을 중단하면 당해 기업의 경영안정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일정기간을 중소기업으로 보아 지원하는 기간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2개로 구분
  - 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 기업의 규모 확대 등에 의한 유예기간
    -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이를 중소기업으로 간주. 단,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의 합병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중소기업에 해당하던 기업이 규모의 확대, 업종의 변경, 다른 중소기업과의 합병, 업종의 추가 등으로 시행령 별표의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당해 연도는 중소기업으로 보고, 다음 3년간은 유예기간을 부여함
  - 시행령 부칙 제2항 : 경과조치에 의한 유예기간
    - 종전의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기준에 의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개정(2002.5.20)된 시행령의 기준에 의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개정령의 시행일부터 2005.3.31 까지 중소기업으로 봄

### 15-17. 특정 업종의 중소기업 범위 확대는 어느 때에나 수시로 가능한가?

- 불가능함. 중소기업 범위는 중소기업 정책의 중요한 기본정책으로, 법개정사항은 국무회의와 국회의 의결을 거치는 장기간이 소요되며, 대통령령인 시행령도 관계 부처 협의와 국무회의와 공청회 등 복잡한 여러 과정을 거쳐 개정

- 또한, 업종의 특성과 향후 성장 추세 전망, 타 업종과의 형평성 및 업종 내의 종업원 규모별 분포도, 범위 개정의 실익(즉,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지원의 혜택이 실질적으로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개정 시에는 업계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

※ 최근 개정일 : 2002년 5월 20일

**15-18. 국내의 각종 중소기업지원용 정책자금현황을 일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 어디에서 알아볼 수가 있는가?**

- 정부 각 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각종 공공기관들이 기업에 지원하는 자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책자금안내시스템([www.finainfo.go.kr](http://www.finainfo.go.kr)), 중소기업청([www.smba.go.kr](http://www.smba.go.kr)), 중소기업진흥공단([www.sbc.or.kr](http://www.sbc.or.kr)) 사이트에서 볼 수 있음

### 15-19. 창업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내용은?

- 창업중소기업(2006.12.31 이전에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창업 후 2년 이내에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에 대해 법인세·소득세 등의 국세감면과 취득세·등록세 등의 지방세 감면

구분	관련규정	지원내용
법인세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최소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개시일로부터 5년 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50%감면
인지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용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통장,계약서 등의 서류에 대하여는 인지세를 면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창업자에 한함)
등록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대해 등록세 면제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창업중소기업 등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세액감면에 대해 농어촌특별세액(세액감면의 20%)을 부과하지 않음
재산세 종합토지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소유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창업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50% 감면

## 16. 정 보 통 신

## 차 례

16-1. 전기통신사업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	335
16-2. 한국에 투자하기에 앞서 정보통신분야의 현황을 조사하고 싶은데, 이러한 정보를 제공 하는 기관이 있는가? .....	336
16-3. 통신사업자의 임원 또는 대표자에 외국인이 임명될 수 있는가? .....	336
16-4.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를 위한 방법과 절차는? .....	336
16-5. 기간통신사업의 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을 위한 절차와 방법은? .....	337
16-6. 기간통신사업허가에 필요한 출연금 규모는? .....	338
16-7. 기간통신사업에 외국인의 투자 및 지분참여 가능범위는? .....	338
16-8.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을 위한 방법과 절차는? .....	339
16-9. 별정통신사업자는 국제전화 착신호만 받는 영업을 할 수 있는가? .....	340
16-10. 별정 2호 사업자로 가입자모집대행을 할 경우, 얼마나 할인받을 수 있는가? .....	340
16-11. 아파트 단지 내에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은 가능한가? .....	340
16-12. 외국의 전화카드를 국내에서 판매가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방법은? .....	340
16-13. 전화카드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는가? .....	341
16-14. 일부 별정통신사업자가 전화카드 등의 다단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는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	341
16-15. 부가통신사업자 개설 신고를 위한 절차는? .....	341
16-16. 부가통신사업자가 Frame relay서비스에 음성서비스를 같이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가? .....	342

### 16-1. 전기통신사업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 전기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시내·시외·국제전화, 회선설비대여, 이동전화, PCS, IMT-2000, TRS, 무선호출, 위성휴대통신 등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임
  - 별정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또는 구내에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그 구내에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됨
    - 설비보유 재판매사업(별정 1호) : 자체 교환설비를 보유하고,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 제공(음성재판매, 인터넷폰, 국제 전용회선재판매 등)
    - 설비미보유 재판매사업(별정 2호) : 자체 교환설비 없이,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 제공(호집중, 재판매, 무선재판매 등)
    - 구내통신사업(별정 3호) : 빌딩, 아파트 등 구내에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그 구내에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
  - 부가통신사업은 기간통신 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 회선설비를 임차하여 기간통신역무 이외의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임

**16-2. 한국에 투자하기에 앞서 정보통신분야의 현황을 조사하고 싶은데,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이 있는가?**

- 한국의 정보통신시장에 대한 기초정보는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ait.or.kr>)를 통해 얻을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 미처 제공되지 않은 정보도 요청이 있을 경우 최대한 수집·제공하고 있음
- 정보통신관련 주요 정부정책동향이나 시장동향을 분석하여 주기적으로 발간하는 업무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으므로 보다 상세한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 기관의 홈페이지(<http://www.kisdi.re.kr>)를 통해 신청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발간자료를 얻을 수 있음

**16-3. 통신사업자의 임원 또는 대표자에 외국인이 임명될 수 있는가?**

- 현행 전기통신관련 법령상 임직원의 국적을 제한하지 않고 있음

**16-4.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를 위한 방법과 절차는?**

- 기간통신사업은 자유로운 허가신청이 가능함
-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는 원칙적으로 1년에 2회에 걸쳐 실시됨
  - 통상적으로 3월25일~3월31일, 9월25일~9월30일에 허가신청서를 정보통신부에 직접 제출
  - 기간통신사업자가 역무를 추가하는 경우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 외국인은 최대 49%까지 지분 참여할 수 있음

- 허가신청역무의 허가가능 여부 및 일시출연금 상·하한액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반기에는 4월 30일까지, 하반기 신청분에 대해서는 10월 31일까지 신청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 허가신청법인은 일시출연금 제시액을 포함한 전기통신발전을 위한 기술개발지원 계획서를 제출
- 허가취득 후 일시출연금을 분할납부하는 것은 불가함
- 기간통신사업자 선정은 허가신청법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심사하여 각 심사항목 별로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이상이어야 하며, 총점은 70점 이상을 받아야 함
- 허가신청법인간 경합이 있는 경우는 총점의 고득점순으로 선정
- 허가신청에 수반되는 서류, 세부심사기준 및 기타 허가신청에 필요한 내용은 정보통신부에 신청하는 경우 이에 관한 안내서를 받을 수 있음

#### 16-5. 기간통신사업의 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을 위한 절차와 방법은?

- 기간통신사업의 양수 또는 법인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수/합병 후의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정보통신부에 허가/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허가 및 승인신청은 언제나 가능함
- 정보통신부는 양수 또는 합병신청법인에 대해 재정 및 기술적 능력과 사업운용 능력의 적정성, 주파수 및 전기통신번호 등 정보통신자원 관리의 적정성,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및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90일 이내에 통보

### 16-6. 기간통신사업허가에 필요한 출연금 규모는?

- 기간통신사업허가에 필요한 출연금은 허가시 납부하는 일시출연금과 사업개시 이후에 매년 매출액 대비 일정액을 납부하는 연도별 출연금이 있음
  - 일시출연금
    - 주파수를 할당받아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선부문의 경우에만 전파법령에 따라 납입해야 함
  - 연도별출연금
    - 납부대상 : 사업개시후 매년 전년도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이고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사업자
    - 납부비율 : 전년도 매출액의 0.5%(사업법 제34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0.75%)
    - 납부한도 : 당해연도 출연금은 전년도 당기순이익 이내

### 16-7. 기간통신사업에 외국인의 투자 및 지분참여 가능범위는?

-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총 발행주식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음
  -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
  -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최대주주인 법인으로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그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

- 외국인은 KT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음
- 다만, 100분의 5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가능

### 16-8.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을 위한 방법과 절차는?

- 별정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인에 한하여 가능하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체신청장에게 등록신청을 해야 함
- 외국인은 국내에 법인을 설립한 후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국내 별정통신사업자의 주식을 보유한 후 경영권 행사가 가능함
- 체신청장은 등록신청법인의 재정적 능력,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등이 정보통신부가 사전에 공고한 등록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증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음
- 등록법인은 등록증을 교부받은 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해야 함
- 정보통신부(<http://www.mic.go.kr>) 및 체신청 홈페이지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절차, 서류작성요령 등을 게시하고 있음
- 별정통신사업자의 식별번호는 사용되지 않는 번호중 희망하는 번호를 부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사용중인 번호현황은 통신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식별번호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통신위원회 사무국에 문서로 신청함
- 외국인에 대한 주식소유 제한은 없음

**16-9. 별정통신사업자는 국제전화 착신호만 받는 영업을 할 수 있는가?**

- 불가능함. 별정통신사업자가 국제전화 착신호만 일방적으로 받을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는 발신호에 비례하여 착신호를 받지 못해 정산적자가 늘어나 공정경쟁에 저해가 되므로 이를 금지하고 있음(등록조건으로 부과하여 위반시 등록 취소 가능)

**16-10. 별정 2호 사업자로 가입자모집대행을 할 경우, 얼마나 할인받을 수 있는가?**

- 전기통신설비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약관에 근거하여 계약을 통해 할인율과 할인대상이 결정됨. 가입자 모집대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별정통신사업자 등록 전에 해당업체의 할인율, 할인대상을 조사할 필요가 있음

**16-11. 아파트 단지 내에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은 가능한가?**

- 별정통신사업자(구내통신사업)로 등록하여 사업할 수 있음

**16-12. 외국의 전화카드를 국내에서 판매가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방법은?**

- 외국의 통신사업자는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하거나 국내의 기간 또는 별정통신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판매할 수 있음

### 16-13. 전화카드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는가?

- 전화카드는 통신사업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누구나 판매할 수 있으나, 카드를 발행하는 것은 통신사업자만 가능함

### 16-14. 일부 별정통신사업자가 전화카드 등의 다단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는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 현행 전기통신관련 법령상 이에 대한 규정은 없음. 그러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경우 이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음

### 16-15. 부가통신사업자 개설 신고를 위한 절차는?

- 전기통신사업법에 정한 부가통신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지방 체신청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됨
  - 신고서 및 구비서류가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 접수되는 경우, 즉시 효력이 발생함
  - 신고서는 우편이나 fax, 인터넷으로도 접수 가능함
  - 외국인도 100% 지분을 소유할 수 있음
- 신고서 구비서류 등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부 또는 지방체신청에 요청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음
  - 부가통신역무의 예
    - : 고도팩스, PC통신, 인터넷접속서비스, 신용카드검색, 온라인정보처리, 700번서비스,

전화사서함, 주문형정보서비스, 음성정보서비스, 정보제공(IP,CP), 정보검색(DB) 또는 정보처리(DP) 등

**16-16. 부가통신사업자가 Frame relay서비스에 음성서비스를 같이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가?**

- 부가통신사업자는 Frame relay서비스에 데이터만 송신이 가능하며 음성서비스의 송신은 불가능함
- 음성서비스를 송신하려면 별정통신사업 등록을 해야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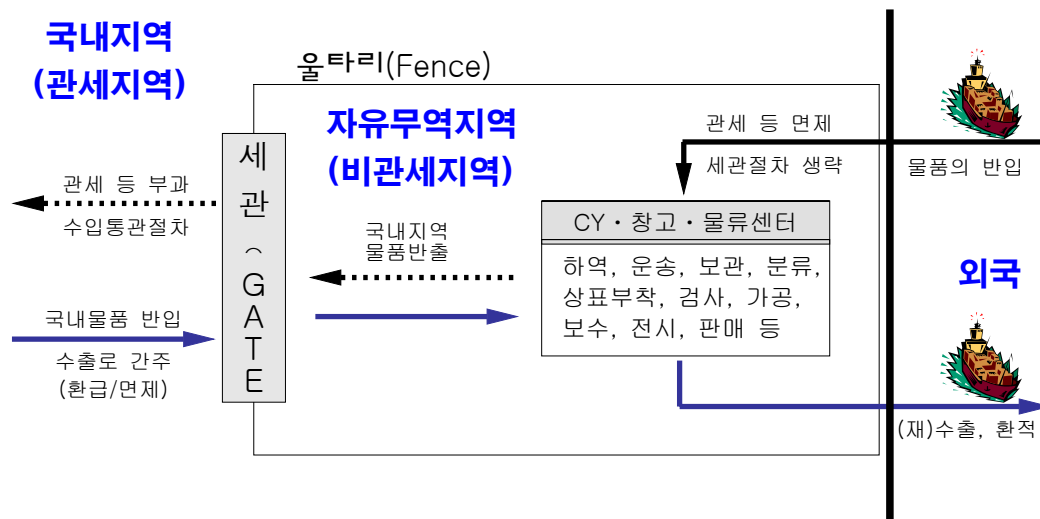
## 17. 자유무역지역 일반

## 차 례

17-1. 자유무역지역의 개념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	347
17-2.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받는 혜택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	348
17-3.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절차는? .....	349
17-4. 자유무역지역에서 외국물품의 반입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349
17-5. 자유무역지역에서 물품을 반출하기 위한 절차는? .....	350
17-6. 자유무역지역 내로 통관시 절차의 특별사항(신품 또는 중고 수입시의 제한사항, 기타 통관상의 특별사항)은? .....	350
17-7. 부산, 광양, 인천 일대는 자유무역지역이면서 또한 경제자유구역에 속한다고 들었는데, 두 제도 간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	351
17-8. 자유무역지역 내로 통관시 소요되는 시간은 대략 어느 정도인가? .....	353
17-9. 자유무역지역 안에서 등록업체간 물품이동 및 양도, 외국물품의 사용·소비 등 각종 부가가치 물류활동에 대한 세관 신고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	353
17-10. 자유무역지역 내에 물류창고를 신축시 관계기관에서 득하여야 할 인허가 및 신고 사항은? .....	353
17-11.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함으로써 한국내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노동자 고용기준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나? .....	354
17-12. 항만자유무역지역 입주시 국내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이 받는 혜택상의 차이점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	355
17-13. 항만자유무역지역에는 물류업, 제조업 구분없이 입주가 용이한가? .....	355

**17-1. 자유무역지역의 개념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 자유무역지역은 관세법·대외무역법 등 관계법률에 대한 특례와 지원을 통하여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으로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약칭 자유무역지역법)」에 의해 지정된 지역을 말하며, 기존에 운영해 오던 제조업 중심의 「자유무역지역」과 물류업 중심의 「관세자유지역」을 통합한 결과임
- 자유무역지역은 관세선 외측에 비관세영역을 설정하여 통관절차, 관세 및 제세공과금 등의 면제특전을 부여하였으며, 화물의 반출입 및 증계, 단순 가공 등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음
- 개념도



- 또한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업체중 고도기술산업, 산업지원서비스업인 외국인투자기업, 투자금액 1000만불 이상의 제조업 외국인투자기업, 투자금액 500만불 이상의 물류업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조세감면, 저렴한 임대료 및 각종 입주지원혜택이 보장됨
- 현재 자유무역지역은 마산, 군산, 익산, 대불,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 인천공항 일대가 해당됨

17-2.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받는 혜택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 조세 인센티브 등 >

○ 직접세 감면

- 감면대상

- 고도기술산업, 산업지원서비스업인 외국인투자기업
- 투자금액 1000만불 이상의 제조업 외국인투자기업
- 투자금액 500만불 이상의 물류업 외국인투자기업

- 국세(법인세·소득세), 지방세(취득·등록·재산·종합토지세)

- 3년간 100% 면제, 2년간 50% 감면

○ 간접세 면제 및 환급

- 입주업체의 자유무역지역 반입 외국물품에 대해 관세 유보

- 입주기업체가 반입한 내국물품 및 자유무역지역 내 기업간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의 영세율 적용

- 기타 임시수입부가세, 주세, 특별소비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유보

※ 교통유발금 면제 및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 등 적용배제

< 임대료 인센티브 >

○ 파격적으로 저렴한 임대료(타지역의 1/5 수준) 제공예정

- 외국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100%까지 임대료 감면 가능
- 국유 및 공유부지에 대해 최대 50년까지 임차 가능 및 영구 시설물 건축 허용

#### < 물류활동 신고절차 간소화 >

- 자유무역지역 내에서의 등록업체간 물품이동 및 양도, 외국물품의 사용·소비 및 보수작업 등 각종 부가가치의 물류활동에 대한 세관신고절차 간소화

### 17-3.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절차는?

-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관리권자의 입주허가를 받아야 함
  - 제조업의 경우 자유무역지역입주허가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외국인투자신고서를 첨부하여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기타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관한 인가·허가·면허·등록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 첨부(외국인투자자가 신규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당해 사업에 관한 인가·허가·면허·등록 등을 받아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17-4. 자유무역지역에서 외국물품의 반입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입주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안에서 사용 또는 소비하고자 하는 아래물품은 세관장에게 반입신고를 해야하며 관세 등이 유보됨
  - 기계, 기구, 설비 및 장비와 그 부분품
  - 원재료, 윤활유, 사무용컴퓨터 및 건축자재
  - 그 밖에 사업목적의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 관세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 입주기업체가 상기 반입신고대상외의 외국물품을 반입할 경우
  - 입주기업체외의 자가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할 경우

### 17-5. 자유무역지역에서 물품을 반출하기 위한 절차는?

- 외국물품을 국외로 반출할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반출신고를 하여야 하며, 외국물품이 아닌 물품을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수출신고를 하여야 함
- 자유무역지역안에서 외국물품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제조, 가공등의 과정을 거친 물품과 외국물품 원상태로 관세영역(국내)으로 반입하고자 할때는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함

### 17-6. 자유무역지역 내로 통관시 절차의 특별사항(신품 또는 중고 수입시의 제한사항, 기타 통관상의 특별사항)은 ?

- 신품과 중고품에 따른 제한사항의 차이는 없으나 통합공고상 요건 구비 물품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통관이 가능  
예) 자동차는 자기인증, 건설장비는 설계검사 또는 형식승인 등
-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되는 물품은 통합공고의 요건을 적용받지 않으나 아래 물품은 반입이 제한됨
  - 국민보건 또는 환경보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물품
  - 산업쓰레기 등 폐기물
  - 총기류 등 불법무기류, 마약류
  - 상표권 또는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 침해 물품

17-7. 부산, 광양, 인천 일대는 자유무역지역이면서 또한 경제자유구역에 속한다고 들었는데, 두 제도 간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 두 제도 모두 외국인 투자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적용구역, 적용혜택 등이 중복될 수 있으나 외국인투자기업은 양자 중 유리한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경제자유구역은 물류·제조·서비스업 등 산업기능과 주거·교육·의료 등 도시기능을 하는 특별행정구역으로서, 조세 및 임대료 감면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며, 외국인이 불편함이 없이 근무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지역
- 자유무역지역은 물류업·제조업 등을 유치하기 위한 조세 및 임대료 감면은 물론,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등 외국인투자유치, 무역의 진흥 및 국제물류의 원활화를 위한 산업특구 지역

**【자유무역지역과 경제자유구역의 비교】**

구 분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근 거 법	- 자유무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약칭 : 자유무역지역법)	-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약칭 : 경제자유구역법)
지정목적	- 외국인 투자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 개선
관리권자	- 산업단지 : 산업자원부 - 항만 및 배후지 : 해양수산부 - 공항 및 배후지 : 건설교통부	- 시·도 경제자유구역청
지정요건 (예: 항만 및 배후지)	- 연간 1천만톤 이상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정기국제컨테이너항로가 개설되어 있을 것 - 3만톤급 이상의 컨테이너선 전용부두가 있을 것 - 육상구역과 배후지 면적이 50만㎡ 이상일 것	- 정기국제컨테이너항로가 개설 되어 있을 것 - 연간 1천만톤 이상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을 것 - 2만톤급 이상의 컨테이너선 전용부두가 있을 것
입주업종	- 물류업, 제조업 등	- 물류업, 제조업, 외국인 학교, 외국인전용 병원 등
관세 등	- 무관세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제한적 관세면제(3년, 자본재) - 부가가치세 납부
국·공유지등 임대	- 기본요율 : 저렴한 고시요율 - 임대기간 : 최대 50년	- 기본요율 : 재산가액×10/1000 - 임대기간 : 최대 50년

### 17-8. 자유무역지역 내로 통관시 소요되는 시간은 대략 어느 정도인가?

- 일반물품의 통관시간은 수입신고 후 수리까지 평균 1시간 30분 정도임
-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하는 물품은 검사비율이 약 1% 정도인데, 검사생략 물품은 즉시 처리되고 검사물품은 검사 후 처리되나 당일 안으로 처리됨

### 17-9. 자유무역지역 안에서 등록업체간 물품이동 및 양도, 외국물품의 사용·소비 등 각종 부가가치 물류활동에 대한 세관 신고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 자유무역지역 안에서 등록업체간 물품의 이동 및 양도는 전자문서에 의한 반출입 신고와 업체의 장부기록으로 이루어짐
- 외국물품의 사용·소비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치 않으며, 자유무역지역에 반입시 수입신고서식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세관장에게 신고하면 됨

### 17-10. 자유무역지역 내에 물류창고를 신축시 관계기관에서 득하여야 할 인·허가 및 신고 사항은?

- 인·허가 사항(시장, 군수, 구청장)
  - 건축허가
  - 건축물사용승인

※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사항은 복잡심의 또는 의제처리

- 신고사항(시장, 군수, 구청장)
  - 건축착공신고
  - 건축물사용승인

**17-11.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함으로써 한국내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노동자 고용 기준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나?**

-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고령자 고용 등 아래 내용이 배제됨 (자유무역지역법 제3조)
  - 일정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기준고용율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여야 함(고령자고용촉진법 제12조)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취업할 경우 가산점 및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함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
  -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이 취업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여야 함(광주민중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2조)
  -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취업을 보장하여야 함(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제21조)
  -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 일정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함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4조)
  -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고유업종 분야에 대한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특정업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 위탁하여야 함(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 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4조 및 제12조)

### 17-12. 항만자유무역지역 입주시 국내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이 받는 혜택상의 차이점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항만배후부지에는 국내기업이든 외국인투자기업이든 모두 입주가 가능하지만, 개정 자유무역지역법에서는 다국적 물류기업 유치지원 차원에서 국내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의 혜택상에 크게 3가지에 차이를 두고 있음
- 첫째는 입주우선순위로, 부지규모의 한계로 신청하는 기업들 모두를 받아줄 수 없을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에 우선권을 주게 됨
- 둘째는 임대료측면으로, 자유무역지역 내에서는 국내기업이든 외국인투자기업이든 임대료를 저렴하게 책정하겠지만, 개정 자유무역지역법은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저렴한 임대료 마저 감면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셋째는 조세측면으로, 관세나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는 국내외 기업 모두에게 무관세이지만, 법인세 등 직접세는 5백만불 이상(물류업의 경우)을 투자하는 외국기업에 대해서만 3년 100%, 이후 2년 50% 감면혜택 (2004년 입주시 7년 100%, 3년 50%)

### 17-13. 항만자유무역지역에는 물류업, 제조업 구분없이 입주가 용이한가?

-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는 항만배후단지는 무역에 종사하는 국제선박이 화물을 싣고 내리는 부두에 바로 인접하여 조성된 부지이므로 가급적 항만과 연관된 국제 집배송센터 및 외국으로의 재수출을 위주로 하는 가공·조립 등 부가가치 물류산업을 유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따라서, 부두에 인접해 있고 항만관련 서비스업이 잘 발달되어 있는 부산항 감천 배후부지 4만평과, 주변에 이미 산업단지가 잘 발달되어 있는 부산신항 항만배후 단지는 제조업종보다는 국제집배송 기능을 담당하는 국제물류센터를 중점적으로 유치하고, 제조기업은 물류거점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적정하게 유치할 계획임

- 대형 국제항만이지만 주변에 산업단지가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광양항의 항만배후 단지는 수출 제조업종까지도 유치하여 생산 및 물류복합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등 각 항만배후단지의 특성을 반영할 계획임

감 수 IK  
산업자원부

종합행정지원실장  
투자정책과장

이 태 용  
윤 상 직

## 집 필 진

총	괄	유 종 주 이 범 천 박 은 아	(산업자원부) (산업자원부) (KOTRA)	3460-7560 3460-7552 3460-7565
투 자 제 도 일 반		장 기 택 이 범 천	(KOTRA) (산업자원부)	3460-7556 3460-7552
투 자 신 고		장 기 택	(KOTRA)	3460-7556
V I S A		박 길 남	(법 무 부)	3460-7571
조	세	노 삼 식	(국 세 청)	3460-7563
관	세	임 경 택	(관 세 청)	3460-7561
금	용	김 주 경	(KOTRA)	3460-7575
공 장 설 립		김 욱	(한국산업단지공단)	3460-7573
법 인 설 립		백 진 종	(KOTRA)	3460-7554
부 동 산		박 준 신	(건설교통부)	3460-7566
건	축	박 준 신	(건설교통부)	3460-7566
관	광	최 학 수	(문화관광부)	3704-9733
M & A		백 진 종	(KOTRA)	3460-7554
환	경	서 인 원	(환 경 부)	3460-7567
노	동	정 석 윤	(노 동 부)	3460-7648
중 소 기 업 지 원		권 흥 철	(중소기업진흥공단)	769 - 6702
정 보 통 신		박 태 현	(정보통신부)	750 - 1464
자유무역지역일반		장 기 욱	(해양수산부)	3460-7579

본 외국인직접투자 Q&A는 외국인투자촉진법령 등을 기초로 하여 외국인투자지원센터 (Invest KOREA : IK)에서 작성한 것으로 본 책자의 내용이 관련 주무부처의 해석과 다를 경우 소관부처의 해석에 따라야 함을 밝혀드립니다.

또한, 내용중 의문사항이나 개선할 부분이 있는 경우 위 분야별 집필진 또는 외국인투자 지원센터 종합행정지원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9(우.137-749)  
KOTRA 외국인투자지원센터 종합행정지원실

전화(대표) : (02)3460-7545

홈페이지 : <http://www.investkorea.org>

## 외국인직접투자 Q&A

발행일 : 2004년 7월

발행처 : KOTRA 외국인투자지원센터 (Invest KOREA)

인쇄 : 신우사

< 비 매 품 >